2003년 1월호(제79호)
ISSN 1226-2269 1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강원도카지노세논의배경과도입방안
- 지역간불균형에관한소고
- 배당소득세제의정책과제

해외동향

일본소득과세의경제효과

전국 대학(원)생 현상 논문 공모 우수작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에관한연구

정책흐름

2003년1월1일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002 한국의사회지표

재정통계

중앙재정Ⅴ편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3년 1월호(통권 제79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년 1월 1일 발행 • 제79호 • 1998년 9월 30일 등록 • 라7859 •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79-6 • 전화(02)2186-2130~2 • 월간

월·간
1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이천삼년 일월호

C·O·N·T·E·N·T·S

권두칼럼	2	음식문화와 새로운 경제질서 /宋大 熙
현안분석	6	강원도 카지노세 논의배경과 도입방안 /金 正勳
	24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金 顯娥
	46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 /金 珍洙
해외동향	73	일본 소득과세의 경제효과 / 鞠 重鎬
현상 논문	92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김선중
정책흐름	135	200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2 한국의 사회지표
재정통계	172	중앙재정 V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86	희망을 키우는 경제를 외

• 2003년 1월 15일 발행 • 제 79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라7859 •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 전화(02)2186-2130~2 • 월간

음식문화와 새로운 경제질서

宋 大 熙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1. 한국과 서구 음식문화의차이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음식을 개인별로 나누어 먹지 않고 다같이 함께 먹는 음식문화가 발달해 왔다. 밥과 국은 자기 것을 먹지만 찌개라든가 김치 등 그 외 대부분의 음식은 한 그릇에 담아 모두 공유하면서 식사를 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음식을 공유하며 같이 먹는 가운데 공감대도 형성되고 친밀감도 높아지는 것을 누구나가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음식공유 습관은 우리나라의 소위 선진적 의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계층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는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는 우리와는 다른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 서로 공유하면서 먹지 않는다. 서구에서는 음식을 개인별로 배분하여 각자가 자기에게 배분된 음식만을 먹는다.

얼마 전 일이다. 옛 학창시절 미국 교수 내외분이 은퇴하여 난생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사동 한국문화의 거리를 보고 싶어 했고 한국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 인사동의 전통 한국음식점으로안내하였더니처음먹는 김치, 나물, 파전등을그렇게좋아했다. 그러나여러 사람이 같이 먹어야 하는 된장찌개에는 숟가락을 같이 집어넣지 못하며 머뭇거렸다. 된장찌개 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 침 묻은 각자의 숟가락을 된장찌개 그릇에 같이 집어넣어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거북스러워하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에게는 친숙하여 자연스러운 것도 서구인들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와 서구의 음식문화 차이는 기업경영 및 경제질서의차이로그대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IMF의위기로 경제질서의탐색은 불가피

기존 한국기업의 경영문화는 공동체 경영으로 특징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교육부가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강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책임문화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차별적 성과급지급이 공동체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완강히 거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적 기업문화는 우리나라의 개발연대 경제정책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국제적인 개방화 추세가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1997년 말 IMF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공동체적 경영문화에서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가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는 비효율성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IMF 경제위기는전통

적인 경제질서로는 더 이상 고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IMF 위기과정을 극복하려는 노력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의 도입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결국 IMF 위기 극복의 결과로 30개 대기업 집단 중 상당수가 퇴출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전반에걸쳐엄청난지각변동을가져왔던것이다.

3. 21세기 Post - IMF 시대 선진경제로 가는 과정

IMF 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정부의 규제개혁 및 역할 변화, 각종 제도의 개선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지각변동의 시작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전 산업분야에 과연 서구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계속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스탠다드를 확립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IMF 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국의 시장경제질서의 조성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전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성공한 경제제도와 기업경영기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구의 개인주의적 책임의식에 기초한 경제제도와 기업경영기법이 우리나라 풍토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무조건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 또한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을 치유할 수 있는 만능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별적 성과급제도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공동체적 경제질서도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4. 글로벌 스탠다드의 선별적 적용

이제 어제의 경제질서와 기업문화로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실시해서도 성공할 수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체질에 맞는 자주적 경제질서를 발굴하여야 한다.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내산업은 국제화와 관련이 깊은 산업과 국제화와 무관한 내수산업 등으로 두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금융산업 및 무역산업 등에 있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반면 내수 위주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굳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적용할 필요없이 전통적으로 확립된 스탠다드를 적용하여 내수적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 산업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그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무리 고유한 우리문화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의 한 부분이므로, 세계를 향하여 진취적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우리의 것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사회발전 과정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새로운 경제질서를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보다 나은 선진경제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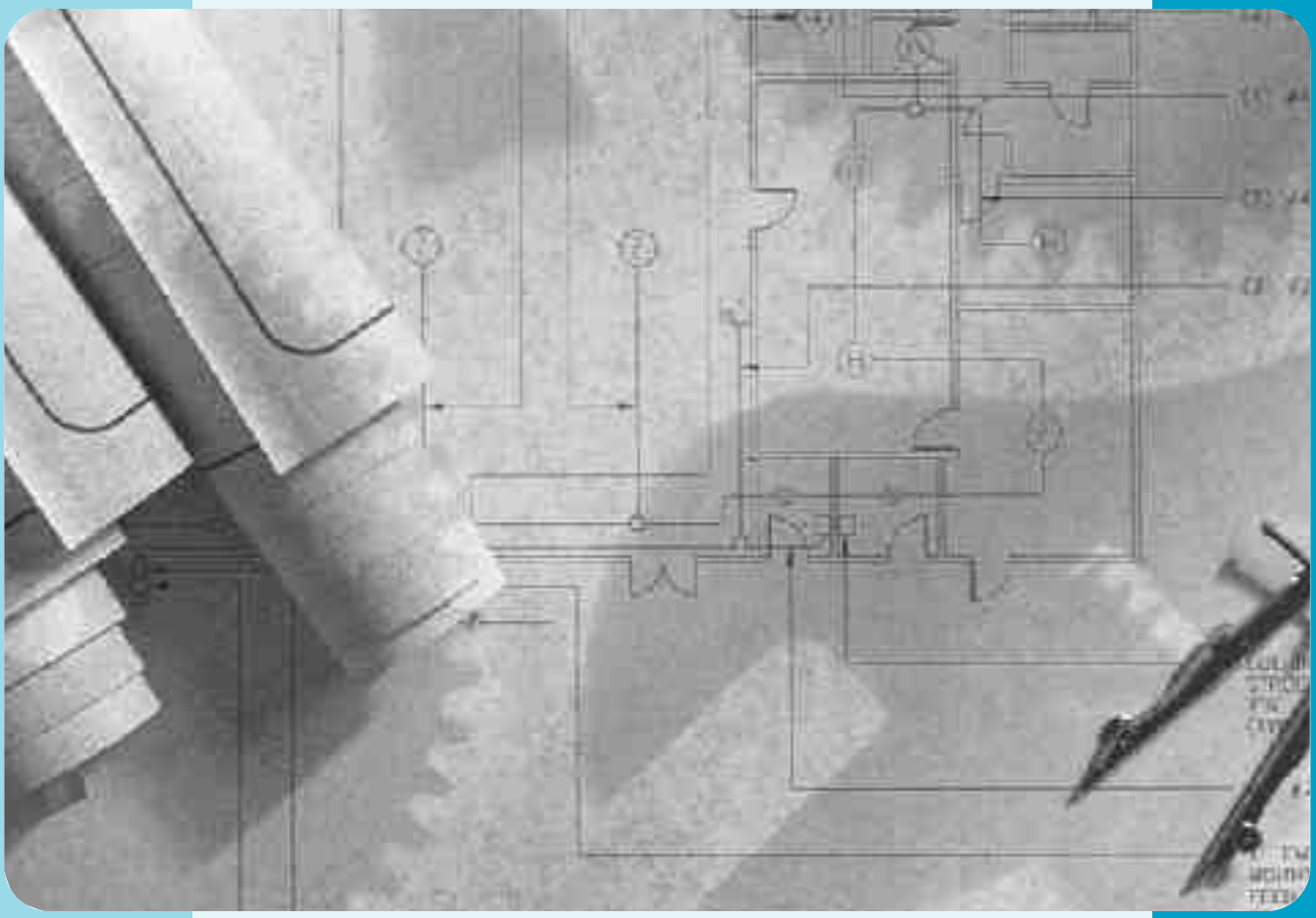

현안분석

강원도카지노세논의배경과 도입방안
金正勳 연구위원

지역간불균형에관한소고
金顯娥 초청연구위원

배당소득세제의정책과제
金珍洙 선임연구위원

강원도 카지노세 논의배경과 도입방안

金 正 勳 연구위원(junkim@kipf.re.kr)

Ⅰ. 논의의 배경

최근 강원도의 폐광지역에 위치한 내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가 지방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카지노와 같은 도박산업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허용하고 그 대신 이로부터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교육, 노후보장 등과 같은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추세는 1990년 들어 미국에서활발하게 관찰된다. 또한호주에서는 도박산업에 대한 재정수입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박산업에 대한 과세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미 경마나 경륜과 같은 도박산업에 대하여 경주마권세가 지방세로 부과되어 왔으며, 2002년부터는 그 이름이 레저세로 개칭되어 향후 다양한 종류의 도박에대하여지방세를 부과할 수있는 채비를 갖추었다.

본고에서는 각종 도박산업 중에서 1999년 강원도의 폐광지역에 설립된 내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강원도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과세문제는 도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몇 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 외국의 경우 카지노 사업은 민간인들의 사업 권한으로서 허용되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강원도 카지노는 정부의 출자 지분이 51%를 차지하고, 또한강원도 이외의 기타 지역에는 내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담배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재정수입으로 확보하는 담배 전매사업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강원도의폐광지역에 설립된내국인 대상 카지노가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것이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1,000억원이넘는재정수입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중요한문제라고아니할수없다.

으로 설립된 강원도 카지노 사업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강원도 카지노 사업에 대한 과세문제가 일반 도박산업에 대한 과세문제와구별되는 또 한 가지 측면은 강원도 카지노에 대해서 이미 중앙정부가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문화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여 큰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원도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관점, 그리고 정부재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카지노 사업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독점권을 행사하고, 사업수익을 재정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관한 것이다. 담배 전매사업의 경우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 때문에 정부의 담배사업은 그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담배사업의 민영화가 추진중에 있다. 또한 한편으로 정부 주도의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카지노 사업과 같은 도박행위의 경우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만 동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굳이 정부가 주도하여 카지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담배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민영화하고 대신 정부는 과세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 카지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강원도 폐광지역에만 내국인 대상 카지노를 허용하여 이 지역에 대한 재정수입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카지노 사업에 대한 민간인의 권한 문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굳이 강원도 지역에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 지역의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동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본고에서 이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이왕에 강원도의 폐광지역에 설립된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어떻게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대한 문제는 1,000억원이 넘는 재정수입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개

발을 위하여 카지노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 그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도 정부재원 활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관점, 그리고 특별재원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 강원도 카지노 사업에 대한지방정부의 과세문제를 검토하고자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강원도 카지노 사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지방세로서 카지노세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지방세로서 카지노세의 유형,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여부, 그리고 카지노세의 과표와 세율 문제를 검토한다. 제5장은결론이다.

Ⅱ. 강원도 카지노 사업의 현황

강원도 카지노 사업의 주체인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대상 카지노로 설립되었다. 2002년현재 종업원은 1,000명 가량이며, 총출자액은 출자 당시 2,323억원이었다. 출자액의 지분 중 51%는 6개기관으로 구성된 공공부분에서 가지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의 사업단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전체 지분의 36%를 출자하였고, 강원도 개발공사가 6.6%, 그리고 강원도 폐광지역을 둘러싼 4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정선군이 이 중 가장 많은 4.9%의 지분을 출자하였다. 나머지 기초

<표 Ⅱ-1> 강원도 카지노 출자 내역

구 분	1주당가액 (원)	소유주식수 (천주)	지분율 (%)	금 액 (억원)
계	-	20,000	100.00	2,323
공공부분(6개기관)	5,000	10,200	51.00	510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7,200	36.00	360
· 강원도개발공사	-	1,320	6.60	66
· 정선군	-	980	4.90	49
· 삼척시	-	250	1.25	12.5
· 태백시	-	250	1.25	12.5
· 영월군	-	200	1.00	10
민간부분(38,000여명)	18,500	9,800	49.00	1,813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과기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이며, 그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재정수입은 전체 매출액의 10%를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수익금의 10%를 부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고 그외의 재정수입으로 주민세, 법인세, 소득세등이있다.

자치단체들 중 삼척시와 태백시가 각각 전체 1.25%를 출자하였으며 영월군은 이 중 가장 적은 1%의 지분율을가지고있다.

강원도 카지노는 스몰 카지노와 2006년까지 확장될 예정인 메인 카지노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0년 개장한 스몰 카지노는 연면적이 6,796평으로 480대의 슬롯머신, 30대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의 스몰 카지노는 2002년말까지 슬롯머신 2,100대를 갖춘 메인 카지노로 확장될 예정이며 2006년까지 910대의 슬롯머신이 추가될 예정이다. 강원도 카지노는 현재까지 불과 3년밖에 운영되지 않았으나 이로부터의 재정수입은 상당히 큰 편이다. 〈표 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각종의 세금과 기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2001년을 기준으로 카지노 매출액 약 4,500억원 중에서 2,000억원이 재정수입으로 확보되었으며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것은 법인세로서 960억원이 납부되었다. 법인세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재정수입은 카지노 사업에 부과되는 기금으로, 전체 매출액의 10%를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448억원, 카지노 수익금의 10%를 부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약 318억원 징수되었다. 법인세와 기금 이외의 재정수입으로는 주민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있다.

<표 II-2> 강원도 카지노 재정수입 현황(2001년)

(단위: 억원)

구 분	국가수입(78%)		지방수입(22%)	
	세목등	금액	세목등	금액
계	-	1,499	-	420
·세금(60%)	소계(91%)	1,051	소계(9%)	102
	·법인세	960	·주민세	99
	·소득세	37	·사업소세	2
	·특별소비세	35	·기타(재산세, 종토세등)	1
	·기타(교육세, 부가세등)	19		
·기금(40%)	소계(58%)	448	소계(42%)	318
	·관광진흥개발기금	448	·폐광지역개발기금	318

강원도 카지노로부터의 재정수입은 2,00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각종 도박산업으로부터 징수되는 재정수입과 비교하면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다. <표 Ⅱ-3>에는 각종 도박산업으로부터의 재정수입이 나타나 있는데, 2001년의 경우 경마사업으로부터 국세가 3,285억원 징수되었고, 지방세는 무려 1조 2,915억원이나 징수되었다.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2001년 국세가 608억원, 지방세가 3,611억원 징수되었다.

<표 Ⅱ-3> 도박산업에 대한 재정수입

(단위: 억원)

구 분		매출액	조 세			기금	기타	재정 수입계
			국세	지방세	소계			
경마	99	34,230	2,869	3,509	6,378	532	153	7,063
	01	60,187	2,669	9,796	12,465	983	271	13,719
	02	78,000	3,285	12,915	16,200	1,215	373	17,788
경륜 경정	99	5,956	160	893	1,053	345	49	1,447
	01	17,389	477	2,783	3,260	1,356	194	4,810
	02	22,562	608	3,611	4,219	1,950	279	6,448
카지노 (강원랜드)	99	-	-	-	-	-	-	-
	01	4,620	1,164	117	1,281	765	40	2,086
	02	4,955	1,082	111	1,193	822	-	2,015
복권	99	4,216	-	-	-	1,348	-	1,348
	01	7,112	-	-	-	1,834	-	1,834
	02	10,022	-	-	-	1,776	-	1,776
합계	99	44,402	3,029	4,402	7,431	2,225	202	9,858
	01	89,308	4,310	12,696	17,006	4,938	505	22,449
	02	115,539	4,975	16,637	21,612	5,763	652	28,027

Ⅲ. 카지노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1.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의의

지방세로서 카지노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지방세로서 카지노세의 적정성인데,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지방세의 성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열거된다. ① 과세표준의 신장성이 충분히 높을 것 ② 세수의 안정성과 예측성이 있을 것 ③ 세부

폐광지역에 설립된 카지노 사업에 대한지방세 부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지방세와지방자치의 원리 측면에서도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방세를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신장될 수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담이 공평할 것 ④ 조세행정 비용이높지않을 것⑤ 세부담과 조세행정이 투명할것 ⑥ 과세표준의 지역간 이동성이 적어서 지역간 조세경쟁 여지가 적을 것 ⑦ 각 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이 지는 지방세 부담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의 편익이 일치하여 조세수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러한 일곱 가지 특징 중에서 ① ⑤까지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를 포함한 조세의 전반적인 세목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⑥과 ⑦은 지방세가 지녀야 할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기준으로 본다면 강원도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그다지 적정하지 않을것이라 할 수있는데, 그 이유는 강원도카지노 사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로 강원도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부담할 것이므로 위의 항목 중 일곱 번째인 조세수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하여 강원도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강원도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단순히 교과서적 기준에 의하여 그 장 · 단점을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만 가능하게 한 이유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자는 동 사업으로부터의 이익에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조세부담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도로의 개설 및 유지, 관광지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세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은 강원도 지역에 카지노를 설립한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폐광지역에 설립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지방세와 지방자치의 원리 측면에서도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지방세의 전국적인 균일화가 고착되어 있는데, 지방세제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보편성만 강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어렵다. 물론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국세와 지방세의 운영을 위해 전국적인 관점에서 지방세제를 운영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방세를 통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신장될 수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강원도 지역에서의 카지노 사업 허가는 일차적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러한 폐광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카지노 사업의 수혜자는 일차적으로 폐광지역의 주민이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볼 경우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의 내국인 카지노 사업이 허가된 이유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강원도의 낙후된 재정력이 감안되었다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통하여 강원도가 강원도 지역 전반에 걸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재정력을 감안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통하여강원도의 재정력이 신장될 경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이전재원보다는 지방세로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카지노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과세권 행사가 지방자치 및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2. 기존 기금과의 중복 문제

강원도의 카지노 사업은 강원도 지역에 소재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된사업이므로 중앙부처가 동사업에 대하여 기금을징수하여전국의폐광지역지원과문화관광사업지원에사용하고있다. 카지노사업에는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징수되고 있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징수주체는 강원도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징수주체는 문화관광부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경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폐광특별법시행령)의 제16조에서 도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이익금의 10%,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2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다. 동기금은 강원도가 징수하므로 그재원이 모두 강원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나 폐광특별법시행령에는 강원도지사가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동 재원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폐광지역진흥지구는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위치하고 있으므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전국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약 80%가 강원도에위치한폐광지역진흥지구의개발에투자되고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경우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카지노세는 목적이 비슷하여 성격의 중복성이 뚜렷하므로 양자의 장 · 단점을 잘검토하는 것이필요하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목적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이라고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징수 주체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폐광지역 개발을 주 목적으로 카지노세를부과할경우양재원의중복성이크다.

에 의하여 카지노 사업 총 매출액의 10%가 동 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고 관광시설 건설 및 개 · 보수, 국민관광진흥사업, 외래관광객유치지원과같은사업에투자된다.

이처럼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800억원(2001년 기준) 가량의 기금이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자나 주주의 입장에서 지방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경우 기금과 지방세의 중복 문제, 그리고 카지노 사업에 대한 재정압박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금과 지방세의 성격상 중복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경우 동 재원의 목적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지방세와 이 기금간성격의 중복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카지노 사업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내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에 반드시 부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1994년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에근거하여 부과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카지노 사업 매출액의 10%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되었다. 강원도 카지노의 경우 이를 설치한 목적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외화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과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부과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의관련 조항을 수정하는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과카지노세는 목적이 비슷하여 성격의 중복성이 뚜렷하므로 양자의 장 · 단점을 잘검토하는 것이필요하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목적이폐광지역진흥지구의개발이라고뚜렷하게설정되어있으며징수주체도강원도이기때문에강원도가폐광지역개발을주목적으로카지노세를부과할경우양재원의중복성이크다. 그러나양자간성격의중복성에도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면에서는 각각이 장 ·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폐광지역개발기금이지방세에비하여가지고있는단점은이기금이2005년말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며, 또한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강원도지사가 아니라 중앙부처라는 점이다.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구성원다수는중앙부처의차관급공무원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방세에비하

여 동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 반면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지방세세입과세출간연계성이뚜렷하지않아폐광지역개발기금에비하여폐광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문제점은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를 목적세로 부과하고동재원의관리를위한특별회계를설치하여해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재원 확충 측면에서 지방세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비하여 갖는 또 한 가지 단점은 지방세 부과로 인한 강원도의 재정력 증가가 중앙정부가 강원도에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22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진흥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지방세간에는 성격의 중복성이 있는데, 카지노 사업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잘 운용할 경우 지방세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비하여 안정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더바람직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와 기금간 성격의 중복성은 지방세의 운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카지노 사업에 부과되는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경우 카지노 사업자와 주주들의 조세저항은 분명하게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원리 및 지방정부의 과세권 행사 차원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지방세 부과를 못 하게 하는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보다는 세금의성격을바탕으로세금이존재하는 의의를 평가해야 한다.

세금의 적정성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련할 때 자원왜곡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적고, 또한 세부담이 형평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카지노 사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이익금에 지방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산활동(노동의 공급, 부가가치의 창출)을 제약하는 효과를 갖는 반면, 카지노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여가활동(카지노 이용)을 줄이는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부담 증가로 인하여 카지노 이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효과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카지노에 대한 세부담 효과를 평가하면, 세부담은 주로 카지노 사업자와 주주들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카지노 사업에 대한 주식의 51%를 정부가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법제정 형식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현실적인 운영 현황을 보면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중복과세가 허용되고 있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부담하는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이익금과 같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이나 소비재에 대한 과세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카지노 사업에 대한 과세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부담의 일부가 카지노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카지노 시설의 승률에 변화가 없을 경우 세부담은 주로 카지노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카지노세 도입으로 인하여 카지노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부과가 자원배분 및 세부담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조세정책을 포함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카지노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동 사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중앙정부 또는 강원도가 기금이나 지방세를 통하여 이익금의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에서 20%로 올린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금 감소 가능성에 대하여 소액주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반증한다. 따라서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될 수 있는 한 지방세 세입이 지역경제에 재투입되어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의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 부과를 통하여 폐광지역 주변지역의 행정 · 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이 가시적으로 개선될 경우 지방세가 단순한 재원확충 수단이 아니라 지역개발 및 카지노사업 활성화 수단으로 인식되어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세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따

라서 국세와 카지노 사업에 새로운 지방세 부과를 고려할 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세원에 중복과세할 수 없다는 이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보면 제2조와 제3조에 국세와 지방세가 열거되어 있고 제4조에는 제2조와 제3조에 열거된 세목들 이외에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가 제3조에 이미 열거되어 있는 레저세 또는 지역개발세의 형태로 도입될 경우 법제정 형식상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저촉되지 아니하며 수정도 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법제정 형식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현실적인 운영 현황을 보면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광범위하게중복과세가 허용되고 있다.

4.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 조정 문제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지방세의 형태를 도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 · 군세로 할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검토할 수 있는카지노세의 대안은 레저세 또는 지역개발세인데, 카지노 사업이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 · 군세의 형태로 카지노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카지노 사업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권을 행사하여 지방세 수입을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폐광 주변지역은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념이고 따라서 카지노 사업장이 위치한 단일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폐광 주변지역 전반에 걸친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폐광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세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카지노세의 세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폐광 주변지역은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념이고 따라서 카지노 사업장이 위치한 단일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를징수하는 것보다는 폐광 주변지역 전반에걸친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수있는광역자치단체가과세권을행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IV. 카지노세의 도입 방안

1. 카지노세의 선택 대안

카지노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될 경우 이를지역개발세에포함시키거나또는레저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세의 형태로 카지노세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카지노사업의 매출액 또는 수익금을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에 추가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제258조에는" 지역개발세를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도 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 "고되어있으므로도조례를통하여카지노사업에대한지역개발세의 부과기간을 결정하면 된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세를 예로 들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애초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부산시 조례가 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그 기간이 5년 더 연장되었다. 또한교육세의 경우 목적세이지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지역개발세의경우에도실효기간이반드시한시적일필요는없다.

레저세는 종전의 경주 · 마권세가 2002년부터 바뀌어진 세목인데, 과세표준은 경륜 · 경정, 경마,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레저세 형태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카지노 사업의 판매액을 추가하면 된다. 또한 레저세에는 이미 경륜, 경정, 경마와 같은 오락 행위에 대한 매출액이 과세표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상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가 포함되기에 적합한 세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역개발세는 목적이 지역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과세근거가 뚜렷한 반면 레저세는 보통세이기 때문에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카지노세를 도입할 경우 이를 보통세인 레저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목적세인 지역개발세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될것인데,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세로서의 카지노세의 장 · 단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지노 사업에 대

한지방세 부과 방안을 고려할때에는 우선적으로 왜 폐광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국가가 허용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국인 카지노 사업은 강원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과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는 세입이 카지노 사업의허가 취지에 맞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는 목적세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가 지방세로부터 확보될 경우,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줄이면서 강원도가 지방세 과세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는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있다.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비록 국가의 허가로 시작된 카지노 사업이지만 이는 이미 강원도에 소재하는 영업행위가 되었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영업행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과세권한을 행사하고 그 세입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폐광이 있지만 굳이 강원도 지역의 폐광지역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사업을 허가한 이유는 강원도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입도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할 수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지방자치 및 지방세의 원칙론적 입장에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원도 폐광지역의 낙후는 국가부담 이전에 당해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상태를 개선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폐광지역에 허가된 내국인 상대 카지노 사업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절대적인 목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국가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내국인 상대 카지노 사업을 허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 행사가 강원도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과세권 행사는 국가가 폐광지역에 카지노사업을 허락한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 수입을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카지노 사업에 대한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카지노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과세권 행사는 국가가 폐광지역에 카지노 사업을 허락한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 수입을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를부과하는 것이타당할것이다.

2. 특별회계의 도입 여부

현재 지방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등 다섯 개의 목적세가 있지만 이러한 목적세와 관련된 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목적세의 세입은 보통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세입에 포함되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목적세의 특별회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 형식상 비일관성의 문제점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목적세와 연계된 특별회계가 없어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목적세의 의의가 인정되지않고 있다는 문제점이있다.

만약 목적세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사실상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세보다는 수수료 · 사용료와 같은 세외수입적 성격을 많이 지니게 된다. 즉, 목적세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재를 공급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보통세 세입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이러한 방식이 불합리할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2 제2항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목적세수입액의 80% ② 지방세결산액 정산분의 50% ③ 시 · 군이 받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결산액 정산분의 50% ④ 세외수입 중 사용료 · 수수료 · 재산임대 및이자수입의 80%.

세외수입이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반영된 것은 2001년부터인데, 그 이유는 세외수입과 관련 공공서비스의 비용간 연계가 미약한 반면 재정력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영국,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에서 일반보조금을 산정할 때 세외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외수입이 특정 서비스의 공급비용과 비례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만약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가 목적세로 부과되고 관련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수입의 용도는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이를 일반세입에서 제외하더라도 지방교부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재정수입액의 불합리한계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있다[1].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할 때 이를 목적세로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카지노 사업을 폐광지역에 허가한 국가의 목적과 합치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명목상의 목적세 운영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바, 명실상부한 목적세 및 특별회계의 설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목적세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3. 카지노세의 과표 및 세율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의 과표와 세율 설정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과표의 경우 매출액과 수익금 중에서 매출액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주정부, 영국, 호주등에서 부과되는 도박과세의 과세표준은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도박산업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 카지노세의 과세표준을 카지노 사업의 이익금으로 한다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중복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법적 성격의 해석에 있어서도 카지노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카지노세는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익에 부과되는 소득과세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이 창출하는 서비스의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카지노세는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로 분류되지 않고 주세, 담배소비세 등과 함께 특별소비세(excise tax)로분류되고있다.

세율의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다. 정부가 부과하는 다양한 세금들의 세율과 부담수준은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역사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 등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적정 세율을 도출하기는 힘들다. 물론

1) 이러한법취지를지방교부세법체계상에서반영하려면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5조의2 제2항제1호를 ‘ 특별회계가설치되지아니한목적세수입액의 80%로수정하면된다.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를부과할때 이를 목적세로하고특별회계를 설치하는것은 카지노사업을 폐광지역에 허가한 국가의 목적과 합치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목적세를 보다 실질적으로운영하게유도하는긍정적인효과를발휘할것이다.

세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재정학의 적정조세이론(optimal taxation theory)에 의하면 특정 세목의 적정세율은 ① 정부가 필요한 세입의 규모 ② 세금 부과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효과 ③ 세부담을 주로 어떤 계층이 지는가를 기준으로 한 세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카지노세 세율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럼에도 일종의 비교대상으로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문화관광진흥기금의 세율이 모두 10%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 세율 역시 10%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세율이 부담이 된다면 낮은 세율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고 차후 기금의 통 · 폐합 문제가 발생할 때 지방세 세율을 조정하여 기금을 지방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될 것이다.

Ⅴ. 결론

강원도 카지노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탄광지역이 폐광지역이 됨에 따라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강원도 카지노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운영되어 온 외국인 대상 카지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강원도 카지노에 대한 출자지분에서 공공부분이 51%, 민간부분이 49%를 차지하는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강원도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시설이라기보다는 공공재적 목적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다.

강원도 카지노가 이처럼 공공 목적을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이 폐광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지노 사업으로부터의 재원 확충과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양자간 상

호보완적이면서 효과적인 정책이 입안 · 집행되는것이중요하다.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재 징수되고 있는 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인데, 양 기금은 안정성이나 합목적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법적 운영주체가 강원도이지만 재원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시한이 한시적이다. 또한 각종 기금의 통 · 폐합이라는 정부 재정정책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향후 이를 일반조세 · 일반회계의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원래 국내를 관광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에서 외화를 확보하고 이를 관광사업에 재투입하고자 도입되었는데, 강원도에 성격이 전혀 다른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기금이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명백한 목적으로 도입된 카지노에 대하여 관광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향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카지노에 대하여 걷히고 있는 기금의 이러한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기금을 조세 체계의 틀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의 경우 카지노에대한 법인세가 많이 걷히고있으나 이는 폐광지역 발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되는 세금은 아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카지노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 확충의 장기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역개발의 역할분담의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강원도 카지노 사업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이것이 기존 기금에 덧붙여 카지노 사업자에게 중복적인 부담만을 안기고 폐광지역 발전에 가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면 동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클 것이다. 따라서 카지노세를 지역개발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 폐광지역개발특별회계 (가칭)를 설치하여 동 재원을 폐광지역 개발에 투자한다면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의 취지가 살고 또한 카지노세의 순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도 제고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도박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세금들과는 달리 관련 위원회가 있고, 지방정부가 이 세금으로부터 확보되는 재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교육, 노인복지, 치안 등)에 투입된다는 점을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도박산업에 대한 재정수입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람직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동 세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도박행위에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확보되는재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교육, 노인복지, 치안등)에 투입된다는점을매우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다는사실을 감안할때 도박산업에 대한 재정수입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람직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동 세제의정당성을얻기위하여매우중요한조치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세의 도입은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지방세 확충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과 지방교부세법에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지방세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카지노세가 실질적인지방재정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중앙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필요할것이다.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 선행연구, 현행제도 및 정책 요약 -

金 顯 娥 초청연구위원(hyuna@kipf.re.kr)

Ⅰ. 서론

지난 10월 1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의 충청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 천명함에 따라 효과, 비용 등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한나라당이 회창후보도 수도권 집중해소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여 "일부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경실련 초청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의 차별화를 유도해 지방이전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몽준 후보는 이에 대해 "수도권에 돈과 권력이 모두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등을 통한 교육, 주택 불균형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경제력 집중, 교육, 산업시설 집중 완화와 전 국토 균형 발전 인프라 구축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위와 같이 대선 후보들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중요한 쟁점으로 삼는 이유는 지방의 유권자를 인식한 그들의 정치적 제스츄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토면적의 11.8%에 전 인구의 46.25%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임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경제적 역할 정립을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지방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로 대두되는 요즈음에 와서' 지역간 균형발전 이란 이슈는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정부에 있어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틀림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 때문이다[1]. 게다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에 경제적 역할 정립을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지방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로 대두되는 요즈음에 와서' 지역간 균형발전 이란 이슈는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정부에 있어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의 균형(Equilibrium)이란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외부교란 요인이 없는 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각 자치단체간의 재정능력의 차이를 포함한 상태를 불균형이라고 보았을때 이를 완화한 상태, 즉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줄인 상태(Balanced)를 의미한다[2].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음의 효과)이 규모의 경제(양의 효과)에 비해 큰가를 검증해야만 한다. Tolley 등(Tolley et al, 1979)의 연구는 미국 도시에 대해 공해와 교통혼잡의 비용, 지방재정의 추가부담 등 사회비용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함께 계산한 결과, 인구가 10% 늘어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사회비용과 사회적 편익의 차이는 도시민의 총생산액의 0.6%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김경환(1999)이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토지개발공사(1992)의 실증분석결과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도시규모와 제조업의 효율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비용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보다 반드시 크지는 않다는 등의 실증결과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논리에 따른다면 수도권 분산정책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계속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환(1999)은 이에 대해 수도권의 생산성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과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수도권을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 분산정책을 통

1) 수도권 인구비율은 1970년 28.30%, 1980년 35.53%, 1990년 42.79%, 2000년 46.25%(통계청)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의 84.3%, 30대 대기업 본사의 88.5%, 벤처기업의 83.3%,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66.4%, 기업부설연구소의 72.6%, 10대 명문대학의 80.8%, 외국인투자기업의 72.9%, 은행예금의 66.4%, 은행대출의 5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양지청, 2001).

2) 원내의 세미나에서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개념정립이 우선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한지역간균형발전은국가경제전체의효율과국제경쟁력의약화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보고,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의 효율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집중에 따른 외부효과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있다[3]. 결론적으로, 수도권집중화 억제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집중화로인한음의외부효과를막고자하는방안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있을수없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도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① 행정 및 지역경제차원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성장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제, 행정 규제 완화방안 모색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조세, 개발제도 및 투자에 의한 지원 유형 분석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모색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② 실증적으로 접근한 방법으로는 경제의 집적화 현상(Economies of scale)에 따른수도권과밀화 현상이 과연외부불경제를 일으켜서정부가개입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정부개입의 당위성, 지역간 격차와 각 지방재정 조정제도(지방재정지출 포함)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과 수도권 억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내용 등을 다룬것 등을들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불균형과 관련한 연구는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문제에서부터,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에 이르는기술적인부문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기적으로 협력하여 풀어내야 할 과제이다. 실제로 지역경제활성화의주 역할을할 수있는 해당기업들은과밀부담을안고서라도 일정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통한 지방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기업이 이전하고 나서 고용인력 및 해당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효용 바스켓에 환경이나 통근시간 거리 확대에 따른 불편함, 녹지의 감소 등이 효용의 변수로 자리 잡기까지는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단기적인 공약사항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나라국민들전체가 삶의질을 중요하게 만들수 있도록하는것, 다시말해, 사는 수준에 있어서도 선진국이될 수있도록하는것에초점을맞추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그 논의의 방향을 요

3) 수도권정책에 대한평가 결과로는, 경제논리를무시한 물리적인입지규제를통한수도권 제한정책이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서승환, 1997, 황만익, 1993).

지역경제 불균형과 관련한 연구는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지역간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각종지원방안에 이르는기술적인 부문까지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규제를 통한 지방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기업이 이전하고 나서 고용인력 및 해당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가능하기때문이다.

약하고, 대선때마다 논의되고 있는 지방이전조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지역간 균형을위한정책 및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한다.

Ⅱ. 선행연구 요약

1. 지역발전 지원 제도관련 선행연구

<표 1>에서 제시하는 선행연구 이외에도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의 범위가 종합적이지 못하고 특정 지원책이나 제도에 그쳐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실태나 효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연구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연구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 정도는 해방 이후 우리 경제가 지금껏 성장발전 위주로 달려온 성과의 산물이기도 하며, 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모든 면이 응축되어 보여지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많은 연구 중에서, 제도개선책이나 단순 지원실태를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자 했던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면다음과같다.

Armstrong and Taylor(2000)은 지역정책은 미시정책, 협력수단의 정책, 거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미시정책의 수단에는 노동의 재분배 정책과 자본의 재분배 정책이 있고, 협력수단은 지역 내에서의 협력과 지역 사이의 협력으로 구분되며, 거시정책은 무역정책, 재정정책, 화폐금융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중앙의 거시정책의 조정은 세금과 지출정책의 지역적 차별화, 화폐금융정책의 지역적 차별화, 그리고 세율의 지역적 차별화와 무역조정(예: EU 관세, 수입쿼터등)으로 이루어진다. 세금과 지출정책의 지역적 차별화는 소득세 등자동안정장치와자유재량에 의해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신해룡(1999)은 지방조정제도의 의의와 역할에 대하여 정의한 후, 국고보조금

<표 1> 기존의 실증연구 요약

연구자(연도)	연구의내용	분석방법	종속변수	연구의결과
김상호 (1994)	지역개발의결정요인및 요인별지역격차효과추정	집적회귀분석 연립방정식	1인당지역내 총생산	사회경제적 변수군과 정치, 행정적 변수군 가운데후자의영향력이강함
김영모외 (1992)	산업부문별 고용증가와 인구증가와의관계추정	회귀분석 입지상분석	인구증가율	인구증가는 3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울과 비교해 볼 때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그 영향력이더높음
김영정 (1989)	공업화전략과지역간 격차와의관계	분산분석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이 본격 육성되면서 도시집적의성격이변화하고있음
김용웅 (1993)	제조업성장의지역간 격차요인	분산분석 t-test		제조업의성장은전통적인입지요인보다는기업들이인식하는외부환경의불확실성과위험부담을최소화하는행태를보임
김헌민 (1992)	수도권의지역성장 요인	회귀분석	산업부문별 고용성장률	기반부문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80년대수도권정비계획의실효성이 의문시됨
박성복 (1996)	지역발전격차의원인	Loren곡선 Gin계수		대도시와 지방도시간, 수도권 및 동남권과 기타 지역간에뚜렷한격차가발생함
이정구 (1993)	선도적 기업입지가 지역성장에미치는효과	전이-할당분석		선도산업의 입지는 공업화 및 도시화를 촉진하며, 산업구조를 2,3차산업중심으로재편시킴
조상필 (1994)	지역발전의결정요인	회귀분석	삶의 질을 포함한 종합적 지역발전도	80년대에는 지역간 상호교류와 상대적 입지성이, 90년대에는 고용기회와 산업생산성이 가장 중요한요인임
강정석 (1997)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개발 결정요인의차이	집적시계열 회귀분석	1인당지역 내총생산액	광역시와 도는 지역개발의 결정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개발에 대한중앙에의의존도가감소하고있음
김영웅, 박진석 (1996)	한국의경제성장과 역소득격차	노동, 자본의이동성계수, 균형성장경로의안정성	지역별 생산요소의증감	분석년도 균형성장 경로를 벗어나며, 경제성장과 지역간 소득균형간의 관계가 우하향하는 곡선으로나타남
노근호외 (1995)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의인과관계분석	재정집중도 계수		지역경제성장이가속화됨에따라지역간경제력 격차감소. GI의승수효과가 GC보다크고, 장기적이며 누진적이고, GC는 GI보다 작지만 빠른 기간내효과가나타남
김성태 (1992)	지역간절대적 경제력격차의원인분석	회귀분석	GRP의변화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GRP 절대적 격차와 상대적 격차 심화, 1인당 GRP의 절대적 격차는 심화, 상대적격차는줄어듦

주: 박범조, 고석찬(1998.12)「지역불균형발전결정요인」,『지역연구』 제14권제2호참조재작성,
양지청(2001)『지역발전을위한지원실태와정책과제』, p.9 인용

의 계획과 사업추진의 일관성 결여, 국가 · 지방사무 구분의 미흡 및 지방부담의 과중, 지방재정의 자율성 저해, 실효성 없는 신청주의와 차등보조율 제도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지역격차는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 또는그성장률, 실업률등경제지표와 삶의 질을 나타내는 복지지표들의 지역간 상대적 차이를 말한다(김경환,「지역격차논의」, 2001, 참고 정리). 이론적으로는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출발시점의 소득이 낮은지역의성장률이더높아서궁극적으로소득격차가해소된다고보고있다.

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통폐합, 지방의사 반영기능의 강화, 기준보조율 제도의 합리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운영, 차등보조율 제도의 활성화,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김정훈(2000)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성격별로 구분하였고, 재원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보조금의 도입, 보조대상의 사후 관리를 위해 선진 감사기법의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상우 · 권혁진(1997)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효용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여러 정책 중, 수도권 시책, 산업단지 조성, 특정지역 개발, 성장거점 개발전략 등에 대해 계량적으로 평가 · 분석하였다. 박양호 등(2000)은 지역불균형의 실태와 기존시책에 대해서 평가한 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추진방안을제시한바 있다.

2. 지역격차의 원인[4)]

지역격차는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 또는그 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와 삶의 질을 나타내는 복지지표들의 지역간 상대적 차이를 말한다(김경환,「지역격차논의」, 2001, 참고 정리). 이론적으로는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출발시점의 소득이 낮은 지역의 성장률이 더 높아서 궁극적으로 소득격차가 해소된다고 보고있다[5)]. Grant(1996)는지역개발의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복지비 지출이높을수록,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주지사 선거가 있는 경우 기업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4) 양지청(2001)의논의를재정리한것임.

5) 이러한1인당소득의수렴은두가지유형으로정리된다. 첫번째는βconvergence1인당소득의증가율이출발점의1인당소득과마이너스상관관계를나타내어부유한지역에비해빈곤한지역이더빠른속도로성장하는현상을말한다. 두번째는σconvergence1인당소득의지역간분산(dispersion)이시간이흐름에따라줄어드는현상을지칭한다. 여러나라의실증분석결과를보면1인당소득의수렴현상은일어나더라도그속도가완만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자료를분석한결과이들국가에서공통적으로지역격차가매년평균2%씩감소하였음을발견하였다. (Amstrong and Taylor, 2000. pp.81 83)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역격차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박범조, 고석찬(1998)의 연구는 지역불균형 발전의 결정요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계량분석을 통해 방법론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이나, 첨단 창업기업을 유치, 육성하여 산업의 공간적 편중을 해소하는 것을 시급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EU의 지역정책은 국가를 넘어 유럽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 나라의 지역정책과는 다를 수 있는데, 분권화를 통한 지역 대상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partnership), 조정(coordination)이 그 핵심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경환, 『분권화와 지역발전 정책』, 2001).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지출간의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한 노근호 · 정초시 · 김성태(1995)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 상대적 불평등도 지수를 통하여 쿠즈네츠 가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지역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케인지언 가설(G→Y)과 와그너 가설(Y→G) 모두가 설명될 수 있는데 그 효과에 관해서는 케인지언 가설이 더욱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상비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지방소비지출은 지역경제에 빠른 그리고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지방투자지출은 지역경제의 취약성과 높은 대외의존성 등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투자지출효과가 지역 외로 유출하는 데 기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계식 외 2인(1990)),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동태적 인과관계 검정시 정부지방투자지출, 지방소비지출의 각각 밝혀진 최적시차는 각각 10년, 4년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실현에 있어서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지방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의가 없으므로, 중 · 장기의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지방투자지출의 투자승수가 지방소비지출의 승수보다 월등히 크므로 지방자치하에서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지출을 줄이고 투자지출의 비중을 점차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이슈는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지원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하는 단기적인 세부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경제학 관련 연구들은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규명과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진행방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방법의 유형을 전제로 그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위로부터의 개선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지역간 이동 주체인 해당 지역주민들인

지금까지의 연구진행방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방법의 유형을 전제로 그 세부사항을 제시하고있는데, 이는지역간불균형 완화를 위한 위로부터의개선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간 이동 주체인 해당 지역주민들인 아래로부터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한다고본다.

아래로부터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다분히 한국적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지역간 불균형도가 심각한 다른 나라들과도 확연히 다른 양상을 취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수도권 억제정책보다는 수도권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이전(voting by feet)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지역간 불균형 완화정책의핵심이라고 판단한다.

III. 지역간 불균형 현황조사

1. 지역간 불균형 실태

<표 2> 총량경제력의 수도권과 지방간 비교: 2000

(단위: %)

구분	인구 집중도 (A)	총량경제력								평균 (B)	B/A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고용*	도소매업 고용*	금융 거래	경제활동 인구	수출	조세 수입	합계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0.0	100.0	1.00
수도권	46.3	46.3	45.3	47.5	66.8	46.4	45.0	70.9	368.2	52.6	1.14
지방	53.7	53.7	54.7	52.5	33.2	53.6	55.0	29.1	331.8	47.4	0.88

주: 1. 인구는주민등록인구기준, 제조업 고용기회는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기준. 도소매업고용에는음식숙박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거래규모는예금은행예금액과대출액의합계기준이고, 조세수입은국세(직접세)와지방세의합계기준임.
2. *는 1999년자료기준임.

자료: 통계청. 2001. 5.『지역경제동향』 통계청, 각연도.
『지역통계연보』 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 : KOSIS(통계DB)):
재정경제부홈페이지(www.mofe.go.kr : 재정정보시스템), (박양호외, 2001, p.37)

최근 수도권에서 고소득 기회, 본사(本社)경제, 금융활동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소득과 금융·재정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제조업 생산기능은 지방

으로 확산되어 지방경제가 공장형 생산활동 중심의 구조로 더욱 고착화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완화된다는 신고전학파 성장이론 및 노근호 외(1995)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총량경제력 변화추이에따르면, 1995년과2000년 사이에 수도권의 총량경제력은 1995년의 51.6%로 확대된 반면 지방의 총량경제력은 같은 기간 동안 48.4%에서 47.4%로 감소하여 수도권[6]과 지방간의 총량경제력 격차가 3.2%에서 5.2%로 확대되었다고 나타났다. 외환위기 전후로 하여 나누어보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총량경제력[7]의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이 확대되는가운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그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고소득기회, 본사(本社)경제, 금융활동이더욱 강화됨으로써 소득과 금융·재정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제조업 생산기능은 지방으로 확산되어 지방경제가 공장형 생산활동 중심의 구조로 더욱 고착화됨으로써 수도권과지방간의경제력격차가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주는 재정력 지수들은 재정자립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전재원을 포함시키고 난 후의 지방재정 전부를 놓고 봤을 때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전체의 변화의 추이 또한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001년도의 지자체평균재정자립도를살펴보면특별시및광역시84.8%, 도35.2%, 시49.6%, 군21.0%, 자치구45.0% 등으로서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재정자립도에서는전남(22.0%), 전북(27.7%), 강원도(29.8%) 등이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지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전국적으로지방에대한국고보조금은2000년8조 8,253억원, 2001년10조 431억원규모이다.

6) ※과밀억제권역의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및동법시행령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복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7) 자세한산정방식은박양호외(2001)p.13 및부록참조.

최근수도권에서고소득기회, 본사(本社)경제, 금융활동이더욱강화됨으로써소득과금융 · 재정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제조업 생산기능은 지방으로 확산되어 지방경제가 공장형 생산활동중심의 구조로 더욱 고착화됨으로써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3> 지역별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 국	69.5	63.2	63.9	63.8	59.4	57.6
서울특별시	97.9	98.3	95.2	90.7	95.3	95.6
부산광역시	89.3	85.3	78.2	72.0	81.9	74.4
대구광역시	84.5	69.2	65.1	72.9	78.6	75.3
인천광역시	86.7	82.6	78.7	74.1	77.0	77.7
광주광역시	73.8	69.1	74.0	69.5	65.8	63.6
대전광역시	83.5	70.7	68.1	72.1	76.9	74.9
울산광역시	-	88.2	77.3	73.7	78.3	76.4
경 기 도	84.9	81.4	80.0	76.5	77.5	78.0
강 원 도	41.7	35.4	47.3	44.2	32.4	29.8
충청북도	56.0	44.5	48.5	54.5	37.0	36.5
충청남도	49.8	35.2	44.6	48.3	32.2	30.5
전라북도	43.4	33.0	44.4	42.5	31.4	27.7
전라남도	38.0	29.8	40.4	41.4	23.5	22.0
경상북도	47.7	38.0	41.1	49.6	33.9	31.3
경상남도	61.1	47.3	53.7	53.9	42.3	39.5
제 주 도	46.0	38.0	49.1	42.0	36.3	33.6

주: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세입총계×100
일반회계결산순계임. 단체간및회계간에중복계상된예산액은공제됨.
자료:'96 99 자료: 통계청
2000년자료: 순계규모, 지방행정연구소 http://www.lari.re.kr/zibang/jachi/2000_jeajung.htm
2001년자료: 순계규모, 자치정보http://www.jachi.co.kr/tax_menu02.html

이러한 재정적 지원의 문제점은 부족한 재원, 지역별 배분의 불합리, 영세보조사업, 타정책과의 연계 부족, 사업실효성 검증제의 부재 등으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지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의부재에서 오는문제라고 볼 수 있다.

<표 4> 지역별 주민 1인당 국고지원 수준
(2000, 전국평균= 100)

(단위: %)

지역	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서 울	12.2	0.4	0.0	28.9
부 산	29.8	6.8	21.2	55.9
대 구	45.4	7.7	32.3	87.9
인 천	34.6	14.3	24.5	58.6
광 주	54.3	28.0	32.2	89.3
대 전	42.8	16.9	32.1	72.6
울 산	43.9	14.4	48.3	71.1
경 기	38.9	22.3	46.0	52.2
강 원	195.1	247.0	216.8	135.3
충 북	127.3	157.0	149.1	89.3
충 남	151.6	173.0	160.1	127.2
전 북	154.1	180.4	155.4	127.9
전 남	220.7	253.8	197.4	197.9
경 북	153.5	183.7	166.8	118.4
경 남	123.6	129.2	136.4	112.8
제 주	172.0	165.3	181.5	174.6

자료: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 1998

2. 대기업 본사 위치를 통해서 본 지역간 불균형 현황

현재와 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정부 등 주요 기간시설이 밀집한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로는 재정력 집중 지수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 중, 이번 대선에서정몽준 후보가 내세운 대기업 본사들의 지방이전 관련 공약사항에따르면, 300대기업 중 236개, 100대 기업기준으로는 서울 67개를 포함하여 87개가 수도권에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00대 기업 자산 및 매출 총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와 90.1%에 이르고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100대기업 중 단 한 개의 기업만이 본사를 두고 있다. 강원도,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는100대의 본사를 한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본사위치를 통해서 본 지역간 불균형 현황을 살펴보면, 300대 기업 중 236개, 100대 기업기준으로는서울 67개를포함하여 87개가수도권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100대 기업 자산 및 매출 총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6%와 90.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원 중, 해당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보고 지방세를 추정하였다. 300대 기업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236개 기업의 본사 중 30%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 중 사업소세와 주민세(법인세 할)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의 이전효과가 약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추정 지방세의 50%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을 가정). 100대 기업의 경우도 30%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세의 이전효과는 약 2,445억원으로 발표했다[8].

이러한 미시자료의 근거는 우선 현대 계열사 몇 개 그룹의 예를 근거로 전체 기업들의 지방세를 추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위의 추정이 실제치에 근사하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지역간 균형에 있어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리 크지 않다. 책임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체 세입인 지방세가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세액 자체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지방재정에 단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지는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으로 주요 기관 이전을 내세울 때, 공공부문을 앞세운 이전을 내세우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는데, 주요기관의 이전에 앞서 민간부문(대기업)이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그 경제력 효과를 추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지방의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우리나라 3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매출액 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에서 발생되어 이 중 약 5%만 지역경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된다면 약 4조 5천억원의 경제력 이전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경제적 수치는 아니지

8) 2001년조세규모는지방세 23조 4,74억원, 국세 95조 9,99억원으로총 119조 3,738억원이다. 지방세대 국세의비율은 19.66% 대80.34% 수준이며, 2002년도법인세추정액만약20조원으로보고있다. 본원의세미나에서는, 주민세중에서법인세소득할만을계산해보더라도2조에가까운세액이지방세액으로잡힌다고본다면, 여기에서 추정한2천5백억원보다는훨씬더많은지방세이전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지적된바있다.

<표 5> 1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

(2001년말기준, 단위: 개, 십억원)

지역구분		기업수	자산		매출액	
수도권	서울시	69	283,917	(64.7)	270,372	(67.2)
	인천시	4	8,701	(2.1)	8,701	(2.2)
	경기도	14	89,510	(21.8)	89,510	(22.2)
수도권합계		87	388,858	(88.6)	368,582	(91.6)
지 방	부산시	1	2,781	(0.6)	1,834	(0.5)
	대구시	1	855	(0.2)	354	(0.1)
	대전시	1	3,671	(0.8)	1,701	(0.4)
	광주시	1	3,892	(0.9)	2,671	(0.7)
	울산시	4	13,254	(3.0)	9,875	(2.5)
	강원도	0	-		-	
	경상북도	3	24,540	(4.7)	13,653	(3.4)
	경상남도	2	4,995	(1.1)	3,824	(1.0)
	전라북도	0	-		-	
	전라남도	0	-		-	
	충청북도	0	-		-	
	충청남도	0	-		-	
	제주도	0	-		-	
지방합계		13	49,988	(11.4)	33,916	(8.4)
전체합계		100	435,846	(100.0)	402,498	(100.0)

주: 상장기업및코스닥등록기업중금융기관을제외하였으며( )안의숫자는전국합계에대한비율임.

만, 이전효과에 대한 설문을 통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지청(2001, p.71)의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기업이전정책의 실효성은 보통(41.2%), 비효과적(21.6%), 매우 비효과적(29.4%), 효과적(29.4%)으로 대체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금지원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10.8%), 효과적(31.4%), 보통(31.4%), 비효과적(23.5%)으로 그다지 크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정부의 지역별 차등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보통(30.4%), 비합리적(20.6%)이라는 데 반해 합리적(46.1%)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9) 설문에대한 조사대상은수도권중심의공무원, 교수, 연구원등의전문가, 학회, 지방공무원포함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국비지원실적에따르면 2000년 3,662억 4,400만원에서 2001년 3,662억원이며지역간연도별격차가매우심한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청내부자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방의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우리나라 3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매출액 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에서 발생되어 이중 약 5%만 지역경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된다면 약4조 5천억원의 경제력 이전효과가발생한다고보고했다.

<표 6> 3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

(2001년말기준, 단위: 개, 십억원)

지역구분		기업수		자산		매출액	
수도권	서울시	188	(64.5)	333,578	(64.5)	343,916	(68.8)
	인천시	10	(3.3)	11,289	(2.2)	10,460	(2.1)
	경기도	38	(12.7)	102,998	(19.9)	96,418	(19.3)
수도권합계		236	(78.7)	447,865	(86.6)	450,795	(90.1)
지 방	부산시	8	(2.7)	4,996	(1.0)	3,271	(0.7)
	대구시	7	(2.3)	3,540	(0.7)	2,836	(0.6)
	대전시	5	(1.7)	5,103	(1.0)	3,345	(0.7)
	광주시	1	(0.3)	3,892	(0.8)	2,671	(0.5)
	울산시	10	(3.3)	15,437	(3.0)	11,871	(2.4)
	강원도	2	(0.7)	943	(0.2)	506	(0.1)
	경상북도	8	(2.7)	22,591	(4.4)	15,448	(3.1)
	경상남도	11	(3.7)	8,752	(1.7)	6,654	(1.3)
	전라북도	4	(1.3)	1,386	(0.3)	1,233	(0.2)
	전라남도	2	(0.7)	459	(0.1)	362	(0.1)
	충청북도	1	(0.3)	368	(0.1)	128	(0.0)
	충청남도	5	(1.7)	1,587	(0.3)	1,041	(0.2)
	제주도	0	(0.0)	-		-	
지방합계		64	(21.3)	69,055	(13.4)	49,365	(9.9)
전체합계		300	(100.0)	516,920	(100.0)	500,160	(100.0)

주: 상장기업및코스닥등록기업중금융기관을제외하였으며( )안의숫자는전국합계에대한비율임.
자료: 한국상장사협의회

<표 7> 300대 및 100대 기업의 지방세 추계

(2001년말기준, 단위: 억원, %)

지역구분		지방세추계액			
		300대기업		100대기업	
수도권	서울시	13,408	(64.5)	11,412	(64.7)
	인천시	454	(2.2)	370	(2.1)
	경기도	4,140	(19.9)	3,848	(21.8)
수도권합계		18,002	(86.6)	15,630	(88.6)
지방	부산시	201	(1.0)	112	(0.6)
	대구시	142	(0.7)	34	(0.2)
	대전시	205	(1.0)	148	(0.8)
	광주시	156	(0.8)	156	(0.9)
	울산시	620	(3.0)	533	(3.0)
	강원도	38	(0.2)	-	
	경상북도	908	(4.4)	826	(4.7)
	경상남도	352	(1.7)	201	(1.1)
	전라북도	56	(0.3)	-	
	전라남도	18	(0.1)	-	
	충청북도	15	(0.1)	-	
	충청남도	64	(0.3)	-	
	제주도	-		-	
지방합계		2,776	(13.4)	2,009	(11.4)
전체합계		20,778	(100.0)	17,639	(100.0)

주: 지방세는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주민세를합산한것으로주민세중소득세할을제외한지방세의경우 기업의자산규모와밀접한상관관계를가짐으로자산을기준으로지방세추정한것으로보임.
자료: 한국상장사협의회

IV. 지원제도 및 정책 현황

1. 수도권 억제정책

지금까지의 수도권 억제정책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수도권의 성장억제와 관련된 정책의 반대급부를 지방이 누리는 양상을 띠어왔다. 일단,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억제정책을 세워놓고 이에 따른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소극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중 조세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수도권집중요인을 억제하는것을주 내용으로하는소극적, 규제 중심적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 유인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방안으로 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며, 경제활동의 중심이되는기업의지방이전에중점을두고있다.

<수도권규제를통한지방지원(수도권에대한불이익규제)>

○세제차원
1.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배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제한법상수도권감면배제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2. 수도권안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동법제130조)
3. 수도권내로의공장이전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배제(동법제131조)
4. 지방세법상중과세제도운영: 기본세율의3 5배중과
   1) 취득세(제112조제3항)
   2) 등록세(제138조제1항)
   3) 재산세(제188조제2항)

2. 지방이전 정책

위와 같은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외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요인을 억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규제 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 유인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방안으로 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며,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중점을 두고있다. 정부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은다음과같다.

수도권기업의 지역별 이전 현황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 102개 업체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하였거나 이전을 확정하고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2001년 6월까지 29개 업체가 이전완료 또는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전업체 수는 강원도(30), 충청북도(17), 대전(16), 부산(14) 순이고, 총종업원수는 3,829명으로 업체당 평균 37.5명의 중소기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방이전 지원제도는 수도권의 교통난, 주거난, 환경오염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금 및 규제 위주의 수도권 시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지방이전에인센티브부여를통한지방지원>

○세제차원
1. 공장의지방이전시세제지원
   1) 특별부가세감면또는과세이연(조특법제60조제1항)
   2) 법인세과세이연(조특법제60조제2항)
   3) 취득세, 등록세면제(지방세법제275조)
2. 법인본사지방이전지원
   1) 특별부가세감면또는과세이연(조특법제61조제1항)
   2) 법인세과세이연(조특법제61조제2항)
   3) 취득세, 등록세면제(지방세법제274조): 과밀억제권역내의본점또는주사무소를매각하고 그외지역이전시2002. 12. 31까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면제
3. 지방이전중소기업세제지원
   - 법인세감면(조특법제63조)
   -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년간 100%, 그후3년간50% 감면(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등에의한산업단지수도권에서제외하여대상축소)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위주의 시책은 수도권 집중추세를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보여지나, 그 이후에도 수도권의 집중은 계속되었고 지역간 불균형 현상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반영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 이전부지 매입, 배후도시 개발 등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의지방이전촉진대책>을 확정하여발표하였다[10].

이러한 조세에 의한 지원은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문화 등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지방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방지원 방식이 좀더구조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핵심사항은산업은행, 산업기반기금등에서장기저리로자금을융자하고, 법인세, 종합토지세등각종세금을감면하는내용과토지공사에서이전대상본사사옥, 공장등을매입하고, 대기업에게배후도시개발권을부여하는것등이다.

지역간 불균형완화를위한 정책 및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경제현황에 대한객관적이고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비교 분석하며, 부문별로 지역간에 경제구조적으로 어떠한 차이가존재하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지역간 경제력 격차와경제회복정도의 격차에관한원인이무엇인지를밝혀내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

<표 8> 수도권 기업의 지역별 이전 현황

(2001년말기준, 단위: 개)

지 역 별	계	2000	2001
계	131	102	29
부산광역시	14	8	6
대구광역시	1	1	
광주광역시	2	2	
대전광역시	16	10	6
울산광역시	2	2	
강 원 도	30	24	6
전라북도	10	4	6
전라남도	2	2	
충청북도	17	17	
충청남도	29	26	3
경상북도	7	5	2
경상남도	1	1	
제 주 도			

주: 이전을완료하였거나이전을확정하고추진중인기업대상
자료: 양지청,『지역발전지원제도의효과와평가』, 한국지역학회, 2001

Ⅴ. 기존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상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접근 방법에 따른 요약, 지역간 불균등 정도, 지방으로의 이전을 위한 조세, 재정 이에 따른 이전현황 등 지역간 균형을 위한 현재까지의 다양한 시도를 정리해보았다. 지역간균형을 위한 해당 관련 사무는 매우 다양하며, 모든 부처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임엔 틀림없다. 예를 들면, 제도 면에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많으며 한 지역의 개발사업이 통합된 하나의 개발제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제도가 혼재되어 진행되어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체계화된 법률체계에 의한 지원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지원은 신속한 사업

<표 9> 부처별 지역발전정책 소관업무 현황(예시)

부 서	소관업무
재정경제부	· 지방경제활성화, 지식기반산업육성, 국세 · 지방세조정
행정자치부	· 도서, 오지개발, 지방양여금, 지방세제
교 육 부	· 지방대학지원및육성계획등
과학기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 과학연구센터, 공학연구센터, 첨단기술사업화센터, 연구정보센터등
문화관광부	· 지역관광산업육성, 관광문화권계획및사업추진
농 림 부	· 농어촌개발, 지역농수산업지원프로그램등
산업자원부	· 지역특화산업육성계획, 테크노파크조성, 테크노비지니인큐베이터, 테크노마트지역산업지원시책등
정보통신부	· 지역통신망, 정보통신산업육성(소프트웨어진흥구역,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정보통신산업단지등)
노 동 부	· 직업훈련등지방인력육성
건설교통부	· 국토계획, 광역권, 개발촉진지구등공간적지역개발
	·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등인프라구축
기획예산처	· 국가 · 지방간재원배분, 지역개발사업예산배분등
중소기업청	· 지방중소기업및벤처기업지원 · 육성(기술창업보육)

출처: 건설교통부

의 시행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개발제도의 근본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외에도 사실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보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내세우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저해요인 중 하나는 임직원들의 이전 저항이며, 그 이면에는 이전지역의 낮은 삶의 질에 대한 우려가 중요한 사항이다[11]. 따라서, 교육환경이 수도권 과밀화의 주된 원인 중의하나라는 점, 그 외에 이전하고 난후의본사사옥 등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정 유예 등 정부의 정책의지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서론에서도밝혔듯이, 지역특성에맞는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에 따른 살만한 지방도시의 건립 등 지역간 균형을 위한 다른 어떠한 지원정책보다도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수준 및삶의수준이지금보다나아지는 데서출발한다고 판단한다.

앞으로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경제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비교 분석하며, 부문별로

11) 본원의세미나결과, 기업들의이전사항중가장큰요인으로는매출이익감소에따른우려가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고지적된바있다.

지역간에 경제구조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지역간 경제력 격차와 경제회복 정도의 격차에 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 다음, 이러한 지역간 경제력 및 경제구조상의 격차에 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 향후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환 · 서승환,『도시경제』, 홍문사, 1999.

김정훈,『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노근호 · 정초시 · 김성태,「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동태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3집 제2호, 1995.

박범조 · 고석찬,「지역불균형 발전요인」,『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박양호 외4인,『지방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2001.

배순석 외5인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국토연구원, 2000.

서승환 · 김현주 · 박재룡,『수도권 집중의 비용편익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997.

신해룡,「중앙재정과지방재정의관계(1)(2)-국고보조금과지방교부세를중심으로」,『지방자치』

양지청,『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태와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1.

황만익,「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3(6), 1998.12, pp. 255 - 268.

Armstrong, Harvey and Taylor, Jim,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Third Edition, Blackwell

Henderson, Vernon J., *Economic Theory and the Cities*, 1985.

Tolley, George S., Graves, Phillip E. and John L. Gardner, *Urban Growth Policy in a Market Economy*, Academic Press, 1979.

Wassmer, Robert W. Readings in Urban Economics, *Issues and Public Policy*, Blackwell, 2000.

<부록>

<부표 1> 조세지원의 유형

구 분	항 목	주 요 내 용
직접지원	비과세	· 과세권자의입장에서과세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여과세권을포기한소득
	세액면제(감면)	· 특정소득에대해세금을면제(또는감면)하는제도
	소득공제	· 과세연도에정상적으로계산한소득금액에서일정한요건과방법에따라일정액을공제하는제도
	세액공제	· 정상적으로계산된산출세액에서특정한정책적목적을위해일정한요건과방법으로세액의 일부를공제하는제도
	경감세율의적용	· 납세의무자에대해조세를전적으로면제또는경감하든지일정기간면제또는경감하고그이 후에과세하는제도
간접지원	준비금	· 특정한목적에충당하기위한비용을준비금으로설정하여이를손금에산입하도록하고, 일정 기간내에실제로당해목적을위해지출한비용이있을때에는이를설정한준비금과상계하 고남은잔액은다시익금에산입하도록하는제도
	특별상각	· 정상적인상각에비해상각기간을단축시키거나추가상각을용인하는제도

<부표 2> 금융지원제도 요약

자금명	융자기관	융자대상	자금용도	한도액	금리(1년)	융자기간
산업은행 자금	산업은행 시중은행	지방이전 기업	시설자금 운영자금	소요금액내	기준금리(01. 2월말 현재 4.15%) 및 취급금융기관 우대금리 범위내에서결정	시설: 1년거치 5년상환 운영: 2년 만기 일시상환(취득금융기관에 따라차등적용)
산업기반 기금	한국산업 단지공단	수도권외산업단지로 이전기업	시설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소요금액내 운영자금:40% 이내	6.0%	3년거치 5년상환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보 기금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보	지방이전 기업	시설자금 운영자금	통합한도:업체당 100억원	보증료율: 0.5 2.0% (신용도등에따라차등)	시설자금: 소요금액내 운전자금: 당기또는최근 4개월(추정) 매출액의 1/3 범위 내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조업등3년이상 영위(전업률: 30% 이상충족)	운전자금	업체당연간 5억원(매출액에따라 차등)	6.75%	1년거치 2년상환
지방중소 기업 육성자금	시 · 도	중소제조업체 및유통업체	시설자금 운영자금	시설: 8억원 운전: 3억원	6.75%	시설: 3년거치 5년상환 운전: 1년거치 2년상환
국민주택 기금	평화은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 6개월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구입자금 전세자금	6,000만원 5,000만원	7.5%	구입: 5년거치 10년상환 전세: 2년만기 일시상환

<부표 3> 조세감면제도 비교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행입지	이전입지
· 법인세6년간100%, 그후5년간50% 감면 ·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3년간유예 · 특별부가세과세이연또는50% 감면	법인 공장 본사	2002년말(2002년말까지 부지취득등이전착수한경우부지취득일부터3년이내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 특별부가세과세이연또는50% 감면 ·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3년간 유예	공장	2003년말	대도시	대도시외
· 특별부가세과세이연또는50% 감면 ·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3년간 유예	본사	2003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일부성장관리지역	나머지지역
· 법인세3년간100%, 그후5년간50% 감면	중소기업 공장	2003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일부성장관리지역	나머지 지역
· 재산세 · 종합토지세5년간100%, 그후 3년간50% 감면	공장 본사	2002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 취득세 · 등록세면제	공장 본사	2002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지역별총량경제력의분석방법과지표>

●총량경제력의분석방법

$$C_i = \frac{1}{N}\sum_{j}^{N} \left(\frac{t_{ij}}{T_j} \times 100\right)$$

(C_i: 지역별 총량경제력, T_j: 부문 j의 전국합계, t_{ij}: 부문 j의 i지역 입지수), N: 부문수)

●총량경제력의측정부문과지표

· 생 산: 지역내총생산
· 고 용: 제조업고용자수, 도소매 · 음식숙박업고용자수
· 금 융: 예금은행예금액과대출액
· 노동인력: 경제활동인구
· 수 출: 수출
· 소득 · 재정: 국세(직접세)와지방세수입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

金 珍 洙 선임연구위원(jinskim@kipf.re.kr)

I. 서론

1990년대 우리나라 상장법인들의 배당성향은 1996년을 제외하고 매년 20%에서 40% 사이에 머물렀다. 또한 1990년대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1.7%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의 국채수익률 12.8%나 정기예금이자 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정책의 특징은 낮은 배당성향과 낮은 배당수익률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증대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등으로 인해 배당압력이 커짐에 따라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로서 획득한 순이익을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과 미래성장을 위한 사내유보금으로 나누는 결정을 의미한다. 배당금은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당장의 현금수입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며, 사내유보금은 장차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기자금의 주요한 내부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의 최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 또는 주주의 부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이익 중 배당금과 기업내 유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업의 배당정책과 기업가치와의 상관관계가 없으려면 사내유보액만큼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즉, Miller와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기업의 배당정책과 기업가치와의 상관관계가 없으려면 사내유보액만큼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즉, Miller와 Modigliani(1961)의 주장대로 주주가 기업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주주의 수중에 넣어두거나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Modigliani(1961)의 주장대로 주주가 기업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주주의 수중에 넣어두거나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배당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비중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차감 후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주주에게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기업이익의 내부유보를 배당에 비하여 세제상 우대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로 이중과세하는 반면 유보된 소득은 법인세만 과세하고 소득발생 단계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셋째,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에 비하여 세제상으로 우대하고 있다. 기업차원에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이 되지만 배당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아 기업이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조달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비용이 저렴한 차입경영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제의 비중립성 문제를 검토해 보고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배당정책에 관한 제이론

기업의적절한배당정책이기업가치의극대화에기여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연구와 논쟁의대상이되어왔는데, 이와관련한논의는아래와같이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배당은 기업의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주장으로서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킨 이익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배당되어 주주의 수중에 있는 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시장의 불완전성(imperfect market) 및 현실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그들의 지분이 불확실한 기업의 미래 투자기회에 재투자되는 것보다는 안전한 배당으로 지급받기를 선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Gordon(1959)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불확실성의 크기는 소득이 실현될 미래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들은

미래의 배당 및 자본이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보이익보다는 당기배당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1].

둘째,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으로서 주주가 기업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주주의 수중에 넣어두거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Miller and Modigliani(1961)는몇 가지 가정[2]하에서 일정한 배당의 수령에 의한 부의 증가는 동일한 정도의 주가하락에 의하여 상쇄되고, 또한배당의 포기로 인한 유보이익의 증가는 포기한 배당액 크기만큼의 주가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주의 부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주장은 배당정책과 기업가치에대한학자들간에 논쟁의 동기를 부여하였다[3].

셋째, 배당이 기업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서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이 기업의 가치, 즉 주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의 핵심은 투자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을 차감한 후의 가처분소득이며, 따라서 배당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주가상승으로 실현되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중 어느 것이 높으냐에 따라 배당정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소득세율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제하에서는 투자자들은 유보이익에 의한 자본이득의실현을보다선호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4].

---

1) M.J. Gordon,“ Dividends, Earnings and Stock Prices,”*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59, pp.99 105.

2) 주요한가정들은아래와같다.
①기업이나개인의소득에대하여세금은없으며, 배당소득과자본이득사이에도차별과세가존재하지않는다.
②경영자와주주또는주주와기업의다른이해관계인간에는완전한정보가존재한다. 즉비대칭정보가존재하지않는다.
③배당을주식으로전환하거나기업이신규로주식을발행하는데있어서거래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
④투자와자금조달결정은배당과는별개의문제이다.
⑤대리비용이존재하지않는다. 기업의경영자, 주주, 채권자등의사이에이해관계에대한다툼이발생하지않는다.

3) M.H. Miller and F. Modigliani,“ Dividend Policy, Growth and the Valuation of Shares,”*Journal of Business*34, October 1961, pp. 411 433.

4) D. Farrar and L. Selwyn,“ Taxes,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Return to Investors,”*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67, pp. 444 454. M. Brennan,“ Taxes Market Valuation and Corporate Financial Policy,”*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70, pp. 417 427. R.H. Litzenberg and K. Ramaswamy,“The Effect of Personal Taxes and Dividends on Capital Asset Price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7, 1979, pp. 163 195.

기업의 배당정책은 배당과 사내유보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도록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업입장에서는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배당정책은 그기업이 배당을 증가시키면 결국 계획된 투자안의 실현을 위한 자금의 원천을 외부로부터 구해야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이나자금조달과도밀접한관계를갖는다.

III. 배당 및 배당정책의 의의와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

1. 배당 및 배당정책의 의의

배당은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은 이익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된다. 이익배당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결과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현금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주식배당은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을 분배하는것이다.

상법은 회사의 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462조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배당정책은 이익금을 배당과 재투자를 위한 사내유보금으로 나누는 재무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 즉 주가는 배당과 미래성장률의 함수로 표시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배당금이 클수록 기업의 가치가 커지며,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높아진다. 그러나 배당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투자를 위한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어 미래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당의 지급은 기업의 가치에 두 가지 서로상반된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 기업의 배당정책은 배당과 사내유보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배당정책은 그 기업이 배당을 증가시키면 결국 계획된 투자안의 실현을 위한 자금의 원천을 외부로부터 구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이나 자금조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의 고유한 의사결정 분야로서 기업이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기업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배당정책이정책당국에 의해 직접또는간접적으로 규제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을 살펴보면, 배당성향이 매우 낮고 배당수익률 또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금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규모와 관련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조사한 상장기업들의배당금규모추이는<표 1>과 같다.

조사대상이 된 12월 결산법인들 중에서 배당금지급회사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의 경우 총 561개 조사대상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실시한 법인의 수는 441개로 그 비율이 95.7%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여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의 경우 485개 조사대상법인 중 299개 법인만 배당을 실시하여 61.6%의 배당비율을 나타내었다. 2001년의 경우 조사대상이 된 450개 법인 중 64.7%인 291개 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배당을 실시한 법인들의 총 배당금 규모는 3조 3,290억원으로 나타났다[5].

<표 1>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현황 추이

(단위: 개, 억원, %)

결산 연도	회사수(유배당법인)		비율	당기순이익(A)	증감률	배당금총액(B)	증감률	배당성향 B/A
1990	461	(441)	95.7	24,072	- 0.3	9,398	+9.5	39.0
1991	465	(439)	94.4	26,227	+ 9.0	8,619	- 8.3	32.9
1992	458	(375)	81.9	24,845	- 5.3	8,774	+ 1.8	35.3
1993	462	(375)	81.2	21,942	- 11.7	9,335	+ 6.4	42.5
1994	480	(399)	83.1	44,470	+102.7	11,941	+27.9	26.9
1995	500	(404)	80.8	68,162	+ 53.3	14,979	+25.4	22.0
1996	528	(403)	76.3	24,343	- 64.3	14,840	- 0.9	61.0
1997	485	(299)	61.6	-4,859	-	9,623	-35.2	-
1998	445	(286)	64.3	-30,517	-	15,113	+57.1	-
1999	440	(324)	73.6	148,285	-	28,514	+88.7	19.2
2000	419	(299)	71.4	130,877	- 11.7	33,586	+17.8	25.7
2001	450	(291)	64.7	52,859	-59.6	33,290	- 0.9	63.0

주: 12월결산상장법인중금융업, 관리종목, 감사의견이적정이아닌회사등은제외.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5) 한편코스닥시장에서도 2001년의경우 12월결산등록법인들의배당현황을추정하고있다. 2001년 12월말현재등록된 12월결산법인 704개중에서정기주주총회미개최법인2개사및법정관리기업5개사를제외한 697개사가운데배당을실시한법인은 356개사로유배당법인비율은 51.1%에불과하여상장기업에비해유배당법인비율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배당금의총규모는 4,919억원으로액면가대비배당률은 16.23%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은 낮은배당성향과 낮은 배당수익률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90년대 배당성향은 30.5%로 미국(73.7%), 일본(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배당수익률 역시 1990년대 연평균 1.7%에 불과하여 국채수익률(12.8%), 정기예금이자(9.5%)에 비해 현저히낮다.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배당성향은 1996년과 2001년에 각각 61%와 63%로 높은 편이었으나, 그 이외의 연도에는 20%에서 40%사이에 머물렀다. 이는 1990년대 미국의 배당성향 73.7%와일본의배당성향 6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회사들의 2001년 액면가 기준 평균배당률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5%로 1990년이후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0년 10.3%에 이르던 평균배당률은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왔으나 1999년에 11.4%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13.3%, 2001년에는14.5%로증가하여왔다.

<표 2> 연도별 배당률 추이

(단위: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배당률	10.3	9.2	8.4	8.4	8.6	8.7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배당률	8.7	8.5	9.4	11.4	13.3	14.5

주: 배당률은각회사(유배당법인)의배당률을회사수로나누어단순평균함.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상장기업의 2001년 배당수익률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로 나타났다. 1990년대우리나라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1.7%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의 국채수익률 12.8%나 정기예금이자 9.5%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3> 배당수익률 추이

(단위: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배당률	1.9	1.7	0.7	1.8	2.2

주: 배당수익률 = $\frac{\text{대상종목의1주당배당금합계}}{\text{대상종목의주가합계}} \times 100$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IV.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제

1. 배당소득의 범위와 내용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에규정된배당소득의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6].

가. 일반배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건설이자의 배당[7]이 이에해당한다.

나.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도 법인으로부터받는 배당금 등과 같이 취급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있다.

다.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증권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증권투자신탁이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하며,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제외한다.

라. 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기업회계에서는 배당으로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된 것으로

6) 소득세법제17조.
7) 상법제463조(건설이자의배당): ①회사는그목적인사업의성질에의하여회사의성립후2년이상그영업전부를개시하기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때에는정관으로일정한주식에대하여개업전일정한기간내에일정한이자를그주주에게배당할수있음을정할수있다. 그러나그이율은연5분을초과하지못한다.
②전항의정관의규정또는그변경은법원의인가를얻어야한다.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일반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의제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건설이자의배당등을말한다.

처리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배당으로 처리된 사외유출금액같은것을 말한다.

마. 의제배당

아래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의 경우 주주나 기타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정한 금액 또는 주식 등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아래 열거항목에서의 금액은 이를당해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① 주식의소각이나자본의감소로인하여주주가취득하는금전, 기타재산의가액또는퇴사·탈퇴나출자의감소로인하여사원이나출자자가취득하는금전, 기타재산의가액이주주·사원이나출자자가당해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의한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③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초과하는금액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⑤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

⑥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또는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금액

바. 기타배당소득

이외에 아래와 같은 소득도 배당소득으로과세된다.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유사한성질의배당

② ①에서 언급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 것

2.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제

개인주주가받는 배당소득은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즉 현행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종합과세의 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및 기타소득금액과 더불어 배당소득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시행이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그동안종합과세에서 누락되었던 배당소득도종합과세대상으로바뀌게된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금융권의 배당,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및 기타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며, 대주주의 상장법인 배당과 비상장법인의 배당은 항상 종합과세된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5%와주민세 1.5%를 합하여 16.5%이다.

그러나 거주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상장 및 협회등록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주가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대하여소득세를부과하지않고있다[8].

8)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제1항및제2항.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부분조정방법으로서 gross-up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gross-up 방식이란 소득세를 과세할 때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동 합산한 법인세액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공제하는제도이다.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익금산입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즉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타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함으로써과세가완료된다.

한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관계에서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가 부담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개인주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주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수입금액의익금불산입제도를규정하고있다.

가. 소득세법상의배당세액공제제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 해소하는 완전조정방법과 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조정방법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부분조정방법으로서 gross-up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gross-up 방식이란 소득세를 과세할 때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동 합산한 법인세액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 때 배당가산액, 즉귀속법인세를gross-up 금액이라고한다.

현행 소득세법상gross-up 금액은배당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9].

gross-up 율 19%는 2001년 말 세법개정 이전의 법인세율(고세율 28%, 저세율 16%) 중 저세율인 16%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gross-up 금액은다음과 같이 구할 수있다.

9) 소득세법제17조제3항.

$$\text{gross-up 금액} = (\text{배당소득} \times \frac{1}{1 - 0.16}) \times 0.16$$

따라서 gross-up 율은 다음과 같다.

$$\text{gross-up 율} = \frac{0.16}{1 - 0.16} = \frac{19}{100}$$

이에 따라 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반면, 고세율이 적용되는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있다.

이상과 같은 배당세액공제제도에 의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배당소득을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개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당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배당소득이 아래와 같은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②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③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배당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같은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text{○ 배당세액공제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배당소득}}{\text{종합소득}}$$

나. 법인세법상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제도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인세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소득분부터 배당소득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분부터 이

법인세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소득분부터 배당소득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분부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수입배당금중일정금액을익금불산입한다.

중과세를조정하기위하여수입배당금 중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10].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대하여적용하며, 아래에 열거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① 배당기준일전 3개월이내에취득한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②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규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받는 수입배당금액

③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받는수입배당금액

한편 익금불산입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 익금불산입액 = 익금불산입대상액 - 익금불산입배제액

○ 익금불산입대상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

<표 4>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비율

출자대상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상장법인및등록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 · 비등록법인	50% 초과	50%
	50% 이하	30%

주: 지분비율은배당기준일현재3개월이상계속보유하고있는주식비율을기준으로계산함.

10)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text{익금불산입배제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다른 내국법인주식가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비율}}{\text{자산총액}}$$

이때지급이자는손금불산입되는지급이자(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등6종)를제외한차입금이자를말하며, 다른내국법인주식가액이란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받는다른내국법인주식의장부가액을말한다. 또한자산총액이란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이다.

다. 법인세법상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

한편법인세법제18조의2에서는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한익금불산입제도를규정하고있다. 즉내국법인중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가 자회사[11]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아래의 ① 및 ②에의하여계산한금액의합계액이③및④에의하여계산한금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①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전액을출자한경우에는자회사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액전액에상당하는금액

②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위의 ①에 제시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지주회사가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이자가있는경우에는 자회사에의출자와관련된차입금의이자중위의①및②에의한익금불산입비율을감안하여계산한금액[12]

④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일정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3]

11) 당해지주회사가출자한법인으로서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출자비율등을감안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2에서정하는요건을갖춘내국법인을말한다.
12)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2 제5항.
13)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거의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30% 또는 50%의 익금불산입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결국 이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은 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거의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30% 또는 50%의 익금불산입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5>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비율

출자대상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상장법인및등록법인	40% 초과	90%
	40% 이하	60%
비상장 · 비등록법인	80% 초과	90%
	80% 이하	60%

주: 1. 지분비율은배당기준일현재3개월이상계속보유하고있는주식비율을기준으로계산함.
2. 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전액을출자한경우에는자회사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액전액에상당하는금액이익금불산입됨.

V. 주요국의 배당소득세제

1. 미국의 배당소득과세

가.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종합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은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1% 세율의 특수원천세(Back-Up Withholding Tax)를 부과한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1986년의 세제개혁 이전에는 개인단계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100달러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14]. 또한 수취배당소득공제의 폐지와 관련하여 1992년에 발표된 재무부의 보고서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과세를 통합함으로써 기업형태나 자금조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을 지키는 4가지 방안, 즉 수취배당공제방식, 주주할당방식, 포괄사업소득세방식,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서 재무부는 주주할당방식은 집행상 곤란할 뿐 아니라 외국투자가, 비과세투자가 등에게 이익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적당하고, 임퓨테이션방식도 복잡하므로 수취배당소득공제방식이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법 개정도 용이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부의 보고는 입법화를 목적으로 하는보고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입법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있다.

나. 법인세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취배당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총소득에 포함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일정부분 익금에 불산입함으로써소득공제하고 있다.

우선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총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2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그 소득의 7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20% 80%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는 80% 공제, 지분율이 80%를 초과하면 수취배당소득의 100%를 공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투자법인(small business

14) 이 세제개혁의 원안이된 1984년의 재무부보고는 배당에대한이중과세의 문제점으로서 법인의 차입금에대한 의존심화, 투자자금의배분왜곡, 저축 · 투자억제등을지적하면서개인의수취배당에대한반액의소득공제제도도입을제안하였다. 또한 100달러까지의소득공제에대해서도투자자극의효과가적은반면세수의감소효과가 커폐지할것을제안하였다. 富永秀和(1997),『世界各國の證券稅制』, 稅務硏究會出版局, p. 121.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종합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통상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배당소득을 포함하는 모든소득은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있는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그 소득의 7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20% 80%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는 80% 공제, 지분율이 80%를 초과하면 수취배당소득의 100%를공제하도록하고있다.

investment company)으로부터수취한 배당금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규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그룹 내의 법인은 그룹 내다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100% 배당소득공제를받을 수있다.

미국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이 없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은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미국 내에서 수행된 사업에서 발생하여 미국에 의해서 과세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대해서는 70%(소유지분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80%)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계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국내법인은 100% 공제가 허용되고 해외영업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으로부터수취한배당금에 대해서도 100%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2. 일본의 배당소득과세

가. 개인소득세

일본에서는 개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연간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수취배당금의 액수에 따라 원천분리과세와 소액배당신고면제제도를 통하여 과세하고있다.

1) 종합과세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배당액의 지불시 먼저 해당회사에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액과 소득세액과의 차이는 확정신고 때에 청산을 하게 된다. 또한 종합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배당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① 과세총소득금액이1천만엔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의 10% 상당액

② 과세총소득금액이1천만엔을 초과하는경우: 아래의A와 B의 합계액

A: 배당소득금액 중 과세총소득금액으로부터 1천만엔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배당소득금액의5% 상당금액)

B: 배당소득금액중 위의A 이외의 부분(10% 상당액)

또한 차입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를 부채이자로 하여 배당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있다.

2) 원천분리과세

개인이 수취하는 중간배당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과세 대신 35%의 세율에 의한 원천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종목당 1회의 수취금액이 5만엔 초과 25만엔 미만(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0만엔 초과 50만엔 미만)인 경우이다. 그러나 그 법인이 발생한 총 주식 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없다.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모두 종료되지만, 차후에 종합과세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배당수입에서 채무이자를 공제하거나소득세의배당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소액배당신고면제제도

소액배당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모든 과세문제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1종목당 1회의 수취금액이 5만엔 이하(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0만엔 이하)인 경우이다. 소액배당신고면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배당수입에서 이자를 공제하거나 배당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액배당신고면제제도의 이용여부는 납세자의 자유이며, 확정신고를 하거나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것도가능하다.

일본에서는 개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연간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수취배당금의 액수에 따라 원천분리과세와 소액배당신고면제제도를 통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법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주식으로 보아 배당금의 전액이 익금불산입되며, 그 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80%만익금불산입된다.

나. 법인세

수취배당과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은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개인을 통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되고 있다. 즉 법인의 손익계산에 있어서는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익금에서 이 익금불산입액을 공제함으로써소득을계산한다.

그러나 親子會社의 관계가 아닌 주식은 일종의 투자물건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주식의 배당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실제로는 특정주식 등과 그 이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익금불산입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배당 등의 지불의무가 확정되는 날(주주총회일 등)의 6개월 전부터 발행된 총 주식 수의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특정주식으로 보아 배당금의 전액이 익금불산입된다. 반면에 그 이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80%만 익금불산입액의 대상이 된다.

한편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유가증권을 단기간 동안만 소유한 경우에는 수취배당금은 익금에 산입된다. 이는 배당락 전후에 주식 등을 매매함으로써 법인의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법인이 배당시에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고 배당락이 될 때 매각하면, 매매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고 더구나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의해 이중으로 세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종목의 결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중에서 결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수량의원금에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의계산대상이 되지않는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불하는 부채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취배당의 원금이 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로 된 부채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취배당이 전액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익금불산입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구할 수있다.

○ 수취배당금 - 단기소유분 배당금 =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초금액
○ 익금불산입액 =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초금액 - 부채이자) × 80%(특정주식의 경우 100%)

법인주주가다른법인으로부터 배당을받는때에는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즉 당해 법인주주의 법인세보다 선납되고 있는 것이며, 차후에 납부할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이 부분을 차감하게 되고, 공제하지 않는 때 또는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때에는 세무서로부터 환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세법상 이익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의미하는 본래의 배당 이외에도 법인이 해산할 때 자본 및 자본적립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행한 경우나 이익적립금의 자본추가 등을 행한 경우 등에는 법인의 유보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익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귀속되었다고 보는 유보이익상당액이 배당으로 간주되어본래의 배당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통상의 배당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간주배당'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과세를 '간주배당과세'라고 한다.

VI.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

1.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차감 후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주주에게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기업 소득에 대한 두 단계에 걸친 과세를 이중과세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적인 견지에서는 법인실재설을 따르느냐 아니면 법인의제설을 따르느냐에 따라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법률이 의제한 가공물이 아니고 사회적 실재체라고 보는 것이며, 법인의제설은 자연인과 같이 천부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적 수요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가설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법인실재설은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인의제설은 법인소득의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인의제설을따른다면 법인기업 소득에 대한 두 단계에 걸친 과세는 이중과세이므로 법인세는 당연히 폐지되어야하는것이다.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우리나라 배당세액공제제도와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몇가지문제점이있는것으로지적될수있다.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법학적인 법인본질론에서 출발한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쟁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와 법인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순 비교해 볼 때, 법인기업 소득이 이중과세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개인기업에 대한 과세는 기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함으로써 납세의 무가 종결되나 법인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그 기업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다시 배당과정에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기업 소득의 이중과세로 인해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부담이 크다면,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법인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이 과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배당세액공제제도와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몇가지문제점이있는것으로지적될수 있다.

먼저 배당소득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중과세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는 19% gross-up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중 저세율(15%)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만, 고세율(27%)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충분히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만 배당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있다.

다음으로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중과세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배당금 전액의 익금산입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전액을 출자한 지주회사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둘째, 법인주주가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을 더 높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주회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법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를 합치면 법인기업의 조세부담률이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15]. <표 6>에서와 같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부담을 단순 비교해 보자. 개인기업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인 36%에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소득할을 더하여 소득의 39.6%를 세금으로 부담한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인 27%에 법인세의 10%인 주민세소득할을 더하여 법인기업 소득의 29.7%를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 법인기업이 소득을 전혀 배당하지 않는다면 법인기업 소득의 29.7%의 세금부담으로 끝나는 것이며, 이 법인기업의 주주가 모두 개인이고 소득을 모두 배당한다면 법인기업은 소득의 49.5%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주주의 구성이 다양할 것이므로 결국 법인기업의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세부담률을 합치면 그 비율은 29.7%와 49.5%의 중간 어느 부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세부담에 비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 법인기업 및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률(최고세율 기준)

	법인기업	개인기업
최 고 세 율	27.0%	36.0%
주민세소득할	법인세액의 10.0%	소득세액의 10.0%
전 체	29.7%	39.6%
배 당 소 득	49.5%[1)]	
유 보 소 득	29.7%	

이와 같이 법인기업의 조세부담률이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이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에 비해 낮고 법인소득의 사내유보를 우리나라 세법이 배당에 비해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조세부

15) 이준규 · 이은상(1996)의 연구에서도 1977년부터 1995년까지 기간동안의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본 결과,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율이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는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법인의 이윤을 주가의 상승에 의해 우회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상장 · 비상장, 대주주 · 소액주주, 보유기간의 구별없이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담률이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낮다고, 흔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대로 gross-up 율을 높인다면조세중립성의 차원에서만본다면이를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현재와 같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배당소득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gross-up 율을높이는것만으로법인기업과개인기업간조세의비중립성을해결할수는없다. 따라서 다음에 논의할 배당소득과 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와 배당소득과 차입금 지급이자간조세의비중립성문제를함께고려하여해결해야할것이다.

2. 배당소득과 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

앞에서도논의한바와같은배당소득의이중과세문제는법인이배당과이익의유보사이의결정에있어서도이익의유보를선호하도록하고있다. 배당소득의경우법인기업의소득에대해법인단계에서법인세를부과하고법인세차감후소득이주주에게배당될때주주에게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반면, 유보된 소득은 법인세만 과세된 것으로 과세문제가 끝나기 때문이다. 기업이이익을사내에유보할때유보된금액만큼주식의가격이상승한다고가정하고주식양도차익에대하여적절히과세한다면유보와배당간조세의비중립성문제는발생하지않을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상장및등록주식의자본이득에는대주주를제외한주주들에게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표 7>에서보는바와같이 완벽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기때문에이익을유보하는것이이익을주주에게배당하는것보다훨씬유리할것이다.

세법이 이익의 유보에 대해 배당보다 상대적으로 세제상 우대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익의 유보에 대해 세제상 상대적인 우대를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기업의 자본축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 주식보유를 목적으로 현금배당을 선호하는 투자가들보다는 단기적 시세차익을 선호하는 투자가들의 증시접근을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주식양도차익 과세

구 분				세 율
비상장 · 비등록주식	대기업발행주식	중소기업발행주식		10%
		소액주주및대주주 (1년이상보유)		20%
		대주주 (1년미만보유)		30%
상장 · 등록주식	대주주[1]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발행주식	1년이상보유	20%
			1년미만보유	30%
	소액주주[2]			비과세

주: 1) 대주주의범위는지분비율3% 이상또는시가총액100억이상
2) 상장 ·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 ·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과세됨(세율: 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주식 20%)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배당과 내부유보의 조세 비중립적인 면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벗어나 안정성장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내부유보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가 배당에 비해서 내부유보를 지나치게 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주주는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법인의 이윤을 주가의 상승에 의해 우회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상장 · 비상장, 대주주 · 소액주주, 보유기간의구별없이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배당소득과 차입금 지급이자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

법인은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이용할 것인가 또는 타인자본을이용할것인가를결정하게된다. 만일배당소득과차입금지급이자간조세의비중립성이존재한다면기업의자금조달체계에많은영향을주게될것이다. 현행세법에서는자기자본을이용하는경우가타인자본을이용하는경우에비해불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기업이차입에의해서자금을조달하는경우주주단계에서이자소득에대해서소득세를부담하지만법인단계에서 보면 타인자본 사용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기업이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경우 주주단계에서 배당에 대해 소득세(또는 법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한 조세의 비중립성문제는 양 자본에 대해 동일한 세재상 혜택을줌으로써 해결하는방안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① 배당의 이중과세를 법인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 ② 배당의 이중과세를 주주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 ③①과 ②를 혼용하여해결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세)를부담해야하고, 법인단계에서배당지급액의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아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 제28조에서는 손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여 과도한 국내외 차입을 직접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6]. 즉 기업이 비생산적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때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자본의 조달비용을 상승시켜 타인자본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유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취득 · 보유에 관련된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 · 보유에 관련한 지급이자,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관련한 이자,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 이상인 기업)이 타법인의 주식이나 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연수원 · 휴양소용부동산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지급이자 등이다.

이와 같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에 의해 지급이자의 무제한적인 손금불산입을 방지하고 있지만 한도 내에서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법인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은 타인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보다 높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당연히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되는 자본조달결정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과도하게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기업

16)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액을산출하는산식은아래와같다.

$$\text{손금불산입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손금불산입사유에해당하는금액(한도는총차입금)}}{\text{총차입금}}$$

또한차입금과다법인의손금불산입액을산출하는산식은아래와같다.

$$\text{손금불산입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총차입금} - \text{자기자본4배에상당하는금액}}{\text{총차입금}}$$

의도산위험을 증가시킬 수있게된다.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한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해 동일하게 세제상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비중립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차입금 지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해 동일하게 세제상 혜택을 줌으로써 비중립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① 배당의 이중과세를 법인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 ②배당의 이중과세를 주주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 ③ ①안과 ②안을 혼용하여 배당의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있다.

차입금 지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해 조세의 비중립성을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배당이 이중과세되는 상황에서 차입금 지급이자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해 동일하게 세제상 혜택을 줌으로써 비중립성을 해결하려는 방안이 더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 방안들 중에서는 ①안은 법인단계에서 배당을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으로 보아 법인원천 중 배당되는 부분의 전체를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공제방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인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배당을 과도하게 촉진함으로써 기업의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②안은 현행 저세율을 기준으로 한 gross-up 방식에 추가하여 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기준으로 귀속법인세를 계산하여 그 귀속법인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법인에게 직접적인 세제상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인다거나 차입금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저세율을 기준으로 한 gross-up 율과 고세율을 기준으로 한 gross-up 율의 두 가지 gross-up 율이 필요하므로 제도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제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체계를 현행 복수세율체계에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하고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단일세율을 기준으로 전액 gross-up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복수세율체계는 이익을 적게 내는 법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배당의 이중과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③안은 법인단계에서 배당금의 절반 정도에 대해서 배당세액공제해 주고 주주단계에서 나머

현행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제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로 이중과세되고 있으며, 기업이익의 내부유보를 배당에 비해 세제상우대하고 있으며,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에 비해서 세제상 우대하고 있다는데에문제가있다.

지절반정도에대해서귀속법인세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하도록하는방안이다[17]. 이 방안은 제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법인에게는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기 때문에배당여력을증대시켜배당성향을높이는유인을제공하고, 주주에게는실질적인배당세액의감소효과를가져다준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③안이제도가복잡하다는단점에도불구하고다른방안들에비해서더타당한방안이라고생각된다.

Ⅶ. 결론

현행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제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로 이중과세되고 있으며, 기업이익의 내부유보를 배당에 비해 세제상 우대하고 있으며,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에 비해서 세제상 우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본시장 육성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것임을 감안할 때 배당과 유보이익 사이에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주는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법인의 이윤을 주가의 상승에 의해 우회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상장 · 비상장, 대주주 · 소액주주, 보유기간의 구별 없이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의 사용에 비해 타인자본의 사용을 세제상 우대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되는 자본조달결정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므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해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해 동일하게 세제상 혜택을 줌으로써 비중립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세제를 개편함으로써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배당소득과 내부 유보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 그리고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를 해결

17) 이방안은한국상장회사협의회,『배당소득세제의개선방안』, 1997. 이제안한정책방안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법인기업과 개인기업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방법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치[18]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배당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전체 조세체계 및 세율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8) 만일완전한금융소득종합과세가시행되고유보이윤에대한과세로서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제도가완벽히정비되고법인세율과소득세율이동일하다고가정하면, 이는법인세를폐지한것이나마찬가지로볼수있다.

일본 소득과세의 경제효과

鞠 重 鎬 일본요코하마시립대학경제학과교수

제1절 최근 일본 세제개혁의 흐름

본고는 일본의 개인소득과세와 법인소득과세의 경제효과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2002년 11월 발행한『경제재정백서』제2장에서「경제활력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소득과세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1]. 본고는 일본 세제개혁과 관련된 최근 상황 등을 설명하고, 동 백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본 소득과세의 경제적인 효과를 정리하고 있다. 다만, 필자 나름대로 동 백서의 복잡한 전개 등을 다듬고 다른 참고문헌을 보충하여 가능한 한 알기 쉬운 설명이 되도록노력하였다.

일본의 세제개혁은 크게 나누어 세 기관에서 담당한다. 일본정부 세제조사회, 여당(자민당)의 세제조사회[2], 경제재정자문회의가 그것이다. 일본정부 세제조사회는 내각총리(수상)에게 자문하는 형식으로 세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제개혁의 실행계획(plan)을 만드는데, 이 실행계획을 정리한 것이 수상의 자문에 대한 답신이 된다. 여당 세제조사회에서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정치적으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세제조사회가 제출한 답신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의 세제개혁 논의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세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조세정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위치시켜 논의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세제를 둘러싼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 실시를 둘러싸고 긴 시간을 두고 조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세제개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되는 심의회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감세정책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속성을 지닌다.

최근 일본 세제개혁과 관련된 상황 전개를 보기로 하자. 1990년대 초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진행된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되면서 재정적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의 국세 수입은 1991년 62.3조엔으로 피크에 달했으나, 2003년의 예산치를 보면 41.8조엔으로 1991년 규모의 3분의 2(67.0%)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일본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추이를 보면 1991년 70.5조엔에서 2003년도 예산은 81.8조엔으로 증가하고 있다.

1) 제1장은「경제회복의전망」, 제3장은「일본경제의활성화를위한과제」이다.
2) 현재일본은自民黨, 公明黨, 保守黨의연립정권이나실권은자민당에있다.

그 결과 중앙정부 세출에서 차지하는 국세 수입의 비중은 1991년 84.8%에서 2003년 51.1%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3].

이와 같은 심각한 재정상황을 인식하여 일본 정부(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02년 1월 18일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 전망」을 발표하였다. 그 후 2002년 6월 25일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지침 2002」를 발표하고 있는데(간단히 「기본지침 2002」)[4], 이 기본지침은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구조개혁 없이 경제성장 없다.'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이다. 「기본지침 2002」의 세제개혁에 관한 언급을 보면, "21세기에 걸맞는 포괄적이고 근본(발본)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세율을 낮게 하며 간소한 세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일본정부 세제조사회(2001, 2002)가 내세우고 있는 세제개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제개혁의 원칙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있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이즈미 정권 이전 일본에는 세제개혁의 방향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정부 세제조사회와 자민당 세제조사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고이즈미 정권에서 구조개혁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실현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경제재정자문회의라는 기구에서 경제재정의 다방면에 걸친 개혁 방향을 제시하여 온 것이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타케나카(竹中平藏) 경제재정담당장관 등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동 자문회의에서는 그 동안 일본정부 세제조사회가 '공평·중립·간소'로 하고 있던 세제개혁의 기본원칙을 '공정·활력·간소'로 하여 '중립'보다는 '활력'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시(石弘光)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 회장은, '활력'이 아닌 '중립'을 세제개혁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2002년 4월 20일자 아사히(朝日)신문의 「나의 관점」란에 발표하였다. 이시(石) 회장의 기고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기고문에서 밝힌 이시(石) 회장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중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활력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세제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환경오염이나 연구개발비의 부족 등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정부의 개입이 인정될 때이다. 또는 자가주택 취득 등의 개별정책이 국익과 관련이 깊다고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세제의 변경이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활력이라는 관점(기준)은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무원칙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비해 '중립'과 '활력'의 기준을 그리 대립하지 않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경제재정백서』(2002)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언급을 보자.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세제의 기준으로서 '공평·중립·간소'를 들고 있는데, 「기본지침 2002」에서는 이를 '공정·활력·간소'로 하고 있다. 이때 '중립'의 기준은 세제가 가능한 한 개인이나 기업이 행하는 경제활동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활

3) 稻垣光隆編(2002), 內閣府(2002), 朝日(아사히)新聞(2002. 12. 24).
4) 이 기본지침은 일본 官邸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에서 검색할 수 있다.

력 이란시장의자원배분기능을저해하지않고효율적인자원배분이최대한발휘되도록한다는의미로파악할수있다. 시장기능발휘에따른자원배분이종전보다중시되고정부의역할도바뀌고있으며, 개인이나기업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사회의' 활력'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중립'의 원칙은 한층 중요성이 더해가고있다고생각된다(내각부(2002, p.91)). "

이상과 같이' 중립'과' 활력'의 기준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동 백서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경제활력을 지탱하는 새로운 세제의 디자인을 위한 세제개혁을 어떻게 단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동 백서에서는 개인소득과세와 법인소득과세의 세부담의 실태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득과세의 경제효과에 관한 분석이나 세제개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나 실무자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의 제2절에서는 개인소득과세의 국제비교와 소득세부담의 누진성에 대해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법인과세의 국제비교 및 부담수준과 함께 일반균형(CGE)모델에 따른 법인과세효과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 제4절은 일본 소득과세에 대한평가와시사점에 관한언급이다.

제2절 개인소득과세

1. 국제비교

「기본지침 2002」의 세제개혁에 관한 언급을 보면, "21세기에 걸맞는 포괄적이고 근본(발본)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세율을 낮게하며간소한세제를구축한다."고되어있다.

1) 소득세의누진구조비교

현행 일본의 개인소득과세는 1987년과 1988년의 발본(근본)적인 세제개혁에 의거하고 있다. 이 시기의 개혁으로 개인소득과세의 부담을 낮추고 세제에 대한 불공평감을 해소하고자 소비세의 창설과 함께 개인소득과세의 세율구조 완화, 인적공제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한 소득세 · 주민세의 감세, 노인저축우대제도(마루 유)의 원칙 폐지 및 이자소득의 원천분리과세, 주식양도익 원칙 과세화를 통한 자산성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이루어졌다. 그후 1994년의 세제개혁을 통한 세율구조의 개정, 개인소득과세의부담 경감, 1999년 경기진작을 위한최고세율인하와 20%의정률감세가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개인소득과세는 1980년대 이후의 계속적인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위축되어 왔다. 일본의 국세소득세는 1990년 국세 수입의 41.4%, 주민세(도부현민세와 시정촌세의 합계)는 지방세 수입의 44.1%를 차지하는 등 기간세로 자리잡고 있었다[5]. 2002년(예산) 국세소득세는국세 수입의 32.4%, 주민세는 지방세 수입의 33.6%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의 현행 개인소득세 누진구조

5) 大武健一郎編(1992)『圖說日本の稅制』1990년광역자치단체의도부현민세는도부현세수입의32.6%, 기초자치단체의시정촌민세는시정촌세수입의 54.3%를 차지하고있다.

를 나타낸 <표 1>을 참조하면서 일본의 누진세율구조를 주요국과 비교하여 보자.

<표1> 국채발행추이(누계 기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최저세율(%)	9	10	10	10	20	7.5
최저세율(%)	36	37	40	40	48.5	52.75
세율계층수	4	4	3	3	-*	6

*독일은세율방정식체계로되어있어세율계층수가없다.
자료: 재정경제부(2002)『조세개요』
내각부(2002)『경제재정백서』

1986년 미국에서는 그 동안 11%와 50%의 세율범위 내에서 14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던 소득세체계를, 각종공제제도의폐지와함께과세베이스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세율구조도 15%와 28%의 2단계로 대폭 완화하였다. 1993년에는 15%와 39.6%의 세율범위 내에서 5단계의 누진구조로 하였으며, 과세베이스의확대를 단행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현재는 최저세율 10%와 최고세율 40%의 세율범위 내에서 3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나, 2002년 부시정권의 감세정책에 따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누진세율구조를 10%와 35%의 세율범위내에서6단계로할것을계획하고있다.

1979년 탄생한 영국의 대처 정권은 부가가치세율을 8%에서 17.5%로 인상하는 개혁과 함께, 소득세 누진세율구조의 간소화 및 누진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그후 일련의 개혁을 거쳐 현행 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는 10%에서 40%의 세율범위와 3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누진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저세율 20%와 최고세율 48.5%로 되어 있으나 세율방정식 체계로 되어 있어 세율계층 수가 없다. 독일은 2005년까지 최저세율 15%와 최고세율 42%로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82년 5%에서 65%까지의 세율범위와 13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점차 간소화하여 현재는 최저세율 7.5%, 최고세율 52.75%의 6단계 누진구조로되어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국세소득세는 10%, 20%, 30%, 37%의 4단계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세율구조는 1980년 소득세의 누진구조가 최저세율 10%, 최고세율 75%의 19단계로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간소화된 것이다. <표 1>로부터 일본의 최저 · 최고 세율구조 모두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있음을알 수 있다.

2) 소득과세의부담률비교

국민소득 대비 국세소득세의 부담률을 보면 1980년 7.4%에서 2002년 4.3%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주민세의 합계로 본 개인소득과세의 국민소득대비 부담률도 1980년 10.4%에서 2002년 6.8%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87년 9월의 발본적인 세제개혁 이후 계속적인 누진구조의 완화와 과세최저한의 인상조치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과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줄어드는 개인소득과세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공동화를 막아 개인소득과세를 기간세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정부 세제조사회(2002)의 기본입장이다.

주요국의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을 보인 <표 2>를 참고하여 일본 소득과세의 부담을 주요국의 소득과세와 비교하여보자.

<표2>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의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국세소득세/국세수입	21.6	32.4	74.5	36.3	38.0	32.7
국세소득세/국민소득	3.9	4.3	11.7	13.9	10.2	11.2
[지방소득세포함시]	[4.6]	[6.8]	[14.2]	-	[12.8]	-

주: 한국은 2001년실적베이스이고, 국민소득의경우 2001년국민처분가능소득을이용하였다. 일본은2002년당초예산베이스이고, 그외의국가는모두 1999년의값이다.
자료:재정경제부(2002)『조세개요』,
한국은행(2002)『경제통계연보』,
내각부(2002)『경제재정백서』

<표 2>로부터주요국의국세수입에서 국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이 32.4%인 데 비하여, 미국 74.5%, 영국 36.6%, 독일 38.0%, 프랑스 32.7%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은 현재 다른 주요국에 비하여 개인소득과세의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비중을 보아도, 일본이 6.8%인 데 비하여, 미국 14.2%, 영국 13.9%, 독일 12.8%, 프랑스 11.2%의 수준으로 국민소득 대비 부담률도 다른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이 낮게 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1990년대의 경기침체, 소득세감세정책, 그리고 소비과세의 상대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 일본은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일본의 국세소득세는 10%, 20%, 30%, 37%의 4단계의누진세율구조로되어있다. 이러한세율구조는 1980년 소득세의 누진구조가 최저세율 10%, 최고세율 75%의 19단계로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면매우간소화된것이다.

도 개인소득과세의 감세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일본의 개인소득과세가 비록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다고는 하나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국세수입에서 국세소득세의 비중이 21.6%로서 일본에 비하여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국민소득에로 차지하는 국세소득세의 부담률을 보아도 3.9%로일본에비해낮은수준이다. OECD 회원국과비교하여 보아도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 OECD 29개 국가 중 최하위(1999를 기록하고 있다[6].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을것이다.

2. 소득세부담의 누진성

실질적인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을 고려한 세부담의 실질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경제재정백서』에서는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급여소득을 대상으로 세대유형별로 소득세의 실효세

6) OECD, Revenue Statistics.

율(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정 후의 세율)의 추이를 계산하고 있다. 이 중‘ 전업주부+자녀2인 ’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부담 정도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7], 1970년대에는 1974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대폭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크게 저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후 물가상승의 영향도 있어 실효세율이 상승하였으나, 1987~1989년의 계속적인 세율인하와 세율구조의개정으로실효세율은다시하락하였다. 이러한 세율인하가 가능하였던 것은 거품경제의 영향으로 일본의 소득세 세수의 증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도 1994년의 특별감세 및 동년 11월의 발본개정, 1998년의 특별감세, 1999년의 정률감세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를 통하여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과세의소득재분배기능도저하하게되었다.

일본의 1990년대 급여소득과 소득세액의 분포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개인소득과세 부담의 누진성을보기로 하자. 소득세부담의누진성이라고하는 것은소득에비하여얼마나 많은 세부담을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므로 각 소득계층의‘ 소득세액비율/급여수입비율 을 누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이용할수 있다. 이값이클수록소득금액에비하여 세부담액이 많다고 하는 것, 즉 누진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1990년, 1995년, 2000년을취하여 소득세부담의 누진성을‘ 소득세액비율/급여수입비율의 값을계산하여나타내고있는것이<표3> 이다.

<표 3> 소득세부담의누진성: 각소득계층의 ‘ 소득세액비율/급여수입비율 ’

소득계층	1990	1995	2000
300만엔이하	0.50	0.49	0.46
300만엔초과 500만엔이하	0.64	0.62	0.63
500만엔초과 800만엔이하	0.80	0.73	0.73
800만엔초과 1000만엔이하	1.28	1.17	1.11
1000만엔초과 1500만엔이하	2.03	1.86	1.72
1500만엔초과 2000만엔이하	3.35	2.92	2.94
2000만엔초과	4.91	4.68	4.88

자료: 내각부(2002)『재정경제백서』원자료는 일본 國稅廳『稅務統計から見た民間給與の實態』

<표 3>을 세로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높을수록) ‘ 소득세액비율/급여수입비율 로 나타낸 누진성 척도의 값도 낮음(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소득세체계가 누진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3>을 가로로 보면 시계열적인 소득분포의 누진성 추이를 알 수 있다. 1990년과 2000년을 비교하여 볼 때 모든 소득계층에서 누진성이 저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300만엔 초과 500만엔 이하의 저소득계층은 누진성의 척도가 0.64에서 0.63으로 조금밖에 변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하여, 1500만엔 초과 ~ 2000만엔 이하의 고소득계층은 그 값이 3.35에서 2.94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세의 누진과세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

7) 『경제재정백서』에서는남편을세대주, 부인을소득이없는전업주부, 자녀는 17세와 15세의2명, 인구 5~50만명규모의도시에거주하는세대를가정하고있다. 일본에서는그동안 전업주부+자녀2인 을표준세대로하여이들세대의세부담을제시하는경우가많았지만, 여성의사회진출이늘어나면서이표준세대의개념도변하고있는과정에있다.

으로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듯이 지니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취하고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포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동 백서에서는 후생노동성이 「국민생활기초조사」의 개표(個票) 데이터(개인의 생활패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소개하고있다.

재분배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과세전(사회보장지출 전)과 과세 후(사회보장지출 후)에 있어서의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재분배계수로 하여이용하고있다. 재분배계수가클수록소득과세에 의한 재분배효과도 크게 된다. 계산결과에 따르면 재분배계수는 1991년 0.070에서 1995년 0.051, 1997년 0.056으로 감소하고 있다[8]. 이 후생노동성의 계산결과로부터도 1990년대 개인소득과세의 재분배효과가저하하고있음을알수있다[9].

개인소득과세의 재분배효과가 저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보장정책에 따른 재분배효과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분배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후생노동성의「소득재분배조사」이다. 이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조세의 재분배효과는 감소되고 있는 데 비하여 사회보장에 따른 재분배효과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재분배계수의 추이를 보면 조세에 의한 재분배계수는 1980년 5.4%, 1989년 2.9%, 1998년 1.3%로 하락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회보장에 의한 재분배계수는 1980년 5.0%, 1989년 12.5%, 1998년 17.1%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소득세의 누진과세에 의한 재분배효과보다는 사회보장지출에 의한 재분배효과가중시되고있다.

소득세 부담의 누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므로각 소득계층의‘ 소득세액비율/급여수입비율 을 누진성을나타내는하나의척도로이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개인소득과세의 한계세율을 이용한 부담구조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하자. 개인의 행동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조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이는 한계세율이다. 동 백서의 계산결과에 따르면,‘ 전업주부+자녀2인 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간 급여소득 700만엔까지는 10% 정도, 900만엔은 20%대, 1200만엔은 30%대, 1400만엔은 40%대의 한계세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급여소득의 증가와 함께 한계세율이 상승하는 이유로는, ① 소득세와 주민세의 적용세율이 상승한다고 하는 점 ② 급여소득공제율이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점을 들수 있다.

8) 소득으로서는고용자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급여의합계액을이용하고있다.
9) 내각부에서계산한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과세 전(당초) 소득의경우는 1991년 0.371에서 1997년 0.380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세 후 재분배소득의경우도 1991년 0.345에서 1997년 0.358로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1년에비해 1997년의소득분포가약간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내각부(2002, p.98).

제3절 법인소득과세

1. 국제비교

일본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합한 법인 수는 2000년 현재 약 286만개에 이른다[10]. 법인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으로서는 국세법인세, 지방세로서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가 있다. 법인주민세로서는 도부현민세(광역자치단체세)와 시정촌민세(기초자치단체세)에 각각 법인세할과 법인균등할이라는 4가지 종류의 주민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법인은 국세법인세 이외에 지방세로서 5가지 세금을 부담하고있다.

일본의 법인세율을 주요 국가의 법인세율과 비교하여 보자. <표 4>에서는 주요국의 법인소득과세 세율을나타내고 있다.

<표 4> 법인소득과세 세율의 국제비교(2001)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법인실효세율(국세)	27.0	27.37	31.91	30.0	22.05	34.33
[지방법인과세포함시]	[29.7]	[40.87]	[40.75]	-	[38.44]	-

자료: 재무성(2002)『재정금융통계월보』(조세특집).
내각부(2002)『경제재정백서』p.130.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권 이전에는 법인소득과세 세율이 50%를 넘는 수준이었으나 그후 각종 우대조치의 개정에 따른 과세베이스의 확대와 함께 세율인하가 실시되어 현재는 <표 4>에서 보듯이 40.75%로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대처정권 당시 대폭적인 법인세의 인하가 있었다. 1980년대 초 영국의 법인실효세율은 50%를 넘는 수준에서 1985년에는 35%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적으로 인하되었다. 현재의 법인세율은 30%로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주요국가 가운데 법인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1993년 유럽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서 1994년에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경쟁력의 확보, 투자촉진, 고용확보, 구동독지역의 부흥을 도모하였다. 2001년에는 법인세율을 48.55%에서 38.47%로 대폭적으로 인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초에는 법인세율이 50%로 높았으나 그 후 계속적인 인하를 단행하여 1990년대에는 30%대로 인하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35.33%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그 동안 37.5%였던 국세기본세율을 1998년에는 34.5%로, 1999년에는 이를 다시 30%로 국제적인 수준에까지 낮추는 개혁을 실시하여왔다[11]. 그 결과<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현행 일본의 법인실효세율은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하여 그리 높게되어있지는않다.

이상의 경향으로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폭적인 법인세율의 인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2]. 이러한 법인세율의 인하경쟁은 세수의 감소나, 조세체계의 공평성, 중립성을 손상시키는 소위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가져오

10) 稻垣光隆編(2002)『圖說日本の稅制』
11) 1984년에는법인세율이43%까지상승하였다.
12) 대부분의국가에서법인실효세율의인하와함께법인과세베이스의확대를도모하고있다.

게 된다. OECD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협조를 통한 권고 등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는 위에서 든 국가들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실정이다. <표 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과세 세율은 29.7%이다. 또 <표 4>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대만의 법인세율은 25%, 싱가포르는 24.5%로 되어 있다(내각부(2002, p.130)). 이때문에 OECD만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조정은 어렵게 된다. 물론 해당국가의 경제 · 사회구조, 공공서비스의 수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정세율만의 국제비교는 한계가있다.

2. 법인세 부담수준

1) 법인의실제세부담률

법정 실효세율만으로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측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액계산시에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나 가산분 등 과세베이스와 관련되는 조정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우선 실제의 세부담률을 거시데이터(세무통계로 본 법인기업의 실태)를 이용한 법인소득과세의 세부담률(실제 세부담률이라 부르기로 한다)을 보기로 하자[13].

이 계산결과에 따르면, 법정 세율과 실제 세부담률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이 둘 간에 그리 차이가 없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차이가 크게 벌어지

일본에서도 그 동안 37.5%였던 국세기본세율을 1998년에는 34.5%로, 1999년에는 이를 다시 30%로국제적인수준에까지 낮추는개혁을실시하여왔다.

고 있다. 2000년의 경우 법정 실효세율이 40.87%인 데 비하여 실제 세부담률은 46.4%로, 실제 부담률이 법정 세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독일, 영국 기업의 실제 세부담률은 40%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내각부(2002, p.140)). 이 결과로부터 일본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기업의 실제 세부담률은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시데이터로 본 기업의 세부담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경제재정백서』(2002)에서는 일본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같은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할 때 법인소득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시산하고 있다. 선택한 업종은 전자(electronics), 철강, 자동차, 정보서비스, 소매의 5업종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매출액 상위 5개사이다. 이들 5개사를 추출하여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의 수치를 단순 평균하는 형식으로 모델기업의 재무제표를작성한다음, 이모델기업이같은사업내용, 같은 재무제표로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사업활동을한경우의세부담을비교하고있다.

13) 동 백서에서는 법인소득과세와 관련된 실제 세부담률을, (법인세액 + 법인사업세액 + 법인주민세(법인세할) ± 세액공제/가산액)/(과세소득 + 전년도법인사업세액)에기초하여계산하고있다.

각국 2001년 4월 1일 당시의 세제를 적용하여 비교한 계산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종의 모델기업이 일본에서 부담하는 법인소득과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자산업의 모델기업을 보면 미국에서 6%의 부담, 영국에서 14%, 프랑스에서 21%인 데 비하여 일본에서는 29%로서 일본에서의 법인소득과세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있다.

이상의 결과는 일본에서의 법인소득과세 부담이 법정 실효세율에서 보인 차이 이상으로 법인과세 부담이높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준다. 그요인으로서 과세소득을산정하는과정에서의익금 · 손금의설정이나 과세소득에 세액 산정후의 각종 세액공제 · 가산등에서차이가난다고하는점을들수있다.

2) 기업입장에서본법인소득과세의부담수준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 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과세소득금액 에 법정실효세율 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 납부하는 세금 에는 세전 당기순이익과 대응하지 않는 조세비용 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세전 당기순이익과 법인세액과의 차이인 세후 순이익이 기업의 업적을 나타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이 법인과세 부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경제재정백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세효과회계[14] 내용을 중심으로설명하기로 한다.

법인의 비용 및 손실항목의 규정이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법인소득과세의 부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조세효과회계기준에서는 조세효과회계를 기업회계상의 자산 또는 부채액과 과세소득계산상의 자산 또는 부채액이 상호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법인세[15] 를 당해 기간의 기업활동에 상응하도록 적절히 맞추어 배분함으로써 법인세공제 전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를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라고 하고있다(내각부(2002, p.134)).

일본 재무성 조사에 따르면, 2000년도까지 조세효과회계를 도입한 기업 수는 77,631개사로서 전체기업 수의 3%라고 한다. 자본계급별로 보면,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기업에서는 98.0%의 기업(5,361개), 자본금 1억엔에서 10억엔 규모의 기업에서는 60.8%가 이미 도입하고 있다.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세부담감)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조세비용(tax cost)으로부담하는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조세회계효과의 개념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를 조세효과회계 적용 후의 법인세 부담비율 이라고 하고있다.

조세효과회계란 이와 같은 회계상의 손익 과 세무상의 손익 의 인식차이를 수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며, 국제회계기준에 걸맞은 세계표준(global standard)라고 할 수 있다. 조세효과회계에서는 법인세의 기간배분을 고려하여 기간에

14) 일본어로는稅效果會計라하고있으나여기서는조세효과회계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15) 법인세만이아닌기타이익에관련되는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세금액도포함하고있는데, 원문에서는이를 법인세등 이라하고있으나본고에서는간단히법인세라고하기로한다.

대응하지 않은 미리 지불한 법인세액(법인세 선불분)을 '이연세금자산'으로 하고, 그 반대의 법인세 후불분을 '이연세금부채'로 계상한다[16].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기업은 당기의 세전 당기순이익에 대응하는 조세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000년도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조세효과회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보면, 이연세금자산이 19.4조엔, 이연세금부채가 3.9조엔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2000년도에 납부하는 세금(27.8조엔)에 비하여 15.5조엔이 적게 되어' 조세효과회계 적용 후의 법인세부담액'은 12.3조엔이 된다. 반대로 세후 당기순이익은 15.5조엔이 증가하게 된다[17].

조세효과회계 적용 후의 법인세를 세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조세효과회계 적용 후의 법인세 부담비율(A)'을 구할 수 있다. 이 부담률과 법정세율(B)의 괴리를 보면, 조사대상기업 286개사 가운데 A가 B를 상회하고 있는 기업은 78사(조사대상기업의 27.3%), A가 B를 하회하고 있는 기업은 65사(조사대상기업의 22.7%)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기업간에 법인세 부담감의 차이가 상당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업종별로 보면, 수산 · 광업 · 건설업에서 A와 B의 괴리(=A - B)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의 부담세율이 높게(무겁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계 · 전기기기 산업에서 그 괴리가 작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의 부담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가볍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세부담감)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조세비용(tax cost)으로 부담하는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같은 법인소득과세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효과회계 적용 후의 법인세부담에 대해서는 기업에 따라 상당 정도 그 부담감을 다르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한 법인소득과세의 효과

법인소득과세는 자본이나 노동의 가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간의 생산요소의 이동이나 생산량의 변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법인소득과세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소득과세의 변경에 따른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분석은 미국의 퍼듀(Purdue)대학의 헤르텔(Hertel)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개발한 응용일반균형분석(CGE)모델이 널리 응용되고 있다. 이 모델은 가계나 기업이 효용극대화나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재화나 생산요소의 가격변동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어 복수시장의 균형이 동시에 달성된다고 하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재정백서』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일본 법인

16) 법인세 선불분의 예로서는 감가상각비의 상각한도초과액, 각종충당금의 전입한도초과액 등을 들 수 있다. 법인세 후불분의 예로서는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별상각준비금에의 전입, 감가상각자산 압축적립금의 전입 등이 있다.
17) 내각부(2002, pp.134-135).

소득과세에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18]. 케이스 1은 자본총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만을 포착하는 경우이고, 케이스 2는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에 더하여 자본축적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하는 경우이다.

동 백서에서는, 이용하는 모델[19]이 법인소득과세에 의한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법인소득과세 10% 인하에 따른 각 산업별의 변화폭을 계산하고 있다[20]. 각 산업별 자본비용의 변화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표 5>이다.

<표5> 법인소득과세 10% 인하에따른 각산업별자본비용의 변화

(단위: %)

농림수산업	광업	식료품	섬유·의복	화학·석유	금속	수송기계	전기기계
-3.4	-3.2	-3.2	-3.5	-2.9	-3.3	-2.6	-2.2
기타설비기계	기타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업	통신업	운송업	기타서비스업	
-3.0	-3.0	-2.1	-3.1	-2.3	-1.8	-3.7	

자료: 내각부(2002)『경제재정백서』p.149.

위의 결과를 보면 법인소득과세의 인하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각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의 하락폭이 큰 산업일수록 법인소득과세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는 산업이 된다. 운송업이나 전력 · 가스 · 수도업, 통신업, 전기기계가 비교적 자본비용의 하락폭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섬유 · 의복, 기타서비스업의 하락폭이크게나타나고있다.

이와 같이다르게나타나는 이유로서 동 백서에서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산업에 따라 설비의 상각년수가다르다고하는점이다. 예컨대수송기계나전기기계와같이설비의상각년수가짧은산업에서는상각액의현재가치가높게되기때문에자본비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 다음으로 산업에 따라 차입금의 금리가 다르다고 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예컨대 운송업이나 전력 · 가스 · 수도업과 같이 차입금 금리의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는 자본비용의하락폭이상대적으로작게된다.

이상과 같은 법인소득과세 인하에 따른 각 산업별 자본비용에의 영향을 모델에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는다음과같다.

자본총량이 고정되어 있는 케이스 1에서는 자본요소가격의 하락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나, 자본축적의 효과를 고려하는 모든 산업에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인다. 케이스 1에서는 자본총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자본가격이 변화하면 자본투입량이 변화하나,

18) 동백서의시뮬레이션은 1)처음의균형점과새로운균형점만을비교하기때문에이들균형간의이행과정을보이는것이아니라는점 2)정부부문의재정수지에대한영향은파악하고있지않다고하는점3) 1997년이기준으로되어있어그후세계경제의구조는크게변하였을가능성이있다고하는점등의한계가있다.

19) 백서에서이용하고있는것은 GTAP모델인데, 이는국제무역이세계각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 1992년설립된세계무역분석센터(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에의해개발된응용일반균형모델이다. http://www.gtap.agecon.edu/에서는GTAP모델의모델방정식체계와데이터셀이함께제공되고있다.

20) 자본비용에대한효과는 [C = J(1-k-tz)((1-t)i + d)/(1-t)P] 식에기초하여계산하고있다. 이식에서C는자본비용, J는자본재가격, k는 투자감세공제율(k = 0), t는 법인실효세율(1997년 49.98%), z는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i는 부채이자율, d는 감가상각률, P는 생산물가격(GDP 디플레이터)이다.

어떤 산업의 자본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투입량이 감소하는 산업이 반드시 있게 되므로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는 한정적이다. 이에 비해 케이스 2에서는 자본비용의 하락에 따른 자본재의 수요증가가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결과를보이는것이다.

산업별 재화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서 광업과 정부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재화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케이스 2에서는 케이스 1보다도 재화가격이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자본요소가격의 하락이 제품가격의 저하로 연결되는 효과가 케이스 2에서 상대적으로크게 나타나고있음을의미한다.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케이스 1에서는 기타설비기계, 수송기계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되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기타서비스업, 섬유 · 의복업 등 생산량이 증가하는 산업에서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와는 달리 케이스 2에서는 전기기계, 수송기계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산업과 악화되는 산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수송기계산업에서는 무역수지가 개선되나, 광업, 기타제조업 등에서는 악화되고있다.

법인소득과세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소득과세의 변경에 따른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분석은 응용일반균형분석(ＣＧＥ모델이널리응용되고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 및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케이스 1에서는 실질 GDP와 경제후생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케이스 2에서는 실질 GDP가 2.8% 증가하고 경제후생 수준도 GDP대비 0.8%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케이스 1에서는 자본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어떤 산업의 생산량의 증가는 다른 산업의 생산량의 감소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며, 케이스 2에서는 생산량의 증가에 대응하여 실질 GDP가 증대하기때문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소득과세의 인하에 따른 자본비용의 하락은 자원배분에의 영향을 통해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 ② 자본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산업간의 자원 재배분에 머물게 되므로 생산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점, ③ 자본축적을 고려하면, 소득의 증가가 저축 ·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자본스톡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각 산업의 생산량 증대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21].

21) 이때국내저축을통한경로인가해외자본유입을통한경로인가에따라자본축적의정도가다르기때문에무역수지등에미치는영향은다소다르게나타난다. 동백서에서는자본축적의원천으로서국내저축을상정하는경우(케이스 2a)와, 해외저축이국제간의자본수익률등의차이를반영하여나타나는경우(케이스 2b)로나누어시뮬레이션을하고있다. 내각부(2002, pp.155 ~ 156).

제4절 일본 소득과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 개인소득과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일본의 조세정책은 1955년 이후의 자민당 장기 집권과 함께 감세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소득세 감세정책이 중심이 된다. 일단 감세가 이루어지면 증세로 되돌리려 할 때 심한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조세저항을 무릅쓴 정책보다는 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일본의 공채 누적규모는 2002년 12월 현재 약 700조엔 규모로 GDP의 140%에 이르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상황의 개선 여지가 그리 희망적이 아니라고 하는점이다.

일본은 1990년대의 평성불황시기에도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과세최저한의 인상과 세율의 인하를 통한 계속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1989년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던 소득과세의 비중이 68.1%로서 24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던 것이, 1999년에는 그 비중이 50%로 하락하여 OECD 평균인 47.3%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까지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과세의 비중이 내려간 이유로는 ① 1990년대 경기침체 ② 소비과세 비중의 증가 ③ 개인소득세 감세정책과 1990년대 후반의 법인세율의인하라는세가지를들수있다. 1990년대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소득세 감세정책은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여왔다.

현행 일본 개인소득과세의 특징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개인소득과세의 경우 최저세율 적용 소득계층이 많다고 하는 점이다. 일본은 1999년 항구감세 정책의 결과 일본의 현행 소득과세의 세율구조는 10%, 20%, 30%, 37%의 4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이 중 1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계층에 전체 급여소득자의 약 80%가 포함되고 있다[22]. 소득계층(급여수준)별 납세자 분포와 소득세액의 납세액을 보면, 2000년 연수입 700만엔 이하의 납세자는전체 납세자의 81.1%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소득세납세액은 39.1%에 지나지 않고, 1000만엔 초과의 소득계층은 전체 납세자의 6.4%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하여 소득세납세액은 41.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개인소득과세의 경우 비납세자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납세자 비율은, 1990년 25.2%, 1995년 23.0%, 2000년 26.0%를 기록하고 있으며, 급여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납세자 비율은, 1990년 14.0%, 1995년 14.8%, 2000년 18.9%에 달하고 있다[23]. 소득계급이 낮을수록 비납세자의 비율이 많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중간소득층에서도 비납세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0만엔 초과

22) 이에비하여영국의경우는세율 10%를적용받는소득계급이전체의10% 정도이며, 22%의세율적용을받는소득계층이약80%를차지하는분포를이루고있다고한다(내각부(2002, p.102)).

23) 1998년에는급여소득자에서차지하는소득세비납세자비율이일시적으로 25%까지상승하였다. 이는 1998년에한하여소득세를대상으로총액 2.8조엔의특별감세(본인 3.8만엔, 부양가족 1.9만엔)가실시되었기때문이다.

1000만엔 이하 소득계층의 비납세자 비율은 1990년 0.6%였는 데 비하여 2000년에는 7.0%로 상승하고있다(내각부(2002, p.106)).

비납세자가 많게 된 배경에는 과세최저한이 계속하여 높아져 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과세최저한은 '단신세대'가 연수입 114.4만엔, '전업주부+자녀2인'인 세대는 384.2만엔에 이른다[24]. 일본 급여소득자의 과세최저한은 급여소득공제(130.8만엔), 인적공제(152만엔), 특정부양공제(63만엔), 사회보험료공제(38.4만엔)를 합계한 금액이다[25]. 일본의 과세최저한이 높게 된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세제개정에서 각종 공제의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1987년의 배우자특별공제의 창설, 1989년과 1995년의 각종 공제의 확충에 따라 특히 전업주부세대의 과세최저한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상의 특징으로부터 개인소득과세에 있어 납세자의 공동화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소득과세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기간세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배우자특별공제의 폐지와 과세최저한의 인하 등이 개인소득과세 개혁의 골자가 된다. 배우자특별공제의 경우 2004년부터 그 폐지를 예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인소득과세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하여 보자. 계속적인 감세정책의 결과 일본의 개인소득과세가 비록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다고는 하나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일본의 소득과세 비중이 내려간 이유로서는 ① 1990년대 경기침체, ② 소비과세 비중의 증가, ③ 개인소득세 감세정책과 1990년대후반의법인세율의인하라는세가지를들수있다.

는 국세수입에서 국세소득세의 비중이 21.6%로서 일본에 비하여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국세소득세의 비중을 보아도 3.9%로서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1999년 우리나라 소득과세 비중은 29.9%로서 OECD 29개 국가 중 29위로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OECD 평균은 47.3%), 이 중 특히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은 19.1%로서 비중면에서 볼 때 OECD 평균 35.2%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소비·자산과세의 균형을 통한 공평성과 효율성의 달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위에서 언급한 조세구조로부터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세에서 세원의 충실을 도모해야 할 분야는 개인소득과세분야라고 할것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2003년 1월부터의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교육비와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등 연말정산 관련

24) 주요국의 '전업주부+자녀2인' 세대과세최저한을계산한결과를보면, 미국이 315.3만엔, 영국이 137.8만엔, 독일이 383.3만엔, 프랑스가 298.1만엔이다(내각부(2002), p.107).
25) 인적공제 152만엔은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부양공제각38만엔을합한금액이고, 특정부양공제는고등학생과대학생자녀를둔세대에적용되는소득공제이다.

각종 공제한도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 하고 있다[26]. 공제한도의 인상을 통한 소득세의 소득분배적 기능도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득세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공제한도의 인상 또는 과세최저한의 확대조치로 인한 비납세자의 증가나 최저세율 적용 납세자의 증가가 소득과세의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인구가 결정세액의 75.2%를 납부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위 10%의 인구는 0.1%를 납부하는 데 불과하다(2000년). 이는 결정세액의 대부분을 상위 10% 계층이 납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7]. 이러한 실정으로부터도 개인소득과세의 공동화 가능성이 염려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단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나면 증세가 필요한 경우에 심한 조세저항이나 정책협조의 어려움으로 이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 일본에서 계속하여 소득세 감세정책을 실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소득세 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에 소비세 등의 간접세의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직간비율의 조정)에서 세제개혁을 실시하여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반대 방향의 개혁, 즉 소득과세 등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가는 세제개혁이 앞으로의 소자녀화나 고령화에 대비한 바람직한 방향이 된다. 일본에서는 소득과세 비중이 높은데도 현재 소득과세의 공동화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서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세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본으로부터 얻을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2. 법인소득과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990년대 후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일본 법인소득과세의 법정 실효세율은 40.87%로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제3절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활동시 실제로 부담하는 세부담률은 일본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일본은 법인세수가 크게 하락하여 왔다. 일본 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은 거품경제가 한창이던 1988년도에 35.3%까지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에 들어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법인세수의 비중도계속하여 하락하여 2000년에는 약 20%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법인세수의 감소와 함께 법인과세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결손법인의 증가

26) 보다구체적으로보면, 근로자의료비소득공제한도의확대(연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건강진단비를의료비소득공제대상에포함시킴, 부양가족 교육비공제한도의 확대, 자동차보험과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공제한도의 확대(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주택자금관련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 확대(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신용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를 들고 있다.『동아일보』(2002.12.24).

27) 국세청(2001)『국세통계연보』

로 인한 법인세의 공동화이다. 이는 개인소득과세의 공동화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적자법인(결손법인)이 68.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익계상법인 중 자본금 1억엔 미만인 법인이 30.9%를 차지하며, 이들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액의 33.4%이다. 이에 비해 전체 법인수의 0.03%에 불과한 100억엔 이상인 법인이 35.8%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과세의 공동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법인세제개혁의 중요 과제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1999년 우리나라 법인소득과세의 비중은 10.9%로서 OECD 평균 12.1%에 비해 약간 낮은 구조로 되어 있다(29개국 중 18위). 국세법인세 세율은 <표 4>에서 보듯이 27.0%로서 국세수준에서만 본다면 일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선진국과 비교하여서는 법인세를 낮추는 개혁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법인세율을 비교하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아시아 국가의 법인세율을 보면, 대만 25.0%, 싱가포르 24.5%, 말레이시아 28.0%, 태국 30.0%, 그리고 필리핀은 32.0%이다(내각부(2002, p.130)). 이들 세율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9.7%와 비교하면(지방세 부담세율 2.7%를 합한 수치), 우리나라가 그리 낮은 세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법인세율의 인상이나 인하를 통한 법인세부담률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제3절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실제로 얼마만큼을 부담하는가의 실제 부담세율에 기초한 분석이나, 법인세율의 조정이 경제성장과 후생수준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가에 관한 분석도 중요할 것이다.

법인세부담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일본은 법인세수가 크게 하락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한 법인과세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인실 外(2002)에서는 한국 계산가능 일반균형모델(Korea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KOCGE)을 이용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제도의 문제점을 법인세의 세율수준과 더불어 기업형태별, 자금조달별, 자금조달형태별로 세금부담이 다르다는 소위 조세차별에 의한 비효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한 것으로는 (pp.75~84), 법인세의 세율인하시 발생하는 세수감소의 보전은 소득세나 소비세의 인상보다는 세출을 줄이는 것이 후생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법인세의 폐지는 효율성과 저축 그리고 노동공급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모델에 의한 도출은 아니지만 법인세의 개편방향으로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조세지출제도의 활성화, 법인세율의 인하와 이중과세 조정,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

국 수준 개선, 구조조정지원 세제의 상시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법인세율의 인하와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 그리고 준조세의 정비를 들고 있다.

본고는 일본 법인과세의 기본입장이나 그 분석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법인과세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시사점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법인소득과세가 처하고 있는 상황 및 법인소득과세의 개혁과 관련하여, 국세법인세와 지방세법인과세의 과세원리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시사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28].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는 법인과세의 공동화가 심하고, 국세법인세와 지방세법인사업세가 같은 과세베이스로 되어 있어 국세와 지방세에서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법인소득과세의 공동화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혁으로서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외형표준과세의 도입 논의이다. 그 배경에는 국가 수준에서의 법인세와 지방 수준에서의 법인과세의 과세논리를 다르게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국세법인세의 경우 세율인하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는 과세베이스를 확대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방향으로서 지방 법인과세로서 현재의 법인소득(이득)으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을 법인의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베이스로 하는 개혁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4년부터는 자본금 1억엔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기업으로부터 반대가 있어 그 실현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는 일단 어떤 제도가 실현되면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인과세의 균형있는 구축이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법인사업세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의 소득과세로서 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법인세에서는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법인이익에 대한 과세로 하여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9]. 나아가 앞으로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부담으로서 우리나라가 법인 관련 지방세의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법인지방세로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립이 중요할 것이다. 현행 일본의 법인사업세와 같이 법인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세수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이 여실히보여주고있음을직시할필요가있다.

28) 일본의법인과세개혁에관해서는국중호 · 한상국(2002)에서자세히다루고있다.
29) 이때이인실외(2002)에서언급하는개혁내용도참고가될것이다.

참고문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2.
국중호 · 한상국(2002),『일본의 법인과세개혁과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
동아일보, 2002. 12. 24
이인실 · 김성태 · 안종범 · 이상동,「법인세제 개편 방향」,『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 한국재정 · 공공경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2002년 정책세미나(5월14일), pp. 39~90.
재정경제부,『조세개요』, 2001, 2002.
한국은행,『경제통계연보』, 2002

經濟財政諮問會議,『經濟財政運營と 構造改革に關する基本指針』2002. 6. 25.
經濟財政諮問會議『構造改革と經濟財政の中期展望 2002』, 2002. 1. 18.
內閣府,『經濟財政白書』, 2002.
大武健一郎編,『圖說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1992.
稻垣光隆編,『圖說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2002.
稅制調查會,『平成14年度稅制改正に關する答申』, 2001. 12.
稅制調查會,『平成15年度稅制改正についての答申 —あるべき稅制の構築に向けて— 』, 2002. 11.
日本與黨,『2003年度稅制改正大綱』, 日本經濟新聞, 2002. 12. 14.
日本經濟新聞, 2002. 12. 10.
財務省,『財政金融統計月報』, (租稅特集), 2002.
朝日新聞, 2002. 4.20, 2002.12. 24.
總務省編,『地方財政白書』, 財務省印刷局.
OECD, Revenue Statistics, 2002.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 선 중 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

제 1 장 서론

소규모기업[1]의 발전은 경제의 균형생산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기업의 중요성[2]은 각종 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수많은 정책을 통해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3]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소규모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법률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상 혜택은 그 절차의 복잡성이나, 최저한세의 적용[4]등으로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법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방식이다. 소규모법인에게미국식조합과세(Partnership Taxation) 방식을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사업초기에는조합과세 방식을 택하여 손실을 주주 개인의 여타 소득과 합산하고, 차후 기업이 안정적 성장 시기에 진입한 후에는 일반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법인에게 개인 기업과 법인의 세법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사업초기에발생하는 세법상 손실을 당해연도의 개인소득세에서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법인 투자에 따르는 파산 위험일부를과세당국이부담함에 따라투자활성화를꾀하도록하는제도이다.

---

* 본논문은한국조세연구원이개원 10주년기념으로시행한전국대학(원)생대상논문현상공모에서우수작으로입선한논문입니다. <편집자주>

1) 소규모기업이라함은흔히사용되는중소기업보다제한적규모의법인을일컫는것으로서, 이에대한설명은본문의제2장에서보다자세히언급하고자한다.
2) 이동호(1993)는중소기업의중요성으로서 " 자유경쟁체제촉진에따른기술혁신의가속, 의사결정신속에따른경기변동의충격흡수, 그리고고용증대등 "을들고있다.
3) 현행소규모법인에대한지원은중소기업기본법등에의한금융지원, 세제혜택등이있다.
4)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3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과세표준의 12%에미달하는 세액상당부분은감면등을 배제하고있다. 이는 15%의법인세율을적용받는대부분의소규모법인이 3%밖에감면을받지못하도록제도적으로정해진것으로서, 이는 감면규정적용및계산상의복잡성과더불어소규모법인의조세지원제도이용을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본 논문은 소규모기업 중 법인형태를 취하는 기업에게 최근 활발히 논의[5]되고 있는 미국식 조합(Partnership) 과세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6]을 제고하는 새로운 법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다만, 조합과세제도의 적용에 있어, 세법을 제외한 여타 법률에서는 통상적 법인과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소규모법인의 특성상 일반적인 조합과세제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7].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식 조합과세 제도(Partnership Taxation)와는 별도의 차별적 법률 마련을 전제로 하여, 그와 유사한 과세구조를 가지는 소규모법인만의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소규모법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지원책 등의 대안 또는 병행제도로서의 국내 현실에 맞는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리 세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괄을 넘어,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기본 틀과 제반 거래에 관한 규칙의 제정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제시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조합과세 형태를 선택한 소규모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거래 유형을 설정하여 실무적으로 운용 가능한 규칙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각 거래별 조세효과를 논함에 있어 본 논문은 사례를 병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관련세제에 대한 지식과 운용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고 기업의 실제 운용사례가 흔치 않은 환경에서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초기단계에서 가능한 한 기본 골격을 간결하게 갖추는 지혜가 필요하므로 일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준용하도록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5장을 전체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며, 주제장인 제4장에서 제시된 운용사례는 미

5) 최용선(2002); 김진수 · 김재진(2000); 이창희(2001); 안창남(2001); 이준규 · 이은상(2001)은 미국식 조합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에 대한 도입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서도 중장기세재개편방안(2001)에서 파트너쉽과세제도 도입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사업초기에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자의 개인소득에서 직접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절세효과를 통해 소규모법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투자유치효과 이외에도 이중과세의 완전제거 등의 효과가 있으며, 제2장에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7) 현재 논의되는 미국식 조합과세제도는 세법에서 만 당해 기업을 미국식 조합형태로 보는 것이 아닌 일반 법률에서도 미국식 조합형태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당해 기업형태를 채택한 기업은 법적으로 그 수익과 비용의 처리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일반법인과는 달리 회계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인적 구성요소 등에 의해 그 수익과 비용의 배분에 보다 유연한 형태로 기업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된다.

국의사례를도입안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8].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은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의의와 각종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규모법인에 대한 과세실태 파악과더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본 논문의 주제 장으로서 각종 필요에 의해 도입되어야 하는 소규모법인의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는 거래의 단계에 따라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운영에 따른 과세방법의 기본구조 및 원칙을 제시하여 실정법상도입시 그 방안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앞서 논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을요약 ·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제시하면서 마무리지었다.

제 2 장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의의 및 이론적 배경

본장에서는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기본적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일반적 이론에 입각하여 당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제1절에서는 세법상 소규모법인 및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정의, 그리고 각 기업형태들과의 비교를 통한 소규모법인의 특성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제도인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제2절은 현재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도입배경과 법인 실체에 대한 일반적 이론인 법인의제설 및 법인실재설에 입각한 소규모법인의 실체를 세법상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일반적 인장점과단점을열거하고이러한특성을가진제도의도입 필요성을밝힌다.

제 1 절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의의

1.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정의

(1) 소규모법인의정의

8) 본논문의구성및체계는 " 최용선, 「조합과세제도도입방안」, 『도시과학논총』, 2002 의구조를빌려왔다.

현재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IRC §1361에서는 소규모법인(S-Corporation을) Subchapter S의 선택을 한 소규모사업법인(small business corporation)으로정의하고각요건들을세법에서규정하고 있다[9].

이에 대응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으로는 조합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법인을중소기업기본법상의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으로정의내릴수있다. 즉, 소규모법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우리의 세법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명확한정의를 찾을 수는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소규모법인역시중소기업기본법상의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으로정의내릴수있을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다음에 제시하는 각 항목별 요건[10]을 만족하는 기업 중 <표 1>의 종업원 수기준에따라소기업을구분하고 있다.

<표 1> 업종별 소기업의 종업원 수 기준[11]

구분	종업원수기준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50인이하
기타	10인이하

1) 제외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과 다음의 상시근로자 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그리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기업은대상에서제외한다.

2) 주된사업기준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9)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 Subchapter S는 미국 연방법의 26번째 체제(United States Code Title 26)인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통상IRC)의 136조에서 137조까지를규정한절이다. 이는소득세법(Sub-title. A - Income Taxes) 제1장기본세및특별부가세(Chapter 1 - Nomal Taxes and Surtaxes) 중19번째절인소규모법인및소규모법인주주에대한조세규정(Subchapter S - Tax Treatment of S-Corporations and Their Shareholders)을의미하는것으로서미소득세법중소규모법인및당해주주들에대한세법상의규정들을총괄하는뜻으로사용된다.

10) 중소기업적용요건과동일하며, 이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조에서7조까지그내용을규정하고있다.

1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중소기업의구분]

비중이 가장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종업원이되는상시근로자 기준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 기준이 되는 종업원은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그리고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을 제외한 자를말한다.

4) 자본금및 매출액, 종업원수기준

소규모법인에 부합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와 관련한 별표에서 나타내는바와 같다.

우리나라에 있어 세법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정의는 잠정적으로 상기와 같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정의는 세법 규정의 일부로서 여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세법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해당 법인과 더불어 차후 제4장에서 살펴볼 당해 법인의 소유주주 수또는업종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으로 정의내려질수 있을 것이다.

(2) 선택적 조합과세의 정의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라 함은 법정하는 소규모법인에게 소득세법상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와 유사한형태로과세받을수있는선택권을부여한제도를뜻한다. 여기서세법에서정하는소규모법인은 세법을 제외한 기타 법률에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취급을받는다. 이는 세법에서 예외적으로조합과세형태로과세받을수있도록하여, 당해자격을선택하면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법인세에서규정하는납세의무를지지않는다. 미국IRC의Subchapter S에서기술한소규모법인에대한과세제도와유사하며, 조합과세형태를선택한소규모법인에서발생한소득은 법인단계에서는 어떠한 납세의무도 지우지 않고, 바로 개인주주에게 유입되어 개인소득세로만 최종 과세된다. 즉, 법인과개인간의 완전한이중과세 제거는 물론이고, 차후 상세한설명을 하게되는사업초기의위험제거라는커다란이점을소규모법인에게부여하는제도라할수있다.

2.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특징

일반적으로 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행세법상으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그 사업 형태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미국의 파트너쉽과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가현행세법상에도입된다는가정하에, 분류형태를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s), 파트너쉽(Partnership), 소규모법인(S-Corporation), 그리고일반법인(C-Corporation)으로나누어각각의특성을소규모법인과비교하여설명하고자한다.

1) 개인사업과소규모법인

개인사업이란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 영위되는 사업형태로서 보통 개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선택한다. 개인사업은 그 개인과 별개의 과세단위로 취급하지 않으며, 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직접 보고되어진다.

개인사업은 소규모법인 형태를 포함한 여타 사업형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설립과 청산이 사업형태 중 제일 자유롭고, 사업자가 아무런 조세상의 효과없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장을 하고 은행계정을 유지하지만, 기장은 일반 법인에 비해 엄격한 절차 및 감시를 받지 않으며, 은행계정도 개인 소유이므로 어떠한 조세효과나 법률상의 제약없이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사업 형태를선택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경우는 소규모법인에 비하여 단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사업자의 무한책임성과 사업자 자신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는 점으로 사업에 관련한 계약 또는 의무는 한계없이 개인이 모두 책임을 지는 위험성이 있으며, 자가근로에 의한 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은 개인사업을 선택하지 않는이유가되기도한다.

2) 파트너쉽과소규모법인

파트너쉽이란 둘 이상의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영위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함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업자나 친척 또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상 이익과 비용을 분담하려는 투자집단 등이 선택하는 형태이다. 이는 현행 과세제도상 공동사업자와 유사하나 동일한 형태는 아니며, 차후 미국식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파트너쉽을 그 비교대상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파트너쉽은 납세신고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납세의 주체는 아닌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다. 즉 파트너쉽의 소득, 비용, 세액공제 등은 모두 파트너에게 보고된다. 따라서, 파트너쉽은 매년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신고서[12]를 제출하고, 파트너들 각자에게 소득 등의 배분보고서[13]에 의해 통보되어, 개인의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게 된다.

이는 소규모법인이 조합과세 형태를 선택하였을 때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파트너쉽은 개개인의 성격이 짙은 인적회사 회사인 데 비해, 소규모법인은 비록 외형면에서 작다고는 하나 상법상 물적회사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상법상 물적회사인 파트너쉽은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파트너들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특성이 소규모법인과 비교해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특수한 파트너쉽 형태의 경우 무한책임을 지지 않으나 무한책임 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의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든 파트너들이 연대하여무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이에대한 위험부담을회피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14].

반면, 소규모법인과 비교한 파트너쉽의 장점은 소득과 손실의 분배비율 및 기타 분배비율에 유연성(flexibility)이 가진다는 것이다[15]. 소규모법인은 주식 및 지분의 소유비율로써 그 분배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지만, 파트너쉽은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소득, 손실, 그리고분리과세되는 각종 비용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어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이 세무계획 및전략을세울수 있는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3) 일반법인과소규모법인

일반법인과 소규모법인은 세법 이외의 제도에서는 동일한 법인으로 취급받지만, 세법에서만 이를 다르게 취급한다. 세법상 법인의 사업 형태는 일반법인과 소규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법인의 경우 매사업연도 이익에 대하여 법인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소규모법인은조합과세 선택권을 행사하였을 때는 파트너쉽 형태와 유사하게 주주들의 소득으로 각종 이익 및 손실이 귀속되어 각 주주들에게 과세되어진다. 즉, 소규모법인은 채무이행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같이 유한책임성을 지니지만, 조세채권에있어서는일반법인과 달리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12) 미국의경우Form 1065
13) 미국의경우Form 1065의Schedule K-1
14) 파트너쉽형태중하나인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경우에는그구성원들이유한책임성을지니고있다.
15) 김재문(1996)은 미국의 S-Corporation이 Partnership 에 비해 불리한 점으로 세제상 엄격한 제한(사원/주주의 수, 주식의 종류등)에의해 S-Corporation로서의자격을쉽게잃을수있다는점을하나의단점으로들었다.

4) 조합과세형태를선택할수 있는소규모법인의특징

위에서각종 사업형태와비교한소규모법인만의 특징을 나열하면다음과같다.

① 과세형태의선택권부여: 일반 법인세 과세 또는 조합 과세

② 상법상 물적회사: 유한책임성 (일반법인과유사)

③ 분배비율의경직성: 주식및 지분의 소유비율로서분배비율 결정(일반법인과 유사)

④ 조합과세 형태 선택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개인 주주들의 개인소득세로 신고 (파트너쉽과유사)

제 2 절 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의 이론적 배경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이미오래 전부터 실정법으로시행하고 있는미국의도입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47년 미재무성은 소규모법인과세(Taxation of Small Business)라는연구를 공표하였으며, 그 속에는일정한 법인에 대해 파트너쉽과세를 하는 것의 가부 및 비법인 기업의 재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소규모법인(법인 및 개인의 쌍방을 포함)에 대한 과세상의 불균형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안에 관한 분석이 행해졌다. 이어 1952년에는 이 문제에 관해 상하양원합동위원회에서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쉽으로서의 과세를,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법인으로서의 과세를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였다. 그 뒤 1958년 기술적 수정법안(Technical Amendment Act of 1958)에의하여 파트너쉽 과세방식과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본래 기업 형태의 상이에서 오는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소규모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완전 배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더욱 세분되어 파트너쉽 및 소규모 법인의 소득, 손실, 소득공제, 또는세액공제 중 어떤 항목들은 파트너쉽 및 법인 형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반면, 다른 항목들은 개인(파트너 및 주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파트너쉽 및 소규모법인은 소득세법상 별도의 독립된 납세의무자(a separate entity)로 취급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단순히 파트너 또는 주주 이익의 집합체(an aggregate of the interests of partners or shareholders)로서취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파트너쉽 및 소규모법인에 대한 과세원칙들은 각각 연방세법의 Subchapter K와

Subchapter S에종합적 규정을 두고있다[16].

미 연방세법상 Subchapter S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소규모법인을 주주의‘ 집합체 로 보는 법인의제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록 법인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법인의 경우 소수의 주주로서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 형태를 볼 때, 개인기업 또는 파트너쉽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업운영면에서 볼 때는, 같은 법인일지라도 일반 법인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고 수많은 주주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므로 더 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세법에 있어서 소규모법인에 대한 기본원칙은 법인의제설을 채택하여 소규모법인을 주주에 대한 도관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소규모법인을 주주와 별개인 실체로 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도 미연방 소득세법 내에서는 사업소득(개인, 법인 포함)에 대한 소득과세에는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이 병행하여 발전하여 왔다. 이 두 가지 이론의 병존은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사업형태를 구성할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임의성과 자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소규모법인과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를 기술한 미연방세법 Subchapter S는 소규모법인에 대하여 어느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법인에 대한 양 이론은 세법의 각 조항에 내재되어 있고 Subchapter S의 입법 역사와 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세법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법인과 주주에 대한 새로운 세제의 도입 및 운용을 위해서는 양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토대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기본원칙과 세부규정들을 정립하여야 할것이다.

1. 법인의제설

법인의제설은 개인의사 절대라고 하는 법리 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하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과 같이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요청에 따라 법률에 의해 가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6) 김진수, 김재진,『파트너쉽과세제도에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0.12

따라서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소규모법인은 단순한 주주들의 집합일 뿐이며, 각 주주들은 주식지분별로 소규모법인의 자산을 공동소유로 보고, 모든 거래결과들을 주식지분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귀속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규모법인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세금관련정보가 주주들의 세무신고 목적을 위해 수집되는 하나의 도관으로 인식된다.

즉, 주주에 대한 분배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여받게 되지만, 실제 수익이 주주에게 배분되었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소규모법인의 손실도 각 주주에게 각자의 이익 및 손실의 분배지분에 따라 분배되어 각자의 세금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주주에 대한 과세시 분배소득을 그 소득발생의 원천에 따라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과세절차면에서 다소 복잡한 점은 있으나 기업의 형태에따른일반 법인에 대한 과세와의 차별화 측면에서는보다타당하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법인의제설에 의한 소규모법인의 과세는 일반법인의 이익 및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그리고 사업초기 위험부담면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함으로써 소규모법인의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의제설의 개념은 소규모법인에 대한 기본적 원칙 및 주주의 출자, 그리고 이익과 손실을 배분할 때 주주의 과세부담을 결정하는 데도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있다.

2. 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존체로 보는 이론으로서, 법인은 법적 · 경제적 실존체로서 자연인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성원들의 생명과 관계없이 독립된 영속적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주의 변동과 관계없이그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사회활동을영위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소규모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실재하는 인격체로 인식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세법 외의 목적에서만이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주주와 소규모법인이 별개의 납세자로 회계방법을 선택하고 과세관청에 자신의 소득을 매년 보고하는 주체가 됨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이다.

3. 세법상양이론의적용

이러한 두 이론에서 소규모법인은 세법목적상 법인의제설을 바탕으로 법인실재설을 취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의제설이 법인실재설의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두 이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소수 주주들에 의한 기업운영 방식으로 볼 때, 법인의제설을 기본 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타 법률 및 행정상 편의[17]등에 따라 법인실재설을 결합하여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하는 세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규모법인에 대한 특례적인 과세제도를 둔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법인과는 다른 형태의 기업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이는 소규모법인을 세법상으로는 도관기업(pass-through entity)으로 인식한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의 바탕 위에서 법규정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주주와 소규모법인간의 거래에서나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서는 도관기업이라는 전제만으로는 기술상의 실질 규정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법인을하나의실체로규정하는 것이현실적접근방법이될 것이다.

제 3 절 조합과세 선택 소규모법인의 특성 및 도입 필요성

미국의 경우 1996년을 기준으로 전체법인의 49.8%가 조합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소규모법인(S-Corporation)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는 230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증가치를 살펴보면 미국의 소규모법인 선택은 점차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8]. 이렇듯 미국에서 소규모법인이 세무상 조합 형태의 과세적용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에서 살펴보는몇 가지 장점들을 들 수있다.

1. 조합과세선택소규모법인의장점

첫째, 소규모법인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은 주주에게만 과세되

17) 행정상편의라함은, 소득신고에있어조합과세형태를선택한소규모법인이비록납세의무가없다고할지라도신고의무를 두어, 행정상개인소득세감시의편의및개인주주들의납세편의를도모하는것을말한다.

18) 미국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법인을 선택한 기업이 전체 법인 중 24.1%에 지나지않았지만, 1996년 기준으로 그비율이 49.8%까지증가하였다.

는 단일과세 형태의 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법인단계에서의 과세와 배당후의 개인단계에서의 과세 사이에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장치가 없으므로, 조합과세 형태를 선택한 소규모법인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라는 이중과세 완화장치가 있어 미국만큼의 세금절감 효과를 보기는 힘들지만, 일부나마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이익을 누릴 수있다.

둘째, 손실은 주주의 다른 소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소규모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19]. 따라서 법인의 초기 결손에 대한 부담을주주인 개인에게로 유입시킴에 따라 개인소득세 산정시 이점을 줄 수 있다.

셋째, 유한책임성을 들 수 있는데, 상법상 소규모법인은 그 형태를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나, 무한책임 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과같은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만을 진다. 소규모법인은 법인이라는 법형식에 파트너쉽의 도관개념을 세제상 결합한 것으로서, 세법을 제외한 기타 법률에서는 법인으로 적용받지만, 과세상으로는 소규모법인 형태라는 독특한 납세의무자(entity)로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법인의 주주는 당해 소규모법인에대한채권 변제시 이점이라할 수있는유한책임성을 가질 수있는것이다.

넷째, 법인보다 더 낮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개인의 소득 수준에따라현행 법인세율보다 낮은개인소득세율을적용받을수가있다.

위에서 열거한 대표적인 네 가지 장점에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규모법인은 자본 모집이 용이하다는 것 등도 장점으로 제시된다.

2. 조합과세선택소규모법인의단점

소규모법인이 조합과세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상기와 같은 다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단점을동시에갖는다.

첫째, 소규모법인의모든 이익은 배당여부에 불문하고 주주에게 바로 과세된다. 따라서주주의세율이높다면배당세액공제가존재하는현행세법상결국높은세액을부담하는것이된다.

둘째, 소규모법인의 주주인 피고용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부가급부(fringe

19) 국세통계연보(2000)에서는법인의외형별법인세신고현황에서10억원미만의사업자는전체인원의 61.9%(106,049명)에도 불구하고, 총세액구성비는2.9%(221,1억원)에불과하다. 이는그만큼소득의규모가작거나결손기업이많음을뜻한다.

benefits)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주주인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부가급부는 법인의 소득계산시에는 공제되는반면 주주에게는과세된다.

셋째, 일반적인 기업 조세전략의 하나인 과세연도의 선택을 통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조합과세 형태를 선택한 소규모법인은 주주와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20]해야하므로과세이연등의방법을택할 수 없게 된다.

3. 우리나라에서의선택적과세제도도입필요성

우리나라에 있어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은 상기의 여러 장점들 중, 두 번째 장점인 사업초기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자인 파트너 개인소득에서 직접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절세 효과가 가장 큰장점으로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미국식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자 주장하는 자들은 당해 제도의 도입으로, 조합 형태를 취하는 기업은 손실의 주주배분을 통해 투자유치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21]. 이러한 장점은 위험이 큰 벤처기업이나 단기 프로젝트 사업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이 조합 형태로 당해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22].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등의 산업군에 속한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기업 형태는 아닐 것이다. 설립시 일반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 초기에는 손실에 대한 절세 효과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차후 기업 형태 변경의 경직성[2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윤은 일반적인 법인 형태보다 더 큰 부담을 투자자에게 지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식 조합 형태는 일반적인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못한 기업 형태로 비추어진다.

---

20) 주주와다른과세연도를법인을가질수있도록규정한다면, 당해발생하는법인의소득을최대2년가까이이연할수있다. 예를들면, 1월1일이기말인소규모법인에게소득이2002년1월2일에발생한다면, 소득의집계는2003년1월1일에이루어져주주들에게분배되며, 그소득은2003년 12월 31일에개인에게확정되어과세된다.

21) 최용선,「조합과세제도도입방안」,『도시과학논총』, 2002. 2.

22) 미국의한예로서드림웍스(DreamWorks)나월트디즈니(Walt Disney) 같은제작사들은특정영화의제작을위해유한파트너쉽(LLP) 또는유한책임회사(LLC)를설립하여그지분을출자하고있다. 이는파트너쉽협약에는무한책임파트너(general partner)인제작사가손실의배분및현금의우선배당권등여러가지편익에있어서우선적으로배정을받을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그투자유치를제고한것이다.

23) 파트너쉽형태의기업을다시일반법인형태로전환하기위해서는세법만이아닌상법및여타법령에의거, 파트너쉽의청산과일반법인의설립등의까다로운절차를거쳐야만한다. 따라서설립당시에파트너쉽으로인가받은기업이차후다시일반법인으로변경하는것은상당히힘드므로, 경직성이라표현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그 적용의 복잡성이나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24].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초기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상의 혜택은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명히 제고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식 조합 기업 형태는 일반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초기에 있어서는 세제상 매력적인 형태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식 조합과세제도에서 세법상 기업 형태의 선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소규모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사업초기 법정하는 범위의 소규모법인들에게는 조합과세 형태로 세법을 적용하고, 차후 기업성장으로 당기순이익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세 형태의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법상의 기업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장 소규모법인 세제의 현황 및 개선점

제2장에서는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정의와이를도입하기위한근거등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소규모법인에 대한 현황과 과세실태를 통해 문제점을파악하여이에대한해결책으로서의소규모법인과세제도를제시하고자한다.

제 1 절 우리나라의 소규모법인 현황 및 과세실태

1. 우리나라의소규모법인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은 그 수적인 측면만을 보면, 전체 법인 중 소규모법인의 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1999년 기준으로 영세법인 및 소규모법인은 전체법인의 80%를 넘는 수를 보여주고 있다.

24) 이러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정책의비효율성은원윤희(1995)가당해연구논문에서자세히설명하고있으며, 차후제3장에서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표 2> 외형규모별 법인 수[25)]

(단위: 개)

구분 / 연도	합계	5억원미만 (영세법인)	5억원 30억원 (소규모법인)	30억원 100억원 (중규모법인)	100억원이상 (대규모법인)
1997	179,316	86,811 (48.4%)	60,880 (34.0%)	22,413 (12.5%)	9,212 (5.1%)
1998	181,835	87,617 (48.2%)	63,748 (35.1%)	21,177 (11.6%)	9,293 (5.1%)
1999	206,354	102,955 (49.9%)	69,685 (33.8%)	12,597 (6.1%)	10,117 (4.9%)

2. 우리나라의현행소규모법인에대한과세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법인에 대한 과세(법인세)와 개인에 대한 과세(소득세)로 대별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규모법인은 법인세의 범주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법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 등의정책적특례만을 두고있을뿐이다.

상법 등 기타 법률에서는 일반법인과 소규모법인은 동일한 법인의 형태를 가지지만,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소규모법인의 개념에서와 같이 그 외형이나 자본구조 면에서 크나큰 차이를 보인다. 일단 외형적 측면에서 소규모법인과 일반법인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소규모법인을 일반법인과는 다른 방법으로구분하여주는것이 필요함을보여준다.

다음으로 자본구조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둘 모두 주주들의 출자에 의한 자본조달의 방식을 가지지만, 소규모법인의 대부분은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가족기업으로서 개인사업자들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굳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서 사업을 하는이유는파산위험에서 주주를 보호해 주는 유한책임성 등을 그 이유로 꼽을수 있다.

25)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0

3. 법인세 · 소득세제와소규모법인세제

현행 세법상 담세력의 표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제와 소득세제로 각각 법인과 개인에게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제와 소득세제에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도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하의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주 개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법인기업은일차적으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배당되는 단계에서 출자자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배당소득)를다시과세하는 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세법상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소득을 과세함에 있어서 각각 과세소득의 범위, 세율 및 각종 공제, 감면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형태의 기업 사이에는 동일한 크기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세부담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법인세제와 소득세제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로는 먼저 법인세제에서 소규모법인이라는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이 생기게 된다는것을들 수 있다. 상법 또는 기타 법률상 법인으로 취급받지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이 있다는 것은 소규모법인세제가 도입됨에 따라법인세제가 가지는 큰의의라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제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사업과 관련있는 세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세법상의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공동사업장의 규정과 유사하게 주주들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이 소득세제가 가지는 의의라할 수 있다.

제 2 절 현행 소규모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법인 중 80% 이상을 소규모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법인에 대한 별도의 과세제도를 두지 않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로 지적된다. 다음에서는기업의 형태를 개인사업과 법인으로만 분류하는 등의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한다.

1. 일반법인과의외형및자본구조의차이

소규모법인은 매출액과 같은 외형 또는 자본구조 등의 측면에서 일반법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나, 아직까지 동일한 과세체제를 적용받고 있다. 외형측면에서 영세할 뿐만 아니라 주주의 구성에서 일반법인과 다른 소규모법인에게 일반적인 법인세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문제가있다.

특히 소규모법인의 경우에는 친 · 인척들을 주주로 등록하는 실질상 개인기업 또는 친척들을 주주로 하는 동족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들과의 형평성상 문제에서도 그 주주에게 바로 귀속되는 소규모법인세제가 도입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2. 현행소규모법인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이용도미비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세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법인의경우 최저한세의 제한 등으로 이에 대한 이용도는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서 보다 일반적이고적용받기 쉬운 과세제도에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경우에는 그 이용을 위해서는 절차상이나, 법 해석상 까다로운 점들이 많으며, 각종 규제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선뜻 그 지원을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는 일반적인 과세형태로서 절차 등이 그다지 까다롭지않고, 이해도 측면에서도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업초기 조합과세를 선택한법인이 법인세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등은 기업성장에 따른 기장능력의증가에따라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3. 개인사업자의법인화유도정책의미비

현재의 개인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기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없으므로, 그 세원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사업자 등에게 불공평한 소득세 과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각종 장점이 있는 소규모법인 사업 형태로 다수의 기업 형태 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법인의 전환을

통하여 개인사업자들의 세원포착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원 노출로 인해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 · 납부를유도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6].

제 3 절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 효과

미국의 S-Corporation 세제를기본 틀로 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된다면, 앞서 제시한 현행 소규모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의 해결과 더불어 소규모법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라는 조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복잡한 조세특례법과 최저한세 제도 등으로 인해 미미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타 조세특례제한법과 병행 또는 독자적으로 소규모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에 효율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을것이다.

우선, 소규모법인에 대해 법인과 개인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제거함에 따라, 일부나마 적용받던 이중과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익을 소규모법인과 당해 주주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소규모법인은 사업초기에 발생하는 결손을 주주인 개인에게로 유입시킴에 따라 개인소득세 산정시 이점을 주어, 소규모법인의 초기 투자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법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에게는 세무상 기업 형태와 여타 규정 등을 이용해 초기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각자의 능동적인 세무전략(tax planning)에따라 다양한 조세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현실적인 문제점 해결과 세 가지 조세효과 외에도 소규모법인들의 다양한 세무전략 수립 등에 의해 아직까지 미숙한 우리나라의 소규모기업 회계처리 및 세무회계 시스템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는효과도함께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26) 배원기(1991)는소규모법인과세제도를도입함에따라개인사업자의법인화를꾀하여과세상성실납부등의효과를거둘수 있다고이야기한다. 따라서개인사업자의소규모법인으로의전환은회계처리등의엄격한적용등으로인해세부담측면에서 오히려도움이될수있다.

제 4 장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조합과세제도 도입 기본구조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소규모법인에 대한 현황과 과세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본장에서는 현실적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인 선택적 과세제도 도입을, 미국의 소규모법인 과세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에 의해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차별적 규정들을 운용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본 규정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 1 절 소규모법인 세제의 기본개념 및 개요

소규모법인 과세규정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세제를 오랫동안 운영 · 발전시켜온 국가의 제도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는 것이 현명한 출발이라고 보여지므로 주로 미국의 현행제도 및 규정을 참고하여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규모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이 다른 종류의 형태로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조세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기존의 기업 형태로부터 소규모법인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법인의 주주들은 제도의 도입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조세상의 편익을 얻기 위하여 왜곡된 형태의 거래를 구성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의 오 · 남용 기회를 방지할 수있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1. 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의개념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는 법인이라는 법형식을 가진 실체이지만, 세무상 특수한 취급의 형태로 이를 파트너쉽과 같은 도관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규모법인에게 부여한 제도이다. 따라서 법인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한 소규모법인의 경우는 현행 법인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이하에서는 조합형태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한 소규모법인을 대상으로만 그 제도의 개괄및 운용을 서술하고자한다.

1) 소규모법인의 선택 및 설립

① 소규모법인의 선택은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선택할 수있다.

② 원칙적으로소규모법인의 회계연도는 소득세법상개인의과세연도와 일치한다.

2) 소규모법인의 운영 및 세액의 산정

① 소규모법인은납세의주체가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지지 않는다.

② 소규모법인의소득은주주들에게 직접 과세한다.

③ 소규모법인의 소득, 손실, 비용 등을 이용한 과세표준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규모법인 단계에서결정한다.

④ 통상적인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산정은 소규모법인 단계에서 결정하나, 그 외의 소득항목(이자, 배당, 양도소득등)들과 특수한 항목(기부금, 조세상우대조치항목 등)들은각 주주들에게 직접귀속된다.

⑤ 소규모법인의소득또는 손실 등의 분배비율은 주주들의지분에따라 결정된다.

⑥ 소규모법인 주식 기초가액은 주식의 매입시에는 취득원가, 출자에 의한 지분 취득시에는 현금출자액과 출자자산에 의해 기초가액이 결정되고, 이 기초가액은 주주가 소규모법인의손익에서차지하는 몫을반영하여 증감한다.

⑦ 소규모법인이 일반법인으로부터 청산절차없이 전환된 경우에는 원평가익세가 과세되고 이는 소규모법인이납세의무를 진다(소규모법인의 예외적 납세의무).

3) 지급 또는 분배

① 원칙적으로 소규모법인의 분배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는 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소규모법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 주주들의 소득으로 과세된 것이므로 지급 및 분배에 대해서는 자산 형태의 변화로 취급한다(소규모법인 중 주주가 소유한 자산 → 지급 또는 분배되는 현금 또는주식 등).

② 소규모법인의분배에따른자산 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기초가액은감소하게된다.

③ 예외적으로 소규모법인의 지급 또는 분배재원이 원평가익일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원평가익세를 과세하게 된다.

4) 종료 또는 청산

① 소규모법인 선택은 주주들의 자의 또는 요건의 불충족으로 인한 과세권자의 처분으로 종료된다.

② 소규모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나, 원평가익의 분배는 예외적으로과세한다.

2. 기초가액(Basis)의도입과손실인식의제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는 일반법인과 개인,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쉽 개념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체제를 혼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세법 적용상의 괴리를 연결해 주는 논리적 고리가 바로 기초가액이며, 이는 본 제도를 도입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소규모법인이 일반법인에서 청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동사업자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법인세제와 소득세제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기초가액의 계산구조에 반영하여 이 계산구조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가액의 개념은 소규모법인 세제 전반에 걸쳐서핵심이되는개념이라할 수 있다.

1) 기초가액의 개념 및 기본구조

기초가액은소규모법인주식의양도차액을결정하기위한기초로이용된다는점에서현행세법상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감가상각자산의장부가액, 취득가액등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제와소득세제에서의 자산이 장부가액, 취득가액, 또는필요경비 등은 역사적원가주의가그지배개념이나, 자산의소유자가당해소유의변동이나가격변동과관련된하나의 지표로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손익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법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당해자산의소유주의개인소득이나손실, 그리고그소유주가갖는지분을가지고있는법인의손익이기초가액에반영되지않는다. 이에반하여소규모법인세제에는도관개념(법인의제설)의채택으로인하여소규모법인기초가액은<계산식1>과같이유동적으로변화된다.

이러한 계산식에 따라 주주들에 의해 보고되어지는 손실 또는 손금들은 기초가액까지로 제한된다. 이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손금 또는 손실액은 익년도 이후로 무제한 이월하여 기초가액의 가산 항목이 되는 추가출자 또는 법인의 과세가능한 소득 등에 의해 주주의 기초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이를 공제할 수 있다.

소규모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소규모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기초가액에서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주주들이법인에게 법인의 부채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주주들이 취하는 손실액의 한도는 그 주주가 빌려준 금액

<계산식 1> 일반법인, 소규모법인, 파트너쉽 출자주주의 기초가액 계산[27)]

일반법인	소규모법인	파트너쉽(미국)
주식매입원가(1) = 기초가액	주식매입원가 + 소득지분액(2) - 손실지분액(3) - 분배(배당) 지분액(4) = 기초가액	주식매입원가 + 부채지분(5) + 소득지분 - 손실지분 - 분배(배당) 지분액 = 기초가액

(1) 주식매입원가: 주식대가로지급하는금액(현금, 현물등)
(2) 소득지분액: 사업소득수입금액과분리신고항목소득의지분액
(3) 손실지분액: 사업소득계산상필요경비(지출, 손실) 및기타의소득공제항목의지분액
(4) 분배(배당) 지분액: 배당등의사유로주주들이받게되는것들의금액
(5) 부채지분: 당해주식소유주주가상환책임을지는부채

만큼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의 기초가액은 변화하지않는다.

기초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순서는 위의 계산식과 같이 부(negative)의 조정을 행하기 이전에 정(positive)의 조정이 먼저 행하여 그 한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개별 주주들의 손실 인식에 있어서 주식의 기초가액은 소규모법인의 해당 부채액에 우선하여감액한다.

[예 1]

소규모법인의 주주인 甲의 기초가액이 20,000원이고, 甲이 법인에 빌려준 소규모법인의 부채액이 10,000원이다. 소규모법인의 1회계연도에 25,000원, 2회계연도에 10,000원, 그리고3회계연도에 5,000원의손실이발생한경우, 甲의손실인식액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기초가액 = 20,000
부채 = 10,000 (주주에 대한 소규모법인의부채)
손금 한도 30,000

27)<계산식1>에나타난각기업유형별기초가액은, 원가법을채택하고있는현행세법상체계에서는출자주주의주식양도계산시 필요한주식의매입원가와유사한개념이다. 다만, 파트너쉽이나, 소규모법인의경우에는그기업특성상일반법인주주의주식 보유와는다르게주식매입원가를가지고는당해주식의양도시세무상그이익을정확하게계산할수없다. 따라서기초가액이 라는개념을도입하여, 계속적으로변화하는주식의양도이익을계산하는데필요한세무상기초가액을계산해주어야한다.

손금의 한도를 30,000원으로 하여 1회계연도에 25,000원, 2회계연도에 5,000원만을 손실로서 공제받을 수있고, 나머지는 손실로서 인정해주지않는다.

1회계연도의손실: (25,000) => 100% 공제가능
2회계연도의손실: (10,000) => 5,000원만공제가능
(= 20,000 + 10,000 - 25,000)
3회계연도의손실: (5,000) => 공제불가능

소규모법인이 이후에 10,000원의 부채를 甲에게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급으로서 10,000원만큼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한다. 이 때 이익의 성격은 기록에 의해 증빙을 갖추고있다면양도소득으로, 그렇지않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취급한다.

2) 기초가액 도입에 따른 기타 손금제한 규정

상기의 기초가액을 도입함에 따라 기초가액과 부채에 대한 손금은 다음과 같은 기타 제한규정들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위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주주들은 그들이 출자하거나 대출해준 금액 이상에 대한 위험부담은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의 크기는 보통 기초가액에서 소규모법인에 대출하여 준 대출금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소극적 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만약 주주가 법인의 사업에있어서 실질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있는경우, 소극적 활동으로 보고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법인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의 손실은 일정기간[28]내에 이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들을 인식할 기회를 상실하게되는 것으로 규정해야할 것이다.

28)일정기간이란, 종료이후의이행기간이라이야기할수있으며, 미국의경우는소규모법인의최후회계연도가종료된후로부터 1년의기간또는소규모법인의마지막세무신고의기한일중늦은날을종료이후의이행기간으로할수있다. 그리고만약소규모법인의종료원인이법원의결정으로인한것이라면, 그종료이후의이행기간은법원의결정후 120일의기간을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도소규모법인의제정시관련법령들과의형평을고려하여적정한기간을명시하여야할것이다.

제 2 절 소규모법인의 선택: 설립 및 변경

일반적으로조합 형태의 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소규모법인이 되는방법은 새로이 신설하는 것과 기존의 법인을 소규모법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신설 소규모법인과 일반법인에서의변경법인의경우에대하여다음과같은것들을세법상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1. 선택의요건

선택적 조합과세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은 소규모 사업법인으로 분류되어야한다.

이러한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인 법인에 해당하면서, 다음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을만족할경우에소규모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요건인 종업원 수, 자본금, 외형 등의 기준[29]에 부합하는 법인은소규모법인으로본다. 이러한중소기업기본법상의요건은 이미밝힌바 있다.

2) 단일종류의 주식발행 요건

소규모사업법인은단일종류의주식발행또는공모(issued and outstanding)를요건으로한다. 이러한 제한은 의결권의 차이는 허용되지만, 배당이나청산시 권리 차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의결권이있는주식과의결권이 없는 것으로나눌수는있으나 배당 등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은 동일한 보통주(common stock)로서 취급받는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로 주식을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당시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는 두 가지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두가지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받지 않는 경우는 자사주(treasury stock), 미행사된 주식매입선택권, 유령주(phantom stock), 주식가치에 따른 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 보증(warrant), 그리고전환사채(convertible debenture) 등을들수있다.

29) 미국의소규모법인세제에서는외형적제한규정으로주주의수를 75명(1997년이전에는 35명)으로제한하고있다. 이는소규모법인을주주의수로써파악한것일뿐이므로우리나라의경우에는기존의중소기업기본법에서사용하고있는각종소기업기준을그대로준용하여사용하는것이합리적으로여겨진다.

주식이 배당과 청산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는지 아닌지의 결정은 그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조항에 그 기초를 둔다. 이러한 지배 조항은 법인의 정관, 부칙, 그리고 배당·청산과정에 구속력이 있는 협약(binding agreements) 등을포함한다. 한편으로 고용계약, 차입계약, 그리고 기타 상업적 계약은 지배 조항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이러한 계약의 주요 목적이 단일종류의 주식 요구조건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한, 그 요구조건이 강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주식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법인 상태에서 주식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부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즉, 부채의 성격도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제한되어야 할것이다.

- 기채회사(起債會社: debtor)는부채의 이자 등의 지급에 있어 서면상 제한하는 규정을 가져야 한다.
- 이자율과지급일은법인의이익, 경영상의판단, 기타이와유사한것에영향을받지않는다.
- 사채는 특정 규정없이는 주식으로전환할수 없다.

3) 기타 제한요건

상기의 두 가지 요건 이외에 것으로서 주주의 수에 대한 제한, 업종별 제한 등을 둘 수 있다. 주주의 수에 대한 요건은그 주주의 수가 법정하는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규모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업종별 제한은 소규모법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업종을 보험업(insurance company),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경우는 금하는 규정을삽입하는 등상황에맞게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택서의작성

소규모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유효한 선택서[30]를 제출해야만 한다. 유효한 선택을 위해서는, 기한내[31]에 신고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해야 할것이다.

30)미국의경우, 그선택서는Form 2553(Appendix B 참조)에따라작성된다. 우리나라의경우도이와유사하게각종요건들을 반영한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할것이다.

31) 미국의경우소규모법인을당해과세연도에적용받기위해서는, 소규모법인선택신고서가이전연도, 또는당해과세연도의3번째달 15일이전까지제출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에대한적정한규정을반영해야할것이다.

〔그림 1〕 소규모법인 선택서 제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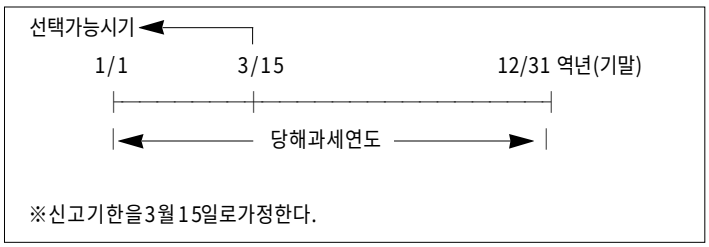

이러한 선택서 작성시 국세청은 소규모법인 상태의 선택서상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선택서상 오류가 납세자의 부주의(inadvertent)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소규모 법인 요건에 적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법인과 같이 기업 활동을 영위했어야만 한다. 또한 기한내 제출을 못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연장사유[3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주의동의

유효한 선택의 요건 중 하나로서 당해 법인 주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선택의 최종 기한까지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 소규모법인 선택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소규모 법인 선택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주주들은 동의서 제출에 대한 기한의 연장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유연하게 제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편의상 올바른 것이라 여겨진다. 만약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소유주주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비록 소규모법인 선택 이전에 주식을 매각한 주주일지라도 당해 과세연도 기초에 주주였으면 그들의 동의도 필요로 한다.

[예 2]

甲乙 법인의 주주인 甲이 2월 1일에 소유한 전체 주식을 매각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인 3

32)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는 천재 ·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규모법인 선택신고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월 15일에 소규모법인선택이적합하게 이루어졌다.

이 경우에는 소규모법인 선택을 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주주인 甲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는 반대로 소규모법인 선택을 한 후에 신규로 들어오는 주주의 경우는 동의를 당연히 필요로 하지않는다.

4. 소규모법인선택의취소및종료

소규모법인의 선택은 법인 스스로 철회하거나 법원의 결정 또는 다음에서 살펴볼 일정 사유에 해당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한번 선택한 소규모법인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무기한적으로그 선택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신청 및신고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자발적 철회

소규모법인의 선택의 자발적 철회는 철회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의 동의와 기한[33]내 철회신청서 제출을 그요건으로한다.

2) 일정 사유에 의한 소규모 사업법인 상태의 취소

소규모법인으로의 선택이 소규모법인 선택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면소규모법인의선택효과는종료된다.

그러한소규모법인상태의종료는법인에서당해사유가발생한날부터효력을미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이종(異種)의 주식을 가지게 되거나, 소규모 법인의 정의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발생일부터소규모법인상태는종료된다. 이렇듯소규모법인과세기간중에종료되어 일반법인으로 당해 법인의 상태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시 소득항목과 공제항목은소규모법인과일반법인으로나누어 집계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소득항목 등은 다음과 같이비례적배분법과장부마감법중하나의방법을선택하여세법상규정할수있다.

① 비례적 배분법: 각각의 항목들은 일별로 동등하게안분된다.

② 장부마감법: 당해 사유 발생일에 장부를 실제로 마감하고 일반적인 회계처리방법에 기초하여 종료일까지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한다.

33) 미국의경우당해 과세연도시작일부터 2와 2/1개월이후에철회신청을한경우에는다음 과세연도부터 그효력을미친다. 우리나라도이와유사한규정을제정하는것이필요하다.

3) 종료 후 재선택

소규모 법인의 선택이 종료된 후, 당해 법인은 5년동안 소규모법인 상태로의 재선택을 할 수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예외적으로 5년내 재선택을인정한다.

- 과점주주의 교체: 법인의소유에서50% 이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당해 종료가 의도되지않은 것으로서, 합리적인 기간내에 수정되는경우

5. 소규모법인의과세연도

소규모법인은 비록 납세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일반법인과 같이 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 즉, 소규모법인은 세무보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하고, 보고기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세법 §1378에서 소규모법인의 과세연도는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목적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각 회계기간마다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기말에 그 소득이 주주들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과세기간의 선택은 과세 이연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과세기간의 선택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년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3] 소규모법인의회계연도가1월1일부터시작하여12월 31일까지라면, 역년에의해계산되는 주주들의 개인소득세 과세연도와 일치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소규모법인의과세연도가2001년6월 30일끝난다면, 주주들은소규모법인소득(2000년 7월 1일에서 2001년 6월 30일까지의 벌어들인 소득) 중 당해 주주의 몫을 12월 31일에 그의 세금신고서에포함하게될것이다. 그래서, 다소간의소득이연의기회가발생하게된다.

제 3 절 소규모법인의 운영

소규모 법인은 조세목적상 소득세법상의 개인들의 공동사업처럼 취급된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 각 과세연도에서 소규모법인 운영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통상적인 소득 및 지출은 합산하여 지분별로 계산하고, 기타 몇가지 항목들에 한해서는 각 항목별 구분된 상태의 소득, 소득공제, 그리고세액공제를 개인별로 결정한다.

1. 과세소득의산정

일반적으로, 소규모법인의 소득신고 항목은 (1) 비분리된 상태에서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소득이나 손실, 그리고 (2) 분리된 상태에서의 소득, 손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질적으로, 비분리 신고항목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소규모법인 상태에서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편 소규모기업 법인의 구분 신고항목은 각 주주들에게 분배되어 개별 주주들의 개인 세금신고서에 바로 귀속된다. 이러한 별도 구분항목은 세법상 열거해줄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의 것을포함하여야 할것이다.

- 별도 분리신고항목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과 법정하는 특수한 소득 또는 손실들로서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하면다음과같다.
  - 면세소득(Tax-exempt income), 양도소득, 기부금, 세액공제(credit), 일정한포트폴리오 소득[34] 또는 영업활동과 무관한 소득원천(투자활동으로 인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한 소득

2. 소득과손실의분배

각각의 주주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소득이나 손실을 비례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각 항목들은모두별도로 구분한다. 비례배분방법은각과세연도의주주소유지분별로안분하여계산하고 각 계산 금액의 합계액은 각각의 소규모법인 항목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오직 소유지분에 따른 분배만을 허용[35]한다. 그리고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연도 중에 변경된다면, 이러한분배는주식을소유한보유일별로비례하여각항목들을그주주에게할당한다.

34) 포트폴리오 소득(Portfolio Income)이라함은 이자, 배당, 로열티, 그리고 투자(소극적 투자 활동 제외)에서 기인한 이득과 손실등을 포함하는소득이다. 이러한개념은미국의 1986년Tax Reform Act에서소개된 바있으며, 소득을소극적 소득, 적극적소득, 그리고포트폴리오소득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구분의실익은소극적활동으로인한손실은적극적소득이나포트폴리오소득과상쇄할수없다는점에있다.

35) 미국의파트너쉽과세제도의경우에는각상황에맞는특수한분배, 즉소유지분과는별도의분배비율을설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소규모법인의경우에는이를금지시키고있는데, 이는법인이라는성격상주식의소유상태로분배비율을정하는것이합당할뿐만아니라, 분배비율의조작을통해세액을감소시키는법의오 · 남용기회를막을수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도이러한소유지분별분배제도를채택하는것이합당할것이다.

<계산식 2>

항목별신고액 = 소규모법인항목×소유지분비율(%) ×소유기간비율(%)

소규모법인 상태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가단축되는 결과를 야기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보유기간비율을계산하여야한다. 그리고주주의사망등으로주주의탈퇴가발생하는경우에는, 사망일까지보유기간에비례하여안분한몫을개인의소득세신고서로보고하게된다.

이 경우 각 소득항목 계산에 필요한 과세연도의 취급방법으로서 두 개의 과세연도로 나누어 모든 주주에게 적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이 방법하에서는, 퇴사일에장부상 마감이 되고, 모든 주주들에게 하나의 과세연도로 소규모법인 항목 중 그들의 몫을 배분하게 된다. 이러한방법의 선택은 주주 사이의 소득, 손실, 그리고세액공제를전이하여 세액을 줄이는 기회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으므로, 당해 방법의 선택은 퇴사후 전체 세액에 영향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의 소득과 손실의 분배를 금지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예 4]
甲과 乙은 각각 소규모법인 丁의 주주로서 50 : 50 의비율로서 전체 주식지분을소유하고 있다. 다음은 소규모법인에서 발생한 일자별 소득과 지분변경 내역이다.

1) 소규모법인의 통상소득: 월 15,000원×12개월= 180,000원
2) 2002년4월 3일: 乙은丙에게 乙 소유의 주식전부를매각
3) 2002년8월 18일: 별도신고항목인양도소득 75,000원발생

〔그림 2〕 일자별 지분변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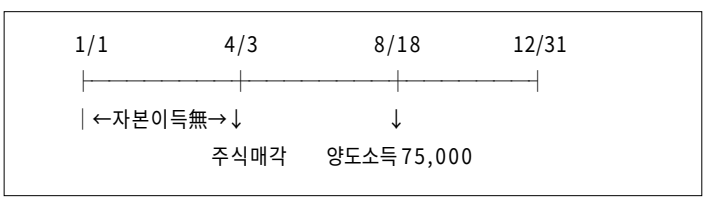

① 일반적인 방법 적용시

甲:	통상소득	$180,000 \times 50\%$	=	90,000
	양도소득	$75,000 \times 50\%$	=	37,500
				127,500 원
乙:	통상소득	$180,000 \times 50\% \times \frac{93}{365}$	=	22,932
	양도소득	$75,000 \times 50\% \times \frac{93}{365}$	=	9,555
				32,487 원
丙:	통상소득	$180,000 \times 50\% \times \frac{272}{365}$	=	67,068
	양도소득	$75,000 \times 50\% \times \frac{272}{365}$	=	27,945
				95,013 원
총계:				255,000 원

② 퇴사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 乙이 2002년 4월 3일자로 퇴사함에 따라 그의 주식지분에 관한 장부를 마감(종료)한 경우

甲 :	통상소득	$180,000 \times 50\%$	=	90,000
	양도소득	$75,000 \times 50\%$	=	37,500
				127,000 원

乙 :	통상소득(월할)	$[15,000\times(3+\frac{4}{30})]\times50\%$	=	23,500
	양도소득			0
				23,500 원
丙 :	통상소득(월할)	$[15,000\times(8+\frac{26}{30})]\times50\%$	=	66,500
	양도소득	$75,000\times50\%$	=	37,500
				104,000 원
총계:				255,000 원

상기의 예에서와 같이 소득의 총액은 동일하지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도 과세연도의 처리 방식에 따라 각 주주들간의 소득전이가 일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장부 마감법은 엄격한 자격기준을세법에규정해야 할것이다.

3. 소규모법인의납세의무: 원평가익세

공동사업과는 달리 소규모법인은 원평가익에있어세금을납부할의무를지워야한다[36].

이러한 소규모법인에 원평가익세[37]를 과세하는 이유는 일반법인이 소규모법인으로 전환한 후 바로 청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원평가익세는 일반법인이 소규모법인이 되고 나서 일정기간내[38]에 자산의 처분에 의해 계상된 원평가익에 대하여 적용함으로 인하여 청산 후 조직변경을 한 법인과의 과세상 형평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상태에서 소규모법인으로 세법상의 조직을 변경한 법인에게만 적용되며, 신규 설립한 소규모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평가익세의 과세방법은 법인이 계상한 원평가익의 순액에서 일정한 이월영업손실 및 이

36) 현행세법상공동사업이나미국의파트너쉽같은경우에는당해공공사업체또는파트너쉽자체에는어떠한납세의무도지우지않는다. 다만, 각종협력의무만이있을뿐이며, 모든세액은각공동사업자또는파트너에게과세된다.
37) 원평가익(Built-in gain): 원평가익이라함은소규모법인의선택이전에일반법인으로과세상적용받고있던법인의미청산유보이익을말한다.
38) 미국의경우, 그기간을10년으로정하고있다.

월양도손실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정하는 세율[39]로 <표 2>와 같은 체계로 과세된다. 계상되는 원평가익의 순액은 총액에서, 당해 법인자산의 취득원가의 총액을 공제한 액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예5]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시점에서 1,000,000원의 원평가익이 있고 600,000원의 원평가손이 있는 경우, 원평가익의 순액 400,000원만이 본 사항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직변경 이후에 취득된 자산가액의 증가나 지위의 변경일 이후의 기존자산 가액의 증가는 원칙적으로원평가익세의 과세대상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본 규정에 의해 계상된 원평가차익의 순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당해 이익을 계상한 연도에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과세에는 과세소득액에 의한 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1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계상된 원평가익의 순액은 당해법인의 과세소득까지로 한정된다. 그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익년도 이후로 이월된다.

[예6]
소규모법인이 동일연도에 1,000,000원의 계상된 원평가익과 1,000,000원의 당기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계상된 원평가익은 당해에는 본 규정에 의한 과세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법인의 계상된 원평가익(1,000,000원)이 그 과세소득(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상된 원평가익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1,000,000원)은 이월되어 익년도이후의 연도(다만, 계상기 중의연도)에 그해의 과세소득액에 의한제한의범위액에서 과세된다.

원평가익 과세규정에서는원평가익에 대한 과세소득은 과세상 계상기간중에 계상된 소득이 포함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처분에는매각 또는교환에 의한 소득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수취할 권리를 처분하는 과세사실(외상매출금의회수 등)이 포함된다. 계상된원평가손(Built-in Loss)에는계상기간중에손금처리할수있는금액으로서소규모법인으로서의 최초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한 것이포함된다. 원평가익과세가일정한비과세거래에의해 일반

39) 미국의경우, 법정하는법인세율은최고세율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최고세율또는조직변경당시의적용가능한법인세율로규정할수있을것이다.

<표 3> 원평가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계산방법

[1단계] 당해연도자산의매각등으로발생한원평가익이나일반법규하의과세소득중에서적은것선택*

[2단계] 일반법인과세연도부터기인된미소멸된이월결손금과자본손실을공제

[3단계] 2단계에서얻어진과세표준(Tax Base)에그원평가익세율(미국의경우는당해법인의최고한계세율)을곱함

[4단계] 3단계에서얻어진총액에서일반법인과세연도로부터발생하는모든이월된사업상세액공제와조세우대조치에 의한세액공제(credit) 이월액을공제

[5단계] 법인은4단계에서나타난세금을납부한다.

* 과세소득을초과하여인식되는원평가익의순량은그다음해가법정기간(미국의경우10년) 내에있는한은그다음연도로이월된다.

법인으로부터, 또는 다른소규모법인으로부터취득한자산에도적용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당국은 순원가가익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규모법인 선택의 직전의 법인에게 출자된평가손이있는자산은위장출자방지규정을적용하여이를규제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 원평가익에 대한 과세는 법규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는 과세하는 한편, 요건에 부합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며, 법인이 청산 기타 자산의 처분을 법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원평가익 과세를 피할 수있다.

그리고 계상된 원평가익의 순액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되므로, 납세자가 이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소규모법인인 동안에 발생한 자산평가의 증가분은 통상 법인단계에서 과세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법인 선택 이전의 평가익뿐만 아니고 그 후의 평가익에 대하여도 과세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세무행정상의 편의와 납세자의 성실성 유도 측면에서 올바른 것으로 여겨진다.

4. 기타운영상적용법규

소규모법인의 운영과정에서 과세권자 및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앞서 주주의 수에 대한 요건이 소규모법인에 적용된다면, 소규모법인은 다른 법인의 주식은 소유할 수 있지만, 일반법인이 소규모법인의 주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일반법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소규모법인의 주주 수 요건을 우회하여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소규모법인은 일반법인에게 적용되는 기부금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단계가 아닌 주주단계에서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법인단계에서의 기부금규정을적용할여지가없다.
- 소규모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본을 공급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일반적으로 가족들)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정하는 합리적 보상 이상의 소득을받는 경우에는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합산하여과세하는 것으로 한다.
- 소규모법인의 임원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인건비 등은 통상적인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보아 소규모법인 단계에서 계산한다.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의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다.

제 4 절 소규모법인의 분배

소규모법인의 분배에 있어서 세법에서는 일반법인에서 조직변경을 한 소규모법인과 신설 소규모법인과는다른 규정을 적용해야한다.

소규모법인 선택 이전에 일반법인이었던 경우, 주주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평가익이 있을 것인 반면, 이전에 일반법인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은 주주에게로 유입되므로 주주는 법인의 모든 발생소득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부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평가익이 없는 법인과 원평가익이 존재하는 법인과의 분배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과세규정을마련하여야 한다.

1. 원평가익이없는법인의분배

일반법인으로부터 조직 변경한 소규모법인이 아닌 경우, 원평가익은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즉, 소규모법인의 분배는 부채를 감소시키지는 않으나, 주식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그 주식의 기초가액이 0이 될 때까지는 분배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초가액을 감소시키고, 기초가액을넘어서는 일정 초과 분배분은 자산 또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이되어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2. 원평가익이존재하는법인의분배

원평가익이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원평가익이 없는 법인의 경우보다 복잡한 규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평가익을 가지는 법인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이미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원평가익 이외에는 배당에 있어 더 이상의 과세가능한이익은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당해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충분한 분배를 하고 일반법인이었을 때의 원평가익을 가지고 분배를 하려고 한다면, 소규모법인의 수익을 구분하여 기재해 나가야만 한다. 즉, 당해 분배의 조세상 취급은 그 분배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1) 소규모법인에서회계상유보된이익을재원으로하는경우: 비과세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유보하여 익년도 이후에 이를 재원으로 배당 등의 분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배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즉, 주식의 기초가액만을 감소시킬 뿐 이에대한세법상의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면세소득(Tax exempt income)의경우에는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이지만, 이에 대한 배당도 일반적인 과세된 이익과 같이 비과세한다. 주식의 기초가액을 초과하여 기인한 일정 분배는 주식의 매각이나 교환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기초가액은주주가비과세분배를받는것에 대한 상한선이 된다.

(2) 일반법인의사업연도동안유보된이익을 재원으로하는경우: 원평가익 과세

일반법인의 사업연도 동안 유보된 이득을 재원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이익 중 앞서 설명한 원평가익에 해당하는것에 한하여 원평가익세를 과세한다.

[예 7]

소규모법인甲乙은甲만이유일한주주이며, 모든주식의취득원가는10원이다. 甲乙이12월31일에취득원가가10원이고, 공정시장가치가100원인원평가익이있는자산을분배하였다.

① 원평가익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인이 계상한 소득의 전액 90원이 주주에게 유입되어 주주의 주식 기초가액은 100원(취득원가 10원+법인소득 90원)이 된다. 주주의 주식 기초가액은 분배된 자산이 공정시장가치인 100원만큼 감소하게 되고, 주주가 분배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100원이 된다. 주주는 분배에 관하여 소득을 계상하지 않으나 그주식의기초가액은 0이 된다.

주식매입원가	:	10원
+ 소득지분액	:	+ 90원
- 손실지분액	:	- 0원
- 분배(배당) 지분액(4)		- 100원
= 기초가액	:	0원

② 원평가익세가 적용되는 경우: 주주의 주식의 기초가액 증가액은 법인단계에서의 소득액에서 법인단계에서의 세액을 제한 금액이 된다. 그 밖의사항들은 ①과동일하다.

제 5 절 소규모법인의 종료 및 청산

소규모법인의 세법상의 조합과세 선택 종료는 소규모법인 자체의 자의적 선택과 요건 불충족등에따른 과세권자의처분등에서기인한다.

1. 소규모법인의종료

소규모법인의 종료는 소규모법인의 자의적 선택과 요건의 불충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소규모법인의 청산에 대한 설명만을 간략히하고자한다.

2. 소규모법인의청산

소규모법인은 일반법인이 적용받는 대부분의 청산법규를 그대로 따르지만, 세법에서는 구분되어진다. 청산에 따라 소규모법인 주주에게 분배되는 자산은 회계상 당해 재산이 주주에

게 매각되는 것처럼 처리되어 과세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소규모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달리 청산이득에 대한 증분세(incremental tax)를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해 이득은 단지 원평가익세만의 과세로 주주에게 유입되어진다. 이렇게 과세하는 이유는 법인이득이 주주의 주식 기초가액을 동일액으로 증가시키고 주주가 청산절차를 밟게될 때, 주주에 의해 인식되는 이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게소규모법인은 일반법인에게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피하게 된다.

제 6 절 기타법인 및 고려사항

이상에서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에 대한 운영상 필요한 기본규정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세법을 제외한 여타 법률과의 관계와회계처리규정의적용 등도 있을 것이다.

1. 여타법률과의관계

먼저 여타 법률과의 관계를 보자면, 소규모법인은 비록 조합형태의 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상법상 주식회사인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여타 법률에서 취급된다. 따라서 일반법인에서 소규모법인으로, 그리고 소규모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시에 세법을 제외한 어떠한 법률에서도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을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서, 소규모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의 처음에 전제한 바와 같이 소규모법인은 세법을 제외한 여타법률 또는 규정에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회계처리규정에 있어서도 일반법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일반법인에서 소규모법인으로 또는 소규모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의 전환시에는 세무회계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 장부를 마감한 것으로 가정하여 결산한 후 새로운 회계연도로 시작하는 장부를 본래의 장부 이외로 새로이 기입하는 불편함은감수하여야 할것이다.

2. 기타고려사항

제 4장에서는 미국의 S-Corporation 세제를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할 경우, 주로 고려할

사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사례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밖에 과세권자들이 입법상또는실제 운영상 고려하여야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세법에 소규모법인 과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해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분류됨을 피할수 없는 기업에게 과세상 불이익 또는 불평등이 초래되는가?
- 세수의 추가 확보가 새 제도 제정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소규모법인 과세제도의 도입이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즉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기왕에 법인또는개인사업자로서 과세되는 기업이 소규모법인으로 과세될 경우 이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인가?
- 소규모법인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에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을 소규모법인형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유인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조세정책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일으키지않으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또는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추가되는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야기될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의 증가와 이의 도입이 가져다줄 사회적 이익의 증가 또는 사회적 손실의 감소를어떻게비교하겠는가?
- 입법상의 미비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세법상의보완또는 안전장치로어떤것을 둘 것인가?
- 좀더 현실적인 명제로서 소규모법인으로의 전환을 꾀할 기존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의 변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있는세수의일실 또는 증가는 얼마나 되겠는가?

제 5 절 결 론

본 논문은 소규모 법인에 대한 육성책의 하나로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자, 미국의 현행 S-Corporation 세제를 기본 틀로 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실제 도입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는 법인 자체에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고 법인의 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조합과세 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의 선택권을 소규모법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과세방식을 선택한 소규모법인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연도말에 모두 개인 주주들의 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배분이나 청산 등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일반법인에서 소규모법인으로의 전환시에 청산에 따른 평가익을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둠에 따라잔존하는원평가익에 대해서는 소규모법인자체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제는 입법론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와 동떨어진 하나의 독립된 세제로서만 존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제의 일부로서 그 특례적 조항을 삽입하여 법인단계에서는 비과세를, 그리고 주주단계에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규정을 준용하여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조세효과(설립, 운용, 청산시 현행 세법상 일반법인 · 공동사업과 소규모법인 간의 조세상 효과 차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 기업 형태별, 그리고 거래단계별 조세효과를개념적인분류와더불어실증적차이[40]를분석하여제시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세법상에 도입된다면, 그 소규모법인의 효율적인 세무계획은 그 선택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소규모법인에 대한 특례적 과세제도 도입시 납세자가 고려할 요소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향후연구과제 및방향으로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납세자들이고려할요소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사업손실이 예견되는지 여부: 사업손실이 예견된다면, 소규모법인 선택은 이러한 손실들이 주주에게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이 있음이 틀림없다.
-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 만약 주주들이 고율의 세율로 과세된다면, 소규모 법인상태를피하고낮은일반법인세율을 적용받는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법인이 이전 해부터 기인한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 이월결손금은 소규모법인의 과세연도에서 사용될수 없다(단, 원평가익세에 대한 것은 제외).
- 최저한세 적용문제 : 개인과 일반법인 양쪽 모두가 최저한세를 적용받지만, 소규모 법인 그 자체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개인 주주들에게 유입된 각 소득 및 조세우대항목들에따라최저한세가 적용될 수도있고그렇지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40) Benjamin C. Ayers, C. Bryan Cloyd, and John R. Robinson (1996)은 「Journal of ATA, Vol. 18. Supplement, 1996」에 발표한 논문 " Organizational Form and Taxes : An Empirical Analysis of Small Businesses " 에서소규모 사업이 S-Corporation의형태를선호하는이유로서조세적요인(소득세절감효과)이부분적으로작용함을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소규모법인에대한선택적조합과세제도가도입된다면, 이에앞서이러한실증적연구도선행될필요가있을것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규모법인을 선택할 때는 주주들에게 세무상 장점을 주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소유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때로는사업형태의 선택은 다른 요인들에의해결정되기도 하는바, 세금을 기초로 한 선택을 우선하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 상황 등을 고려한 전체적 이익에 목표를 두어야 할것이다.

다시 한 번 향후의 연구과제를 정리하면, 소규모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효율적 세무관리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밖에 제4장 마지막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세권자의 측면에서는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경제적 또는 정치적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재문,「미국의 유한책임회사법과 우리 유한회사법에 대한 제언」,『법률행정논집』, 1996.12
김진수, 김재진,『파트너쉽 과세제도에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0.12
원윤희,「중소기업에 대한조세지원정책의 경제적효과분석」,『산경논집』, 1995. 2.
이동호,「외국에있어서의중소기업 지원금융제도 ; 영 · 미의 경우」,『산경논집』, 1995. 2.
이창희,「파트너쉽에 대한적정과세방안 연구」, 재정경제부보고서, 2001
배원기,「소규모법인에 대한 조합과세방식 도입에관한 소고」,『회계와 세무』, 1991. 6.
정범식,「기업유형별 세부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정연성,「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최용선,「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도시과학논총』, 2002. 2.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0
김광수, 이성봉,『독일세법론』, 강원대학교출판부, 1997
김완석,『소득세법론』, 광교아카데미, 2000.
———,『법인세법론』, 광교아카데미, 2000.
———,『일본 법인세법해설』, 공인회계사회회계연수원 , 2001

재정경제부 세제실,「미국의 법인세법 해설」, 1992. 2.
최명근,『세법학총론』, 세경사, 1999.
최용선,「미국의 기업과세」, 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2001
한국조세연구원,『미국의법인소득과세제도』, 1997. 2.

- 외국문헌 -

Benjamin C. Ayers, C. Bryan Cloyd, and John R. Robinson, "Organizational Form and Taxes : An Empirical Analysis of Small Businesses," *Journal of ATA*, Vol. 18. Supplement, 1996

Gary L. Maydew, *Small Business Taxation - Planning and Practice*, Commerce Clearing House, Inc., 1991

Herry Cambell Black., *Black's Law Dictionary*, 6th ed., St. Paul, West Publishing, 1990.

Hoffman, Raabe, Smith, Maloney, *Corporations, Partnerships, Estates & Trust*, South-Western, 2001

Joseph A. Pechman, *Federal Tax Policy*, 5th ed.,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

Michael Schlesinger, *S Corporations - Tax Practice and Analysis*, Chicago, CCH Incorporated, 2000

Schoes, Wolfson, Erickson, Maydew, Shevli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Prentice-Hall, Inc., 2002

Y. S. Choe, *FIU Tax Class Lecture Note -"Tax 6015,"* Florida International Univ 1994 (chap. 9 10)

정책흐름

1. 200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2. 2002 한국의 사회지표

200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자료는 2002년 12월 20일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2003년1월1일부터달라지는경제제도및법규』의내용중 조세 · 재정분야와관련있는사항을발췌하여정리한것입니다. 〈편집자주〉

□ 중산 · 서민층의 소득세 부담 3,200억원 경감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자녀교육비 · 의료비 등 필요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30 50대 가장 근로자의세부담을경감
- 유치원생교육비: 100 →150만원
- 중고생교육비: 150 →200만원
- 대학생교육비: 300 →500만원
- 의료비: 300 →500만원
- 보험료: 70 →100만원
-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액: 300 →600만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상향조정(일 6만원 →8만원)함으로써일용근로자의세부담경감

○근로자의 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그이자상환액을소득공제

○지로로납부한학원비를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포함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직불카드사용을활성화

□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소액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여영세상인의경제생활을보장

○주택과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보호를강화

□ 납세편의 제고

○법인이 체납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체납세금의 납부 및 파산절차진행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산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면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무조사와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뿐만 아니라 현지확인조사 ·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로 인한 과세예고통지까지 확대하여납세자의사전권리구제제도를활성화

○지출증빙서류의확대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

수증)를수취하여5년간보관하도록되어있으나
-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에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임의조작할 수 없는 ERP 시스템상의 신용카드거래정보도지출증빙으로인정

○법인설립신고등첨부서류간소화
- 법인의 설립신고 등의 경우에 첨부해야 하던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국세청에서 행정정보통신망의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앞으로는제출하지않도록함

□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

○국세를 법정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인하(1일1만분의5 →1일1만분의 3)
- 대상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준비금 환입시 적용되는 이자상당가산율 인하(1일 1만분의4 →1일1만분의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시 적용되는 가산이자율 인하(1일1만분의4 →1일1만분의 3)

□ 다국적 기업본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인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상향조정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녀교육비와 주거비지출액을 월정액급여의 40%한도로소득공제

□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폐지하고개인별과세제도로전환

○부부합산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하던 것을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경우로변경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을5억원에서3억원으로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조정

○무형고정자산의범위조정
- 창업비에대하여현재5년이내의기간에균등액을감가상각하도록되어있으나 앞으로는당기비용으로처리하도록함
- 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가상각 대상내용범위및상각방법을기업회계기준과일치시킴

□ 구조조정세제 보완

○합병시승계받은이월결손금공제요건완화
- 피합병법인의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발생한경우 동 결손금을 승계된 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보다 합병후 과세소득이커지게되는경우가있어이를폐지

□ 2003년 하반기부터(예정) 도입되어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자산운용산업이투자자로부터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하고자산운용대상확대등자산운용산업과관련된규제를 개선하여자산운용산업이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마련

□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간접투자로 정의하고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금융행위는 자산운용업법이 우선 적용

□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에 부동산 및 장내 · 외 파생상품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출현

○미국 · 영국등의경우와같이부동산및상품(금등) 실물자산에투자하는펀드출현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적적으로 원본 보전이 가능한상품개발가능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등을 설정하여 분산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재산의 건전한 운용 가능

□ 펀드 등의 판매경쟁을 통한 판매서비스를 제고하고 실적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증권회사와 은행외 보험사에도 판매업무가 허용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적상품판매시에유의해야할원칙인판매행위준칙* 마련

* 판매사가판매시준수해야하는선관주의의무, 원금보장등수익을 보장하는행위금지및각종설명서제공및설명의무등

□ 국고금 납입고지서를 e-mail로 받아 가정에서 홈뱅킹으로 납부 가능

○납부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 관세 · 범칙금 · 수수료 · 부담금등 각종 국고금의 납입고지서를납부자의e-mail 주소로직접송달
○납부자가 서면으로 고지받거나 e-mail로 고지를 받은 후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뱅킹으로신속하고편리하게납부

□ 국고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행정기관에 일일이 서면으로 반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종전에는 국고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반납신청을 위한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만 돌려 받을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복잡한 신청절차 없이도 예금계좌번호만 전화나구두로통보하면계좌이체로반환

□ 공사대금 등을 받을 경우 국가기관이 국고수표를 발행하지 않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지급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던 국고수표를폐지하고납품자등의예금계좌로바로입금
○일선기관에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의 구매경비를 지급할 때도 납품자가 계좌이체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현금이나카드대신반드시계좌이체로지급

<신 · 구대비표>

재정경제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납세고지서등의송달방법	ㅇ직접교부, 우편	ㅇ전자송달추가 - 전자송달신청서제출 - 대상: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신고안내문	ㅇ국세기본법 §10 (공포일부터)	조세정책과 ☎ 503-9208
물납재산환급방법	ㅇ현금환급	ㅇ원칙: 물건환급 - 예외:물납재산의기매각,분할환급곤란한경우에는종전과 같이현금환급	ㅇ국세기본법 §51의2 (공포일부터)	조세정책과 ☎ 503-9208
납기연장사유	ㅇ화재,전화, 재해, 도난을당한때등	ㅇ 금융기관의토요휴무시다음정상근무일로납기연장 ' 추가	ㅇ국세기본법시행령 §2 (공포일부터)	조세정책과 ☎ 503-9208
미납국세열람제도	<신 설>	ㅇ주택,상가임차예정자가임대인의미납국세열람가능 - 열람신청서제출	ㅇ국세징수법 §6의2 (2003.1.1)	조세정책과 ☎ 503-9208
전자공매제도	ㅇ서면신청으로공매참가	ㅇ인터넷을이용한공매방법추가	ㅇ국세징수법 §67 ① (2003.1.1)	조세정책과 ☎ 503-9208
전자신고시첨부서류제출기한	ㅇ신고서와함께제출	ㅇ10일의범위내에서제출(조기환급시는즉시제출)	ㅇ국세기본법 §5의2 (공포일부터)	조세정책과 ☎ 503-9208
기한연장기간신설	<신 설>	ㅇ3월이내(1월재연장가능) - 납부기한연장은9월내	ㅇ국세기본법시행령 §3의2 (공포일부터)	조세정책과 ☎ 503-9208
기한연장신청시한	<신 설>	ㅇ기한만료일3일전까지신청 - 기한만료일부터3일이내에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신청	ㅇ국세기본법시행령 §3 (공포일부터)	조세정책과 ☎ 503-920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확대	ㅇ유권해석, 국세청장의업무감사결과예고통지 ㅇ대상:세무조사결과서면통지, 업무감사결과예고통지	ㅇ청구세액10억원이상인사실판단사항추가 ㅇ현지확인조사, 실지조사에의한것, 감사현지시정분추가	ㅇ국세기본법시행령 §63의8 ①,②(공포일부터)	조세정책과 ☎ 503-9208
납세증명서제출예외	ㅇ국가등이대금을받아국고에귀속되는경우만증명서제출예외	ㅇ파산법인의관할법원이납세증명서제출예외를세무서장에게 요청시제출예외	ㅇ국세징수법시행령 §5 (2003.1.1)	조세정책과 ☎ 503-9208
징수유예기간확대	ㅇ6월내:재해 · 도난으로인한재산손실등 ㅇ9월내:사업의중대한위기등	ㅇ9월내로통일	국세징수법시행령 §2 (2003.1.1)	조세정책과 ☎ 503-9208
납세증명서조회	ㅇ세무서장에게문서로조회	ㅇ국세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적방식에의해서도조회	국세징수법시행령 §5② (2003.1.1)	조세정책과 ☎ 503-9208
징수유예신청시한	<신 설>	ㅇ납부기한3일전까지신청 - 징수유예사유가납부기한으로부터3일이내에발생한경우에는납부기한까지신청	국세징수법시행령 §3 (2003.1.1)	조세정책과 ☎ 503-920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적용시한연장	ㅇ적용시한: 2002.12.31 *투자금액의10%를세액공제	ㅇ적용시한을2003.6.30까지6개월연장함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 (2003.1.1)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일몰도래감면제도적용시한연장	ㅇ2002년말일몰도래제도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손금산입 - 에너지절약시설투자공제 -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 기관투자자가창투조합등을 통해 출자하는경우에대한과세특례 -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ㅇ2003년말까지적용시한연장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손금산입 ㅇ2005년말까지적용시한연장 - 에너지절약시설투자공제(공제율축소10%→7%) -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공제율축소0.5%→0.3%) - 기관투자자가창투조합등을통해출자하는경우에대한과세특례(연기금,공제사업운용법인만적용) -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2005.11.30까지)	ㅇ조세특례제한법 - §25의2,57의2, §4, 104의3 (2003.1.1) - §126의2 (2002.12)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수도권내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투자확대	○세액공제대상시설 - ERP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연구·인력개발설비 - 디지털방송용장비	○세액공제대상시설투자범위확대 - 환경보전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조세특례제한법§30 (2003.1.1)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중소기업대상업종추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이허용되는중소기업지원대상업종: 27개	○선박관리업을중소기업업종에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8 (2003.1.1)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지방이전공장임시특별세액감면요건 완화및기한연장	○5년이상사업한법인이 수도권외지역으로이전시 - 처음6년간100%, 다음5년간 50% 세액감면 ○적용시한: '02.12.31	○공장의경우3년이상사업후이전한경우세액감면허용 ○ '05.12.31까지적용시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63의2 (2003.1.1)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조세감면사후관리제도폐지	○일반법인은감면세액상당액을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적립 ○중소기업및개인은감면세액상당액을2년이내에차입금상환또는5년이내에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 차입금상환, 사업용자산투자등조세감면사후관리제도폐지	○조세특례제한법§45, §46 (2002.12)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 19개업종 ○감면내용 - 수도권소기업: 20%감면 - 지방중소기업: 30%감면 *도·소매업, 의료업및자동차정비업은 10%감면	○9개업종추가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및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 ○의료업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제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 ○조세특례제한법§4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적용대상설비 -공정개선·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전자상거래설비 ○공제율 -중소기업:5%(ERP는 10%), 대기업 3%	○적용대상설비추가 -SCM(공급망관리설비),CRM(고객관계관리설비) 추가 ○공제율조정 -중소기업:7%(ERP도 7%), 대기업은 3%	(2003.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물류산업범위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이허용되는물류산업: 9개업종	○물류산업에항만법상의예선업을추가	(2003.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확대	○소음방지시설, 가스충전시설등에대한투자금액의3%를세액공제	○적용대상시설에전기자동차의전기충전시설추가	(2003.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5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 확대	○고효율형광램프등에너지절약시설에대해투자금액의 7%를세액공제 ○당초적립목적대로중소기업투자준	○적용대상시설에수도법에의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추가 *수도권내투자도세액공제허용	의2 (2003.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이자상당가산액가산율인하	비금등을사용하지않아 익금환입하는경우적용하는가산율: 1일 4/10,000	○1일3/10,000으로인하	(2003.1.1)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

정 책 흐 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자경농지양도세비과세범위확대	○8년이상자경농지양도시양도소득세비과세	○5년이상자경한농지를농업기반공사 · 영농회사법인및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는경우도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69 (2003.1.1)	재산세제과 ☎ 2110-2321
신축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특례축소	○2003.6.30까지취득하거나건축한 신축주택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특례적용	○신축주택취득시한단축 -서울 · 과천 · 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지역은2002.12.31 종료	○조세특례제한법§99의3 (2003.1.1)	재산세제과 ☎ 2110-2321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수정신고관련 규정명확화	<신 설>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 규정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10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부가세영세율적용대상「장애인용정보통신기기」	○장애인용보장구 -의수족 · 휠체어등13가지보장구	○장애인용특수정보통신기기및소프트웨어추가 -시각장애인용점자단말기 등	○조세특례제한법§105, 제4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5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한국공항공단」을정부업무대행단체에 서제외	○정부업무대행단체의범위 -농협 · 수협, 별정우체국등 -한국공항공단	○「한국공항공단」삭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6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국민주택「설계용역」을부가가치세면제 대상에추가	○국민주택(전용면적85㎡이하)의건설용역과국민주택관련전기공사 · 소방공사 · 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면제	○국민주택신축에필요한설계용역을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6 (2003.7.1)	소비세제과 ☎ 2110-2324
금지금부가세면제	<신 설>	○금세공용 · 금융상품용금지금부가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3 (2003.7.1)	소비세제과 ☎ 2110-2324
중고자동차재활용매입세액공제율축소 시기연장	○중고자동차재활용매입세액공제율 축소(03.1.1부터) - 10/110 →8/108	○중고자동차재활용매입세액공제율축소시기를6개월연장 - 10/110 →8/108 - 2003.7.1부터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8 (2003.7.1)	소비세제과 ☎ 2110-2324
역외금융에대한조세지원폐지	○금융기관의역외금융에서발생하는 소득에대한법인세 · 소득세면제	○과세전환	○조세특례제한법§21 (2003.1.1)	국제조세과 ☎ 2110-2327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확대	○조세조약에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채택하고있는경우 20% 이상출자한해외자회사로부터받는수입배당금에대하여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허용	○조세조약에서동제도를채택하고있지않거나조세조약을체결하지않은국가에소재하는해외자회사(50%이상출자한경우에한함)에출자한내국법인에대해서도동자회사가납부할법인세상당액의50%를세액공제추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6 (2003.1.1)	국제조세과 ☎ 2110-2327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확대	○신용카드(직불카드포함)사용금액에대한공제율: 20%	○직불카드사용금액에대한공제율: 30% ○지로로납부한학원비를공제대상에포함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2002.12.1)	소득세제과 ☎ 503-9214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위한 세제지원	○외국인근로자의해외근무수당비과세한도: 월정액급여의20% <신 설>	○비과세한도확대: 월정액급여의40% ○연봉제로급여를지급받는외국인근로자는자녀교육비와주거비지출액을월정액급여의40%범위내에서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18조의2 (2003.1.1)	소득세제과 ☎ 503-9214
미납부가산세율인하	○1일1만분의5의율	○1일1만분의3의율	○법인세법시행령§119 (2003.1.1)	법인세제과 ☎ 2110-23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환입	○1일1만분의4의율	○1일1만분의3의율	○법인세법시행령§76조(2003.1.1)	법인세제과 ☎ 2110-2317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세액계산	○1일1만분의4의율	○1일1만분의3의율	○법인세법시행령§119 (2003.1.1)	법인세제과 ☎ 2110-2317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지출증빙서류의범위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보관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되어있는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거래정보도지출증빙으로인정	○법인세법시행령 §58 (2002.12.30. 속하는사업연도)	법인세제과 ☎ 2110-2317
특수관계자의범위조정	○소액주주: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주주로서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에미달하는주식을소유한주주	○소액주주등: 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1에미달하는주식등을소유한주주또는출자자	○법인세법시행령 §87 (2003.1.1)	법인세제과 ☎ 2110-2317
과세이연대상국고보조금범위	<신 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보조금을추가	○법인세법시행령 §64 (2003.1.1)	법인세제과 ☎ 2110-2317
무형고정자산의범위조정	○연구개발비: 계상한사업연도개시일부터5년이내균등상각 ○창업비: 5년이내균등상각	○개발비: 관련제품의판매또는사용이가능한시점부터20년이내의기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에따라균등액을상각 ○창업비: 폐지 ○주파수이용권과공항시설관리권: 고시하거나등록한기간내에서균등액을상각	○법인세법시행령 §24,§26 (2002.12.30. 속하는사업연도)	법인세제과 ☎ 2110-2317
합병시승계받은이월결손금공제요건완화	○합병후승계사업에서결손금이발생한경우공제가능한승계결손금에서차감	<폐 지>	○법인세법시행령 §81 (2003.1.1)	법인세제과 ☎ 2110-2317
기준초과차입금법인판정시자기자본의계산방법	○납입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가산 - 주식할인발행차금차감	○납입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가산 - 주식할인발행차금차감 - 감자차익가산	○법인세법시행령 §54 (2003.1.1)	법인세제과 ☎ 2110-2317
납세지변경신고및설립신고시첨부서류간소화	○등기부등본첨부	○등기부등본첨부생략	○법인세법시행령 §9,§152 (2003.1.1)	법인세제과 ☎ 2110-2317
근로소득자특별공제한도확대	○보험료공제: 70만원 ○의료비공제: 300만원 ○교육비공제 - 유치원생:100만원 - 초중고생:150만원 - 대학생: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300만원	○보험료공제: 100만원 ○의료비공제: 500만원 ○교육비공제 - 유치원생:150만원 - 초중고생:200만원 - 대학생: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600만원	○소득세법 §52 (2003.1.1)	소득세제과 ☎ 503-9214
의료비공제대상확대	○질병치료목적의의료비를소득공제	○건강진단비를의료비공제대상에포함	○소득세법시행령 §110 (2003.1.1)	소득세제과 ☎ 503-9214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대상확대	○금융기관간장기주택차입금을 이전한경우에만공제	○동일금융기관내에서이전하는경우에도공제대상에포함	○소득세법시행령 §112 (2003.1.1)	소득세제과 ☎ 503-9214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확대	○소득공제금액: 일6만원	○소득공제금액: 일8만원	○소득세법 §47 (2003.1.1)	소득세제과 ☎ 503-9214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폐지	○자산소득에대하여부부합산과세 ○부부합산금융소득금액을기준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판단	○자산소득에대하여개인별로과세 ○개인별금융소득금액을기준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판단	○소득세법 §1 (2002.8.29) ○소득세법 §4 (2002.8.29)	소득세제과 ☎ 503-9214
외국인관광객호텔숙박용역영세율연장	○ 02.12.31까지적용	○6개월연장 (03.7.1부터폐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6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기능성쌀」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신 설>	○면세대상에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8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정 책 흐 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대손세액공제사유의확대	<신 설>	○회수기일이6월이상경과한10만원이하의소액채권으로서회수실익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63조의2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전산테이프로제출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서류로제출	○전산테이프,디스켓으로제출가능	○부가가치세법시행령§60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시기조정	○거래처별로1역월이내거래관행상정하여진기간의가액을합계하여교부가능	○사업자가임의로정한기간의가액을합계하여교부가능	○부가가치세법시행령§54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구매확인서에의하여공급되는금지금의영세율적용폐지	○영세율적용	○영세율적용폐지 <2003.7.부터금지금면세제도도입>	○부가가치세법시행령§64 (2003.7.1)	소비세제과 ☎ 2110-2324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금융·보험업의범위조정	<신 설>	○대한주택보증회사의보증업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및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3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도시가스사업자의가정용가스공급에대한영수증교부허용	<신 설>	○도시가스법에의한도시가스사업자가산업용이아닌도시가스를공급하는경우영수증교부허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69조의2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무인자동판매기에의한사업의사업장범위명확화	○자판기설치장소를사업장으로등록	○무인자동판매기가설치된사업장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사업장으로등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6 (2003.7.1)	소비세제과 ☎ 2110-2324
인·허가사업폐업신고절차보완	○폐업신고시사업자등록증첨부제출	○사업자등록증에추가하여관할시·군·구에폐업한사실을입증하는폐업신고서사본등첨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10 (2003.7.1)	소비세제과 ☎ 2110-2324
장기할부판매의개념을소득세법규정과일치	○당해재화의인도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최종부불금의지급기일이속하는달까지의기간이1년이상인것	○당해재화인도기일의다음날부터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이1년이상인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31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일명확화	○20일이내승인통지	○20일이내승인여부미통지시승인한것으로간주	○부가가치세법시행령§5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	○1일0.05%(연18.25%)	○1일0.03%(연10.95%)	○부가가치세법시행령§60의3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법인사업자등록신청시구비서류간소화	○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첨부	<삭 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5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특소세과세대상승용차범위를자동차관리법상의승용차범위와일치	○일반형: 주로사람의수송을목적으로제작된것	○일반형: 자동차관리법제3조에규정된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6호(2002.12.11)	소비세제과 ☎ 2110-2324
택시등조건부면세승용차의특소세추징세액계산방법개선	○추징당시판매가격기준	○추징당시취득세시가표준액기준	○특별소비세법시행령§52의7 (2002.12.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	○1일0.05%(연18.25%)	○1일0.03%(연10.95%)	○특별소비세법시행령§58조의2 (2002.12.11)	소비세제과 ☎ 2110-2324
특별소비세납세증명표지부착제도폐지	○가구류·골프용품등에특소세납세증명표지부착	<삭 제>	○특별소비세법시행령§57 (2002.12.11)	소비세제과 ☎ 2110-2324
탁주·약주·청주의알콜도수제한폐지	○알콜도수제한 - 탁주: 3도 - 약주: 13도 - 청주: 14도	○알콜도수제한폐지	○주세령§1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부가세환급대상농·어업용기자재품목확대	○농업용: 5종 ○어업용: 8종	○인삼재배용지주목·차광망·구명부기·구명동의·기상용팩시밀리추가	○농림특례§ 별표5·6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부가가치세영세율이적용되는「축산업주업법인」의판정및확인제도개선	○판정: 축산업수입금액또는자산가액 90%이상 ○확인: 시·도지사	○판정: 자산가액기준을폐지하고수입금액기준으로단일화 ○확인: 세무서장	○농림특례§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농 · 림 · 어업용기자재의보유여부에대한확인제도보완	○동장 · 이장	○통장 · 이장, 어촌별수협조합장 ○동일과세기간으로제한하는제도폐지	○농림특례§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농어업용기자재구입시농어민의부가세환급신청기한의조정	○구입일이속하는동일과세기간에 신청해야환급	○이자상당가산세율	○농림특례§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부가세환급대상농어업용기자재부정환급자의가산세율인하	○이자상당가산세율 - 1일0.05%(연18.25%)	- 1일0.03%(연10.95%) ○농산물건조장운영업을추가	○농림특례§0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면세유적용대상업종의명확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및 축산복합농업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1일0.05%(연18.5%)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1일0.03%(연10.95%) ○시설기준을종전의1/2로완화	○농림특례§4 (2003.1.1) ○주세법시행령§7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소비세제과 ☎ 2110-2324
민속주 · 농민주의제조시설기준완화	○시설기준 - 국실: 9㎡이상 - 담금실: 20㎡이상 - 증류실: 15㎡이상	○사업자등록증사본제출폐지	○주세법시행령§별표3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미납세반출신고서류의간소화	○수출미납세반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	○사후신고허용	○주세법시행령§7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수출주류의면세절차간소화	○수출주류의면세절차 - 사전승인필요	○1년으로단축	○주세법시행령§0 (2003.1.1)	소비세제과 ☎ 2110-2324
1세대2주택중복보유허용기간단축	○1세대2주택자의일시적2주택보유허용기간: 2년	○1세대1주택으로서3년이상보유한경우양도세면제 다만, 서	○소득세법시행령§55 (2002.10.1)	재산세제과 ☎ 503-9221
1세대1주택거주요건신설	○1세대1주택으로서3년이상보유한 경우양도세면제	울 · 과천 · 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의경우3년 보유기간중1년이상거주요건추가	○소득세법시행령§54 (2002.10.1)	재산세제과 ☎ 503-9221
주택을3주택이상보유한자가양도시실가과세	○3주택이상을보유한자가주택을양도시기준시가과세	○3주택이상을보유한자가 주택양도시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소득세법시행령§62조의2 (2002.10.1)	재산세제과 ☎ 503-9221
상속주택과세	○1주택소유자가주택을상속받아상속주택을양도시비과세	○상속받은주택양도시과세	○소득세법시행령§55 (2003.1.1)	재산세제과 ☎ 503-9221
투기지역실가과세	<신 설>	○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는지역에소재하는부동산의경우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	○소득세법시행령§62조의2 (2002.10.1)	재산세제과 ☎ 503-9221
고가주택기준변경	○고급주택기준 - 아파트등: 전용면적45평이상 + 실가6억원초과 - 단독주택: 건평80평이상 + 실가6억원초과, 대지150평이상실가6억원초과 - 엘리베이터, 수영장등이설치된주택	○실가6억원초과(면적에관계없이금액기준만사용)	○소득세법시행령§56 (2003.1.1)	재산세제과 ☎ 503-9221
재개발 · 재건축사업기간중취득한주택양도시과세방법개선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취득하여거주한주택을재건축주택완공후1년이내양도시비과세	○1년이상거주한경우에한하여비과세	○소득세법시행규칙§1 (2003.1.1)	재산세제과 ☎ 503-9221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양도시과세방법변경	○재개발 · 재건축으로완공된아파트등을양도하는경우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등에대한과세방법을단계별로구분하여양도차익계산	○소득세법시행령§66 (2003.1.1)	재산세제과 ☎ 503-9221

정 책 흐 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양도시과세방법 변경	- 양도시와취득시의기준시가에의 하여과세 - 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전에취득 한아파트는최초로고시한공동주 택의기준시가에의하여환산	- 종전부동산취득시부터재개발 · 재건축후양도시까지를단계 별<종전부동산→종전토지(대지권)→신축아파트>로양도차익을 계산하여합산	ㅇ소득세법시행령 §166 (2003.1.1)	재산세제과 ☎ 2110-9221
사전처분재산에대한입증책임완화	ㅇ1년이내에처분한재산가액이재산 종류별로2억원(2년이내5억원)인 경우로서처분내역을미소명한금액 이처분재산가액의20% 상당액과 2억원중 - 적은금액보다적을경우: 과세하 지아니함 - 많을경우: 전액과세	- 좌동 - 20%상당액과2억원중적은금액을차감한잔액에대해서만과세	ㅇ상속 · 증여세법시행령 §11 (2003.1.1)	재산세제과 ☎ 2110-2321
증여재산에서공제하는채무 범위확대	ㅇ당해증여재산에담보된채무에한정	ㅇ당해증여재산을임대한경우임대보증금을채무로인정	ㅇ상속 · 증여세법시행령 §6 (2003.1.1)	재산세제과 ☎ 2110-2321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축소	ㅇ10년내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 액에서 - 5억원공제	- 3억원공제	ㅇ상속 · 증여세법 §3 (2003.1.1)	재산세제과 ☎ 2110-2321
경영권포함중소기업주식에대한할증평 가율인하	ㅇ대기업 · 중소기업구분없이일률적 으로 - 지분율이50% 초과시: 30% - 지분율이50% 이하시: 20%	ㅇ중소기업에한해50% 경감 - 15% - 10%	ㅇ상속 · 증여세법 §63 (2003.1.1)	재산세제과 ☎ 2110-2321
전자송신방식에의한서류제출근거 마련	ㅇ호적등본등을관할세무서에직접 제출	ㅇ호적등본등발급기관이당해서류를관할세무서에직접전자송 신방식에의한송신시제출인정	ㅇ상속 · 증여세법시행령 §64 (2003.1.1)	재산세제과 ☎ 2110-2321
국외지배주주범위확대	ㅇ외국모회사와국내자회사및외국본 점과국내지점과의관계	ㅇ형제회사를국외지배주주범위에추가	ㅇ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3 (2003.1.1)	국제조세과 ☎ 2110-2327
상호합의종료일	ㅇ상호합의개시일부터5년	ㅇ양국간합의가있는경우8년까지가능	ㅇ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3 (2003.1.1)	국제조세과 ☎ 2110-2327
금융정보교환	ㅇ다른법률에저촉되지아니한경우 정보교환가능	ㅇ금융실명법에불구하고조세조약에따라외국과세당국이금융정 보를요청하는경우상호주의에따라비거주자(한국국적자제 외) 및외국법인의금융정보를제공	ㅇ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1 (2003.1.1)	국제조세과 ☎ 2110-2327
신용보증재단보증서를관세 담보로추가	ㅇ은행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의보 증서등	ㅇ중소기업들이수입물품통관시제공하는담보에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보증서추가	ㅇ관세법 §94 (2003.1.1)	관세제도과 ☎ 503-9232
특송화물(DHL 등)의신속한통관	ㅇ국내수취인이특송화물에대한관세 를납부하기전에는통관불허(10만 원이하自家사용물품제외)	ㅇ특송화물업체가납부를보증하는경우관세납부전에도물품통 관가능	ㅇ관세법 §94 (2003.1.1)	관세제도과 ☎ 503-9232
관세납부액의수정신고시 납부기한연장	ㅇ수정신고와동시에납부	ㅇ수정신고한날의다음날까지납부	ㅇ관세법 §98 (2003.1.1)	관세제도과 ☎ 503-9232
관세통계의공개	ㅇ일반인의열람신청권허용	ㅇ교부신청권추가 ㅇ전자설비에의한교부가능	ㅇ관세법 §122 (2003.1.1)	관세제도과 ☎ 503-9232
수출입물품의신고대상범위 확대	ㅇ상용물품등 <추가>	ㅇ가공무역을위하여무상으로수출입되는물품기타고가물품	ㅇ관세법시행령 §261 (2003.1.1)	관세제도과 ☎ 503-9232
대체에너지생산용기자재관세감면	ㅇ태양열에너지기자재5개품목에한 해관세감면(감면율65%)	ㅇ태양열 · 태양광 · 풍력및연료전지생산용기자재등26개품목 으로확대	ㅇ조특법 §118관세경감규칙 (2002.12.4)	관세제도과 ☎ 503-9232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공장자동화물품관세감면	○가스발생기등 503개품목 - 감면율: 대기업40%, 중소기업 50%	○직류전동기등 475개품목(28개감소) - 감면율: 대기업40%, 중소기업50%	○관세법 §95 (2003.11.1)	관세제도과 ☎ 503-9231
관세사의실무수습기간단축	○1년	○6개월	○관세사법시행령 §6 (2003.1.1)	관세제도과 ☎ 503-9232
관세사시험에최소합격인원제도입	<신 설>	○전년도시험합격자의 ±20%내에서결정 - 다만매년최소 70명이상선발	○관세사법시행령 §10 (2003.1.1)	관세제도과 ☎ 503-9232
전산자격증소지자의가점폐지	○전산자격증별로관세사시험시 - 3 5점가점부여	- 2004년관세사시험부터폐지	○관세사법시행령 §4 (2003.1.1)	관세제도과 ☎ 503-9232

국 세 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계부처
소득표준율폐지, 기준경비율제도시행	○무기장사업자의소득금액을표준소득률에의해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표준소득률	○2003. 5.에 「2002년귀속종합소득세확정신고」부터무기장사업자는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에의해소득금액을계산 <소득금액추계방법> - 기준경비율적용사업자(업종별로직전연도매출액이6천 1억5천만원이상자) =수입금액-(증빙서류를수취한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사업자(업종별로직전연도매출액이6천 1억5천만원미만자와당해연도신규업자)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소득세법시행령 §145 *2002.1.1.이후 발생소득부터적용	납세홍보과 ☎ 397-1200

2002 한국의 사회지표

※이자료는통계청에서 2002년 12월 26일발간한『2002 한국의사회지표』중조세 · 재정분야와관련있는 사항을발췌하여정리한것입니다. <편집자주>

2002 한국의 사회지표

1. 인 구

가. 인구규모

○ 2002년 7월 1일현재우리나라 총인구는 4,764만명으로전년에비해0.63% 증가
- 여자100명당 남자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101.4명으로 여자100명당남자가 1.4명이많음
- 2002년 인구성장률이 1970년 1.99에 비해 1/3수준인 0.63%로둔화

○출산력은 1980년대중반에이미대체출산력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이른 후 출생률 감소가 지속되어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2000년 1.47명보다 0.17명이낮아졌음
- 2001년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은 11.6명으로 2000년 13.4명에비해 1.8명감소하였으며
-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5.1명으로 2000년 5.2명보다 0.1명낮아졌음

< 총인구, 조출생률, 조사망률및합계출산율: 1970 2002년 >

(단위: 천명, 인구천명당, 可妊여성1명당)

연도	총인구[1]	남	여	인구성장률	성비(여자= 100)	조출생률[2]	조사망률[2]	합계출산율[2]
1970	32,241	16,309	15,932	1.99	102.4	31.2	8.0	4.53
1980	38,124	19,236	18,888	1.57	101.8	22.7	7.3	2.83
1990	42,869	21,568	21,301	0.99	101.3	15.4	5.8	1.59
1995	45,093	22,705	22,388	1.01	101.4	16.0	5.4	1.65
1999	46,617	23,458	23,159	0.71	101.3	13.2	5.2	1.42
2000	47,008	23,667	23,341	0.84	101.4	13.4	5.2	1.47
2001	47,343	23,835	23,508	0.71	101.4	11.6	5.1	1.30
2002	47,640	23,984	23,656	0.63	101.4	-	-	-

자료: 통계청, 1)「장래인구추계」 2001. 12. 2「2001년인구동태통계연보」

나. 인구구조

○ 2002년 총인구를 연령 3계층으로 구분하면, 0 14세 유년인구는 총인구의 20.6%, 15 64세 생산가능인구는71.5%, 65세이상노령인구는7.9%를차지

- 14세이하 유년인구비중은 출산율 둔화 등 때문에 점차낮아지고있으며
- 15 64세생산가능인구비중도2000년을정점으로둔화
- 65세이상 노령인구비중은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후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여 급속한 노령화추이를보일것임
- 2019년 노령인구 비율은 14.4%로 유년인구 14.1%를 처음으로 초과할 것이며, 2026년 노령인구 비율은 20.0%로5명중1명은65세이상노인일것으로전망됨

○ 2002년 중위연령은 32.9세로 70년 18.5세에 비해 14.4년이많아져인구가고령화되고있음

○ 2002년 0 14세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인구의 비율(노령화지수)은70년에비해 5.3배증가한 38.3임

- 또한, 생산가능연령층이부양해야하는노년층인구비율

〈 연령3계층별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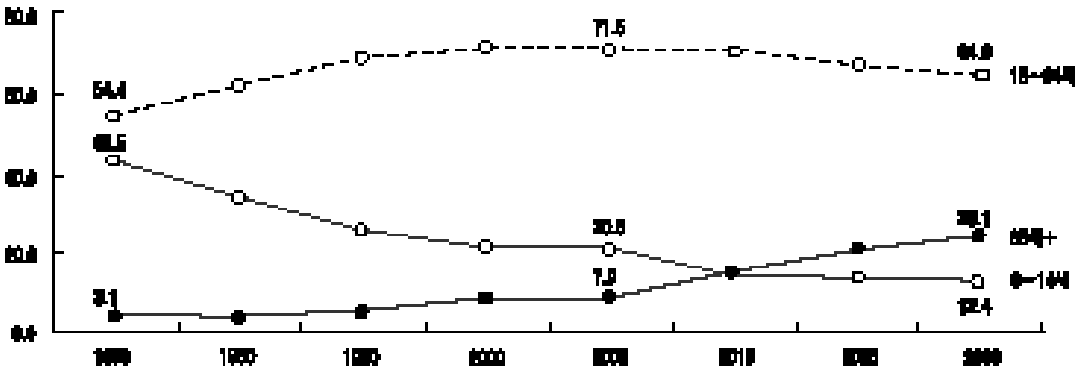

〈연령 3계층별인구추이: 1970 2030년〉

연 도	인 구(천명)				구성비(%)		
	계	0 14세	15 64세	65세 +	0 14세	15 64세	65세 +
1970	32,241	13,709	17,540	991	42.5	54.4	3.1
1980	38,124	12,951	23,717	1,456	34.0	62.2	3.8
1990	42,869	10,974	29,701	2,195	25.6	69.3	5.1
2000	47,008	9,911	33,702	3,395	21.1	71.7	7.2
2002	47,640	9,793	34,075	3,772	20.6	71.5	7.9
2019	50,619	7,147	36,158	7,314	14.1	71.4	14.4
2026	50,610	6,487	34,010	10,113	12.8	67.2	20.0
2030	50,296	6,217	32,475	11,604	12.4	64.6	23.1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1.12.

< 중위연령,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및 기대여명: 1970 2002년>

(단위: 세, %)

연도	중위연령	노령화지수[1]	노년부양비[1]	연도	기대여명[2]		
						남	여
1970	18.5	7.2	5.7	1971	62.3	59.0	66.1
1980	21.8	11.2	6.1	1981	66.2	62.3	70.5
1990	27.0	20.0	7.4	1989	70.8	66.8	75.1
1995	29.3	25.2	8.3	1991	71.7	67.7	75.9
2000	31.8	34.3	10.1	1995	73.5	69.6	77.4
2001	32.3	36.3	10.6	1997	74.4	70.6	78.1
2002	32.9	38.5	11.1	1999	75.6	71.7	79.2

자료: 통계청, 1)「장래인구추계」2001.12. 2)「1999년생명표」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 14세인구)×100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 64세인구)×100

< 출 · 입국자 추이: 1980 2001년 >

(단위: 천명, %)

연도	내국인 출국자①	전년대비 증감률	인구천명당출국자(명)	외국인 입국자②	① - ②	(①/②)×100
1980	726	7.7	19.0	969	-243	74.9
1990	2,333	19.4	54.4	2,720	-387	85.8
1995	4,508	19.3	100.0	3,565	943	126.5
1999	4,660	37.3	100.0	4,530	130	102.9
2000	5,795	24.4	123.3	5,213	582	111.2
2001	6,379	10.1	134.7	5,028	1,351	126.9

자료: 법무부,「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연도

< 목적별해외이주 신고자수: 1980 2001년>

(단위: 명, %)

연도	해외이주 신고자수	목적별				
		사업	취업	연고	국제결혼	기타
1980	33,358	70	1,130	25,938	6,220	-
1990	23,314	1,885	2,737	15,772	2,920	-
1995	15,917	2,492	6,573	5,695	1,150	7
1999	12,655	2,582	5,267	3,342	1,464	-
2000	15,307	2,402	8,369	3,345	1,187	4
2001	11,584 (100.0)	1,669 (14.4)	6,079 (52.5)	2,639 (22.8)	1,197 (10.3)	-
증감률 (2001/2000)	△24.3	△30.5	△27.4	△21.1	0.8	-

주: 국제입양은포함되지않음
자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이주과

<가구원수및 세대수별 분포: 1975 2000년 >

연 도	가구원분포(%)						세대수별분포(%)				
	일반가구 (천가구)	가구원수별				평균가구원수	혈연가구 (천가구)	세대수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975	6,648	4.2	8.3	12.3	75.1	5.0	6,367	7.0	71.9	20.1	1.0
1980	7,969	4.8	10.5	14.5	70.1	4.5	7,470	8.8	73.1	17.6	0.6
1985	9,571	6.9	12.3	16.5	64.3	4.1	8,751	10.5	73.3	15.8	0.5
1990	11,355	9.0	13.8	19.1	58.1	3.7	10,167	12.0	74.1	13.6	0.3
1995	12,958	12.7	16.9	20.3	50.1	3.3	11,133	14.7	73.7	11.4	0.2
2000	14,312	15.5	19.1	20.9	44.5	3.1	11,928	17.1	72.9	9.9	0.2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연도

도계속증가하여2002년현재노년부양비가11.1%임

· 이는 15 64세 인구 100명당 노년층 11명을 부양해야하는의미를나타냄

○ 1999년 출생시 기대여명은 75.6세로 1971년에 비해 13.3세증가

- 여자는79.2세, 남자는71.7세로여자가7.5년더오래삶

다. 출입국자현황

○ 2001년 한 해 동안 출국한 국민은 638만명, 입국한 외국인은 503만명으로외국인입국보다국민출국이 135만명더 많음

- 2001년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보다 10.1% 증가한 반면외국인입국자는3.5% 감소하였음

○ 2001년 해외이주 신고자수는 11,584명으로 2000년보다24.3% 감소하였음

- 해외이주목적은 전년에 비해 국제결혼은 증가한 반면사업, 취업및연고는감소하였음

· 이주목적별은 취업(52.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고, 사업순임

2. 가 족

가. 가구형태

○ 2000년 현재 일반가구는 14,312천가구로 1995년보다 10.4%증가하였음

- 가구원수가 3인이하인 가구의 비중은 증가추세가 지속되고있음

· 특히1인가구의비중이급속히증가하여2000년현재15.5%임

- 20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 4인이상가구의비중은감소추세임

- 4인이상가구비중은줄어들고3인이하가구의증가로 평균가구원수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 2000년 현재 혈연가구 11,928천가구중 72.9%는 2세대가구임

- 1세대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7.1%임

< 혼인 및이혼건수, 평균초혼및 이혼연령: 1980 2001년>

(단위: 인구천명당건)

	1980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혼인건수(천건)	403.0	399.3	398.5	375.6	362.7	334.0	320.1
조혼인율	10.6	9.3	8.7	8.0	7.7	7.0	6.7
이혼건수(천건)	23.7	45.7	68.3	116.7	118.0	120.0	135.0
조이혼율	0.6	1.1	1.5	2.5	2.5	2.5	2.8

연 도	평균초혼연령(세)		평균이혼연령(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90	27.8	24.8	36.8	32.7
1995	28.4	25.4	38.4	34.6
1998	28.9	26.1	39.8	36.1
1999	29.1	26.3	40.0	36.4
2000	29.3	26.5	40.1	36.6
2001	29.6	26.8	40.2	36.7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 이혼편)」 각연도

<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및 국민처분가능소득추이: 1980 2001년>

(단위: 십억원, %)

연 도	GNI(명목)	1인당(만원)	GDP(명목)	GDP 디플레이터 (1995=100)	국민처분가능소득 (명목)
1980	37,032	97	37,789	32.9	34,501
1990	178,628	417	178,797	67.9	160,548
1995	376,316	835	377,350	100.0	335,424
2000	519,227	1,105	521,959	109.1	458,216
2001잠정	543,875	1,149	545,013	110.5	480,030
증감률 (2001/2000)	4.7	4.0	4.4	1.3	4.8

자료: 한국은행,「계간국민계정」 각연도
산식: GDP 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

나. 혼인, 이혼

○ 2001년 연간 혼인건수는 320천건(쌍)으로 2000년 334천건보다 14천건감소하였음
- 조혼인율(인구천명당)은1980년에최고수준인 10.6건을기록한후, 계속낮아져2001년에는6.7건에불과함
- 2001년남자의평균초혼연령은 29.6세, 여자는 26.8세로2000년보다각각 0.3세씩늦어졌음

○ 2001년 연간 이혼건수는 135천건(쌍)으로 2000년 120천건에비하여 15천건늘어났음
- 조이혼율은80년 0.6건, 90년 1.1건에서 98년 2.5건으로 상승한 후 2000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 민간최종소비지출및 저축률추이: 1980 2001년 >

(단위: 십억원, %)

연 도	민간최종 소비지출	GDP대비	1인당소비지출액 (천원)	총저축률		
					민간저축률	정부저축률
1980	23,961.4	63.4	629	24.4	19.1	5.2
1990	93,504.9	52.3	2,181	37.5	29.2	8.3
1995	206,406.5	54.7	4,577	35.5	25.8	9.7
2000	299,121.8	57.3	6,363	32.4	19.3	13.0
2001	324,226.3	59.5	6,848	29.9	17.1	12.8

자료: 한국은행,「계간국민계정」 각연도

산식: 1인당소비지출액 = 민간최종소비지출액/연앙인구

총저축률= (제도부문별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100

< 국내소비지출및재화형태별 소비지출추이: 1980 2001년 >

(단위: 십억원, %)

연 도	국내 소비지출	재화형태별구성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1980	23,768.7	2.8	12.5	51.5	33.3
1990	91,954.1	9.4	9.1	36.4	45.0
1995	201,629.7	8.6	10.1	29.9	51.4
2000	293,678.3	6.0	7.1	29.6	57.2
2001	317,310.8	5.5	6.7	28.9	58.9

자료: 한국은행,「계간국민계정」 각연도

2001년에는 2.8건으로증가함

- 2001년 남자의평균이혼연령은 40.2세, 여자는 36.7세로 2000년에비해각각 0.1세씩늦어졌음

3. 소득 · 소비

가.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및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총소득(GNI)은 2001년 543.9조원(명목)으로 2000년 519.2조원에비해4.7% 증가하였음

- 국민들의생활수준을나타내는1인당GNI는 2001년 1,149만원으로2000년 1,105만원에비해4.0% 증가하였음
-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규모인 국민처분가능소득은 2001년 480.0조원으로 2000년에비해4.8% 증가하였음

나. GDP대비민간최종소비지출및저축률

○민간최종소비지출은 2001년 324.2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8.4% 증가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59.5%로 2000년보다2.2%p 증가

- 국민의 소비생활을 거시적으로 파악가능하게하는 1인당 소비지출액은 2001년 6백85만원으로 2000년 대비7.6% 증가하였음

< 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소득및 가계지출추이: 1980 2001년 >

(단위: 천원, %, %p)

연 도	월평균소득	처분가능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흑자율
1980	234.1	224.5	183.6	174.0	77.5	22.5
1990	943.3	870.2	723.0	650.0	74.7	25.3
1995	1,911.1	1,732.5	1,409.1	1,230.6	71.0	29.0
2000	2,386.9	2,113.5	1,888.2	1,614.8	76.4	23.6
2001	2,625.1	2,319.2	2,057.5	1,751.6	75.5	24.5
증감률 (2001/2000)	10.0	9.7	9.0	8.5	△0.9	0.9

자료: 통계청,「도시가계연보」 각연도
산식: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X100
흑자액=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흑자율= 흑자액/처분가능소득X100

< 농가의 월평균소득 및가계비추이: 1980 2000년>

(단위: 천원, %, %p)

연 도	농가 월평균소득	처분가능소득	가계비	평균소비성향	흑자율
1980	224.4	214.9	178.2	82.9	17.1
1990	918.8	913.8	685.6	75.0	25.0
1995	1,816.9	1,802.4	1,231.8	68.3	31.7
2000	1,922.7	1,903.2	1,500.3	78.8	21.2
2001	1,992.2	1,972.5	1,538.1	78.0	22.0
증감률 (2001/2000)	3.6	3.6	2.5	△0.8	0.8

자료: 통계청,「농가경제통계」 각연도

- 2001년 국내소비지출중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의비중은감소하고, 서비스비중은증가추세임

○ 2001년 민간저축률은전년대비 2.2%p 감소한 17.1%이며, 정부저축률도전년대비0.2%p 감소한12.8%임

다. 도시근로자가계수지

○ 2001년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소득은 263만원으로 전년대비10.0% 증가하였음

- 2000년에 비해 월평균 가계지출은 9.0%, 소비지출은8.5% 증가하였음
- 2001년 평균소비성향은 75.5%로 2000년(76.4%에 비해0.9%p 감소하였으며
- 흑자율은 24.5%로 2000년(23.6%에 비해 0.9%p 증가하였음

라. 농가의월평균소득및소비지출

○ 2001년 농가의 월평균소득은 199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3.6%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실업자: 1985 2001년 >

(단위: 천명, %, %p)

연도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참가율	남자	여자	취업자	여자취업자 구성비	실업자
1985	27,553	15,592	56.6	72.3	41.9	14.970	39.0	622
1990	30,887	18,539	60.0	74.0	47.0	18,085	40.8	454
1995	33,664	20,853	61.9	76.5	48.3	20,432	40.4	420
2000	36,139	21,950	60.7	74.0	48.3	21,061	41.3	889
2001	36,139	21,181	60.7	73.6	48.3	21,362	41.6	819
증감률 (2001/2000)	1.0	1.1	0.1	△0.4	0.5	1.4	0.3	△7.9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 월평균 가계비도 2001년 154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2.5% 높아졌음
- 2001년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에 비해 0.8%p 감소한 78.0%이며
- 흑자율은 2000년보다0.8%p 증가한 22.0%임

4. 노 동

가. 노동력공급구조추이

○ 2001년 15세이상의 노동력인구는 3,648만명으로 전년대비1.0% 증가하였으며,
- 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경제활동인구도 2,218만명으로전년대비1.1% 증가하였음

○ 200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60.8%임
-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3.6%로 전년대비 0.4%p 감소한 반면, 여자는 0.5%p 증가한 48.8%로 나타났음

나. 외국인근로자수추이

○외국인 근로자수는 2001년 현재 12.9천명으로 전년대비4.9% 증가
- 1997년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 근로자수는 IMF 영향으로 1998년에는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다시증가
- 취업분야별로는 산업연수부문이 전체 78.1%를 차지한 1.0만명이며, 회화 지도(6.5%), 예술흥행관련(4.0%)순으로나타났음
  · 2001년 회화지도 관련 외국인 근로자수는 8,388명으로 2000년 6,414명에비해30.8% 증가하였음

다. 졸업생취업률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2002년 현재 60.7%로 2001년보다4.0%p 증가
- 남자졸업생은62.3%, 여자졸업생은59.1%임

○ 대학은 2002년 현재 80.7%로 2001년보다0.3%p 감소하

< 외국인근로자수:1997 2001 >

(단위: 명, %)

연도	외국인 근로자	교수및 연구	회화지도	기술지도	전문및 특정직업	예술흥행	산업연수	구성비
1997	105,024	1,519	7,607	997	3,088	1,444	90,369	86.0
1998	75,357	1,381	4,927	471	3,231	1,133	64,214	85.2
1999	91,537	1,343	5,009	347	3,628	2,265	78,945	86.2
2000	122,549	1,450	6,414	338	3,516	3,916	104,847	85.6
2001	128,539	1,614	8,388	206	3,211	5,092	100,344	78.1
증감률 (2001/2002)	4.9	11.3	30.8	△39.1	△8.7	30.0	△4.3	△7.5%p

자료: 법무부,「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연도

< 졸업생 취업률추이: 1998 2002년 >

(단위: %, %p)

연 도	고등학교			대 학			대학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98	67.2	63.3	70.9	66.3	67.8	65.4	50.5	54.1	45.8
1999	64.9	61.5	68.0	68.1	69.1	67.4	51.3	52.6	50.0
2000	66.1	62.1	69.7	79.4	81.0	78.2	56.0	58.6	53.4
2001	66.4	63.0	69.4	81.0	82.7	79.8	56.7	59.0	54.1
2002	66.3	62.6	69.7	80.7	82.9	79.2	60.7	62.3	59.1
2002 - 2001	△0.1	△0.4	0.3	△0.3	0.2	△0.6	4.0	3.3	5.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산업별취업자구성비 : 1999 2001년 >

(단위: %, %p)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SOC 및기타
1999	11.6	19.9	19.8	68.6
2000	10.9	20.2	20.1	68.9
2001	10.3	19.8	19.7	70.0
2001 - 2000	△0.6	△0.4	△0.4	1.1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각연도

였고, 고등학교졸업생도2001년보다0.1%p 감소하였음

라. 산업별취업자구성비

○ 2001년 농림어업과 광공업 취업자 비중은 2000년에 비해각각0.6%p, 0.4%p 감소한10.3%, 19.8%임

- SOC 및기타산업취업자비중은1.1%p 증가한70.0%임

○산업별 취업구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농림어업

< 주요국가별산업별 취업자구성비: 2000 >

(단위: %)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SOC 및기타
한 국	10.9	20.2	20.1	68.9
독 일	2.7	23.8	23.3	73.5
일 본[1)]	5.1	20.6	20.5	74.4
미 국[1)]	2.6	15.1	14.7	82.3

주: 1) 구산업분류임
자료: ILO,「Yearbook of Labour Statistics」2001

< 구인배율, 취업률, 입직률, 이직률: 1980 2001년 >

(단위: %)

연 도	구인배율	구인배율	입직률	이직률
1980	101.9	80.2	4.40	4.80
1990	118.1	80.8	2.99	3.20
2000	45.1	18.9	2.84	2.63
2001	53.0	21.0	2.26	2.52

자료: 노동부,「노동통계연감」 각연도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산식: 입직률 = 당월입직자수/전월말근로자수×100
이직률 = 당월이직자수/전월말근로자수×100

취업자비율은여전히높은편이고, SOC 및기타산업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마. 구인배율, 취업률, 입직률, 이직률

○공·사립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한 구인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비율인 구인배율은 53.0%로 2000년에 비해 7.9%p 증가하였음

- 직업안정기관을통하여취업한취업자수를구직자수로나눈취업률은21.0%로2000년에비해2.1%p 증가하였음

○ 2001년 입직률은 2.26%로 2000년에 비해 0.58%p 감소하였고,

- 2001년 이직률도 2.52%로 2000년에 비해 0.11%p 감소하였음

바. 근로시간및임금격차추이

○ 2001년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2000년보다 30분줄어듦

- 월평균 근로일수도 2001년 24.3일로 2000년보다 0.3일줄어듦

○ 2001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73만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

-직종별 임금격차 파악을 위해 사무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전문가의 임금은 40 80% 높고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및단순노무직은낮은수준임

○산업별 임금격차 파악을 위해 제조업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도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임금이 제조업

< 산업별 주당근로시간: 1980 2001년 >

(단위: 시간, 일)

연 도	주 당 근로시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일수
1980	51.6	53.1	50.4	50.5	47.2	24.6
1990	48.2	49.8	45.8	47.5	44.5	24.7
2000	47.5	49.3	44.4	45.0	45.4	24.6
2001	47.0	48.3	44.3	45.1	45.0	24.3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직종별 근로자임금격차추이:1997 2001 >

연 도	평균임금 (천원)	임금격차(사무작= 100)						
		고위임직원 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
1999	1,495	183.1	135.4	100.0	74.7	87.7	95.3	65.4
2000	1,643	189.0	137.1	100.0	78.1	87.6	95.9	62.8
2001	1,748	189.4	140.7	100.0	76.8	87.4	97.9	60.5

자료: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산업별 근로자임금격차추이 : 1999 2001년>

(제조업= 100)

연 도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회, 개인 서비스업
1999	109.5	100.0	155.3	108.3	96.4	109.4	122.4	117.8
2000	106.7	100.0	153.9	108.1	95.7	111.8	121.7	105.3
2001	110.9	100.0	157.8	108.5	96.6	112.4	120.0	108.5

자료: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났음

사. 노동생산성지수추이

○ 2001년 노동생산성 지수는 192.0으로 2000년보다 4.2% 증가하였음

- 제조업은 192.4로 2000년보다4.0% 증가하였음

아.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노동조합은 2001년에는 6,150개로 2000년보다 7.9% 증가하였음

- 노동조합조합원수도전년대비2.8% 증가한157만명이가입하고있음

- 2001년 노사분규건수는 2000년 250건에서 6.0% 감소한235건임

· 2001년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건수 및 분쟁기간감소에따라전년보다42.8% 감소

< 노동생산성지수추이: 1980 2001년>

(1995 = 100, 단위 %)

연 도	총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업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1980	28.8	△2.4	52.0	△9.1	28.0	△4.4	38.7	△9.2
1990	60.0	12.6	76.6	8.5	60.1	12.5	66.4	16.3
2000	184.3	9.7	157.0	6.4	185.0	9.9	144.5	10.1
2001	192.0	4.2	168.3	7.2	192.4	4.0	151.4	4.8

주: 물적노동생산성지수

자료: 생산성본부,「생산성리뷰」 각연도

< 노동조합조합원수 및노사분규건수추이: 1989 2001년 >

연 도	노동조합수 (개소)	노동조합조합원수(천명)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 (건)	근로손실 (일)
1989	7,861	1,932	19.8	1,616	6,351,443
1999	5,637	1,481	11.9	198	1,366,281
2000	5,698	1,527	12.0	250	1,893,563
2001	6,150	1,569	12.0	235	1,083,079
증감률(%, %p) (2001/2000)	7.9	2.8	0.0	△6.0	△42.8

자료: 노동부,「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각연도

< 평균교육년수 및 25세이상인구의 학력구성비: 1980 2000년>

연 도	평균교육년수(년)						25세이상인구의학력구성비(%)			
	평균	6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세 +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80	7.6	6.5	9.9	9.2	7.5	4.2	55.3	18.1	18.9	7.7
1985	8.6	6.7	11.0	10.1	8.5	4.6	43.4	20.5	25.9	10.2
1990	9.5	7.7	12.0	11.1	9.5	5.5	33.4	19.0	33.5	14.1
1995	10.3	7.0	12.7	12.1	10.5	6.3	26.6	15.7	38.0	19.7
2000	10.6	5.7	13.1	12.8	11.2	7.2	23.0	13.3	39.4	24.3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연도

5. 교 육

가. 국민교육수준및기회

○ 2000년 국민의 평균교육년수는 10.6년(고등학교1 2학년정도)임

- 20 29세의 평균교육년수는 13.1년, 30 39세는 12.8년임

○ 2000년 25세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는 초졸이하가 23.0%, 중졸이 13.3%, 고졸이 39.4%, 대졸이상이 24.3%임

○ 2002년초등학교에서중학교진학률은99.9%,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99.6%,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는 74.2%임

< 진학률: 1980 2002년>

(단위: 명,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졸업자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대학(교)
1980	874,329	95.8	741,618	84.5	467,388	27.2
1990	763,694	99.8	835,699	95.7	761,922	33.2
1995	813,387	99.9	819,246	98.5	649,653	51.4
2000	614,759	99.9	631,398	99.6	764,712	68.0
2001	614,917	99.9	626,507	99.6	736,171	70.5
2002	630,187	99.9	602,675	99.6	670,713	74.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학교급별학생수 : 1980 2002년 >

(단위: 천명, %)

연도	총학생수	전체인구에대한 학생비율	학 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원)[1]	인구만명당(명)
1980	10,568	27.7	5,658	2,472	1,697	598	157
1990	11,007	25.7	4,869	2,276	2,284	1,467	342
2000	10,823	23.0	4,020	1,861	2,071	2,829	602
2001	10,819	22.9	4,089	1,831	1,911	2,947	622
2002	10,835	22.7	4,138	1,841	1,796	3,021	634
	(100.0)		(38.2)	(17.0)	(16.6)	(27.9)	

주: 1) 휴학생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교원1인당 학생수 및학급당 학생수 : 1980 2002년 >

(단위: 명)

연 도	교원1인당학생수				학급당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1980	47.5	45.1	33.9	32.6	51.5	65.5	59.9	59.6
1990	35.6	25.4	25.4	23.4	41.4	50.2	53.6	51.5
2000	28.7	20.1	20.9	18.2	35.8	38.0	44.1	40.3
2001	28.7	19.6	19.5	16.4	35.6	37.3	41.6	36.4
2002	28.1	19.3	16.4	14.4	34.9	36.7	34.7	32.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각연도

나. 교육환경

○ 2002년 4월1일현재 우리나라총 학생수는 10,835천 명이며 총인구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인구4명중1명정도가학생임

- 인구1만명당대학교(원)학생은634명임

○ 2002년교원1인당학생수는초등학교28.1명, 중학교19.3명, 일반계고등학교16.4명, 실업계고등학교14.4명임

< 전공분야별 대학생비율: 1980 2002년 >

(단위: 명, %)

연 도	재적학생수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1980	402,979	11.0	21.1	41.2	5.5	5.4	13.3
1990	1,040,166	15.0	27.6	40.4	3.9	6.6	6.5
1995	1,187,735	14.0	25.8	44.0	3.8	7.1	5.3
1997	1,368,461	13.9	25.7	44.9	3.6	7.2	4.6
2000	1,665,398	13.5	26.7	43.7	3.7	8.3	4.0
2001	1,729,638	13.4	26.9	43.4	3.6	8.7	4.0
2002	1,771,738	13.5	26.9	42.9	3.7	9.0	4.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중도 탈락률: 1980 2001년>

(단위: %)

연 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	대학교
1980	1.2	2.1	5.2	9.7
1990	1.0	2.3	16.1	15.5
1995	1.0	2.5	19.3	19.7
1999	0.9	2.2	25.6	25.4
2000	1.0	2.5	25.1	25.3
2001	1.1	2.5	25.5	25.6

주: 중도탈락률 = (제적자, 중퇴자및휴학자)/재적학생수×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초등학교의 경우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80년이후 계속감소

○학급당 학생수는 대체로 감소하여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된것으로나타남

-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4.9명, 중학교 36.7명, 일반계 고등학교 34.7명, 실업계 고등학교 32.2명으로, 중학교학급당학생수가가장많음

○전공분야별 대학생은 자연계가 42.9%이며 그 다음은 사회계, 인문계순임

○중·고등학생의중도탈락률은질병, 가사, 부적응및유학 등의이유로각각1.1%, 2.5%이며대학및대학교학생은 휴학, 제적등의이유로각각25.5%, 25.6%임

6. 보건

가. 1인당하루의식품및영양공급량

○ 2001년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소비량은 농가, 비농가 모두 2000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비농가에서 감소폭이 농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동안 거의 매년 증가하여 오던 쇠고기 소비량은 2001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달걀소비량은증가하였음

○국민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1인당 하루의 총열량 공급량은거의 3000㎉/수준임

< 1인당하루의 쌀 및 육류소비량추이: 1980 2001년>

(단위: g, %)

연 도	쌀소비량		쇠고기소비량	돼지고기소비량	달걀소비량
	농가	비농가			
1980	412.5	343.7	7.1	17.3	17.9
1990	439.3	306.9	11.3	32.3	25.1
1995	408.7	277.6	18.4	40.5	27.7
2000	383.2	244.4	23.3	45.2	27.7
2001	377.3	231.7	22.2	46.3	30.3
증감률 (2001/2000)	△1.5	△5.2	△4.7	2.4	9.4

자료: 통계청,「양곡소비량조사보고서」 농림부,「농림업주요통계」 각연도

< 1인당 하루의영양 공급량 추이: 1980 2001년>

(단위: kcal, g, %)

연 도	영양공급량		
	총열량	단백질	지방질
1980	2,485	73.6	36.6
1990	2,853	89.3	72.2
1995	2,959	96.9	76.9
2000	3,010	97.1	80.1
2001	2,994	98.5	84.0
증감률(2001/2000)	△0.5	1.4	4.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수급표」각년도

〈 19세이상인구1인당 주류출고량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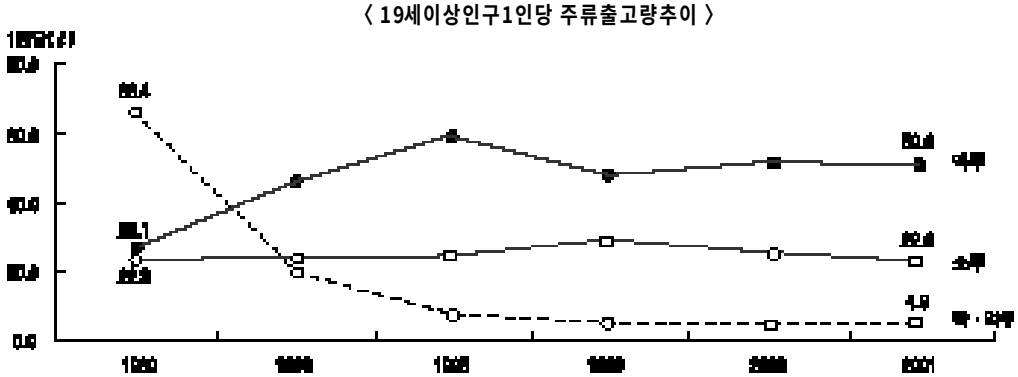

- 2001년에는 2,994kcal로 2000년(3,010kcal)에 비해 0.5% 감소하였음
- 단백질, 지방질 공급량은 2000년보다 각각 1.4%, 4.9% 증가하였음

나. 주류출고량과담배의소비추이

< 19세이상 인구1인당 주류출고량추이: 1980 2001년>

(단위: 1,000kℓ, %)

연도	출고량[1]		탁·약주		소주		맥주		기타
		1인당(ℓ)		1인당(ℓ)		1인당(ℓ)		1인당(ℓ)	
1980	2,568.5	119.0	1433.1	66.4	494.9	22.9	579.6	26.9	60.9
1990	2,669.4	94.1	564.1	19.9	701.6	24.7	1,307.7	46.1	96.1
1995	2,942.3	93.6	249.3	7.9	761.8	24.2	1,850.3	58.8	80.8
1999	2,775.3	82.9	182.5	5.5	944.4	28.2	1,578.7	47.2	69.7
2000	2,846.9	83.5	181.0	5.3	866.9	25.4	1,730.8	50.8	68.2
2001	2,791.8	80.5	170.2	4.9	784.9	22.6	1,755.2	50.6	81.5
증감률(2001/2000)	△1.9	△3.6	△6.0	△7.5	△9.5	△11.0	1.4	△0.4	19.5

주: 1) 주정은제외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연간 담배판매량및 판매금액: 1980 2001년>

(단위: 백만개비, 십억원)

연 도	총판매[1]		국산담배		19세이상인구1인당[1]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개비)	1일당(개비)	금액(천원)	1일당(원)
1980	69,759	875.2	69,759	875.2	3,233	8.9	40.6	111
1990	95,715	2,540.0	91,527	2,362.5	3,373	9.2	89.5	245
1995	100,544	3,746.1	88,242	3,161.1	3,198	8.8	119.1	326
2000	104,945	5,280.0	95,076	4,586.6	3,077	8.4	154.8	424
2001	98,917	5,864.5	83,416	4,595.0	2,852	7.8	169.1	463
증감률(%) (2001/2000)	△5.7	11.1	△12.3	0.2	△7.3	△0.6개비	9.2	39원

주: 1) 외국산담배포함

자료: 한국담배인삼공사경영정보국

○ 2001년 19세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출고량은 2000년대비3.6% 감소한 80.5ℓ 로나타남

○출고량을 주류종류별로보면 2000년보다맥주는 증가(1.4%하였으나, 그외소주, 탁·약주등주류는감소하였음

○ 2001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2000년보다 5.7%감소하였으나, 판매금액은 11.1% 증가하여 담배 판매금액(수입담배포함)은5조 8,645억원으로나타남

- 국산담배 판매량은 2000년보다 12.3% 감소한 반면, 판매금액은0.2% 증가함

- 담배 판매량 및 금액을 19세이상 인구로 나누어보면 하루평균 7.8개비씩 소비하며하루 463원씩담배소비를위해 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전년에 비해서 담배를 하루 0.6개비 덜 피웠고 지출은 39원늘었음

다. 의료인력현황

○ 2001년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의료인 1인당 인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에서 감소하여 의료환경

< 의료인력현황: 1980 2001년>

(단위: 명, %)

연 도	의사1인당인구	한의사1인당인구	치과의사1인당인구	약사1인당인구	병상당인구수[1]
1980	1,690	12,645	10,531	1,565	1,001
1990	1,007	7,401	4,457	1,155	429
2000	648	3,911	2,606	929	215
2001	629	3,700	2,507	913	224
증감률(2001/2000)	△2.9	△5.4	△3.8	△1.7	4.2

주: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특수병원및한방병원에한함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연 도	의료기관			약 국			
	진료비(백만원)	연평균1인당 진료비(원)	연평균1인당 내원일수(일/명)	조제건수(천건)	연평균1인당 조제건수(건/명)	약제비 (백만원)	연평균1인당 약제비(원)
1990	2,937,881	73,703	7.9	12,446	0.3	22,466	564
1995	5,999,465	137,282	9.5	59,657	1.4	166,579	3,812
1999	11,201,157	250,297	11.6	70,436	1.6	320,474	7,161
2000	11,721,636	255,176	11.6	115,130	2.5	1,190,584	25,919
2001	13,236,426	287,179	13.2	247,179	5.4	4,606,902	99,952
증감률(%) (2001/2000)	12.9	12.5	1.6일	114.7	2.9번	286.9	285.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1 건강보험통계연보」

이개선되고있음

- 의사 1인당 인구는 629명, 한의사는 3,700명, 치과의사는 2,507명, 약사는 913명으로 전년보다 한의사 1인당 인구가가장많이낮아졌음

라. 건강보험진료실적

○ 2001년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287천원으로 2000년 255천원보다 12.5% 증가하여 32천원이많아졌음

- 1인당내원일수는13.2일로전년 11.6일보다 1.6일이 늘어났음

○ 2001년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약국에서의 조제건수는 5.4건으로 2000년 2.5건보다 2.9건이나많아졌음

- 1인당약제비는 100천원으로전년 26천원보다 285.6% 증가한 74천원늘어났음

7. 주거 · 교통

가. 주택수

○ 2001년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는 1,189만 2천호이며

< 주택보급 및주택투자율: 1980 2001년>

(단위: 천가구, 천호, %)

연 도	가구수[1]	주택수[2]		연간주택건설호수			주택투자율
			주택보급률		공공	민간	
1980	7,470	5,434	72.7	212	106	105	5.5
1990	10,167	7,357	72.4	750	269	481	8.8
1995	11,133	9,570	86.0	619	228	391	7.4
2000	11,928	11,472	96.2	433	140	293	3.9
2001	12,099	11,892	98.3	530	128	402	4.2

주: 1) 일반가구에서비혈연가구및1인가구를제외한가구수임
2) 빈집포함
자료: 건설교통부,「건설교통통계연보」 각연도,「2002년주택업무편람」

< 주택유형및 점유형태별가구분포: 1975 2000년 >

(단위: %)

연 도	주택유형별가구분포				주택점유형태별가구분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및다세대	영업용건물내주택	자가	전세	월세[1]	무상및기타
1975	92.0	1.4	4.4	2.2	63.6	17.5	15.7	3.3
1980	89.7	4.9	2.6	2.8	58.6	23.9	15.5	2.0
1985	82.2	9.0	4.6	4.1	53.6	23.0	19.8	3.7
1990	75.3	14.8	6.4	3.4	49.9	27.8	19.1	3.1
1995	59.8	26.9	8.8	4.5	53.3	29.7	14.5	2.5
2000	49.9	36.8	9.1	4.2	54.2	28.2	14.8	2.8

주: 1) 사글세, 보증부월세포함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연도

주택보급률은98.3%임

- 연간주택건설호수는 53만호이며 공공건설 12만 8천호, 민간이40만2천호임

· GDP대비 주택건설투자비의 비율인 주택투자율이 2001년도4.2%로전년보다0.3%p 증가

나. 주택유형별및점유형태별가구분포

○ 2000년 단독주택의 비율은 49.9%로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36.8%로증가하고있음

○ 2000년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54.2%, 전세 28.2%, 월세 14.8%임

다. 원하는주택형태및주택마련시기

○ 2001년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1순위는 단독주택으로 58.9%이고, 다음으로아파트37.8%임

○주택마련시기는결혼전에15.8%, 결혼후에84.2%이고, 결혼후주택마련시기까지는평균10.8년이소요되었음

라. 내집장만시까지의이사횟수

< 원하는주택형태및 주택마련시기: 1997, 2001년>

연 도	원하는주택형태(%)					주택마련시기(년)		
	단독주택[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결혼전	결혼후	평균주택마련연수
1997	61.4	35.2	2.1	0.8	0.6	14.4	85.6	10.9
2001	58.9	37.8	1.3	0.5	1.5	15.8	84.2	10.8

주: 단독주택에다가구주택포함
자료: 통계청,「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결혼후 내 집 장만시까지의 이사횟수 >

(단위: %, 회)

연 도	결혼후주택 마련가구	한번도 이사하지 않음	이사함	이사횟수				평균이사 횟수
				1 2번	3 4번	5 10번	11번이상	
1997	100.0	14.7	85.3	36.1	29.4	27.2	7.3	4.2
2001	100.0	13.1	86.9	30.5	27.7	33.3	8.5	5.0

자료: 통계청,「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자동차등록현황: 1996 2001년 >

(단위: 천대, %)

연 도	계	승용차	자가용	화물차	버 스	특수차
1996	9,553	6,894	6,653	1,963	663	34
1997	10,413	7,586	7,335	2,072	719	36
1998	10,470	7,581	7,324	2,105	749	35
1999	11,164	7,837	7,567	2,298	993	35
2000	12,059	8,084	7,798	2,511	1,427	37
2001	12,914 (100.0)	8,889 (68.8)	8,588 (66.5)	2,728 (21.1)	1,257 (9.7)	39 (0.3)
증감률 (2001/2000)	7.1	10.0	10.1	8.6	△11.9	5.4

주: 매년12월 31일기준임
자료: 건설교통부,「건설교통통계연보」 각연도

○가구주가결혼하여내 집을장만할때까지평균 이사횟수는2001년 5.0회로 97년 4.2회보다늘어났음
- 이사횟수로는 2001년에는 5 10번(33.3%)이, 97년에는 1 2번(36.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있음

○가구주가 결혼 후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한 번도 이사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2001년 13.1%로 97년 14.7%보다1.6%p 낮아졌음

마. 교통

○ 2001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12,914천대로 2000년 12,059천대보다7.1% 증가하였음
- 승용차 10.0%, 화물차 8.6%, 특수차 5.4% 순으로 증가하였으나, 버스는오히려11.9% 감소하였음

○ 2001년 전체 자동차 중 68.8%는 승용차이며, 화물차는21.1%, 버스는 9.7%임

< 교통수단별여객수송 분담률: 1996 2001년>

(단위: 천명, %, %p)

연 도	총수송인원	공로		지하철		철도		해운	항공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1996	14,061,115	11,480,422	81.6	1,728,171	12.3	819,542	5.8	9,413	23,567
1997	13,611,159	10,887,456	80.0	1,855,166	13.6	832,999	6.1	9,899	25,639
1998	13,479,623	10,783,922	80.0	1,838,870	13.6	829,050	6.2	8,277	19,504
1999	13,325,620	10,455,862	78.5	2,015,999	15.1	823,563	6.2	9,051	21,145
2000	13,492,487	10,410,577	77.2	2,235,221	16.6	814,472	6.0	9,702	22,515
2001	13,327,802	9,857,403	74.0	2,527,099	19.0	912,149	6.8	9,340	21,811
증감률 (2001/2000)	△1.2	△5.3	△3.1	13.1	2.4	12.0	0.9	△3.7	△3.1

자료: 건설교통부,「건설교통통계연보」 각연도

< 일반전화 · 이동전화가입자수, 공중전화설치대수: 1990 2001년 >

(단위: 천대, %)

연 도	일반전화가입자수		이동전화 가입자수		공중전화설치대수	
	(천명)	인구백명당(명)	(천명)	인구백명당(명)	(천대)	인구백명당(명)
1990	13,276	31.0	80	0.2	237	5.5
1995	18,600	41.2	1,641	3.6	328	7.3
1997	20,422	44.4	6,828	14.9	424	9.2
1998	20,089	43.4	13,982	30.2	505	10.9
1999	21,250	45.6	23,443	50.3	565	12.1
2000	21,932	46.7	26,816	57.0	539	11.5
2001	22,725	48.0	29,046	61.4	516	10.9
증감률(%) (2001/2000)	3.6	2.8	8.3	7.5	△4.2	△5.2

자료: 정보통신부(www.mic.go.kr)

- 2001년 자가용 승용차 비중은 66.5%로 2000년보다 10.1% 증가하였음

○ 2001년여객수송분담률은공로가전체 74.0%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점차분담률이낮아지고있음

- 지하철 여객수송 분담률은 2001년에 19.0%로 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며
-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2000년에는 줄어들었으나, 2001년도다시증가함

8. 정보 · 통신

가. 일반전화, 이동전화

○ 2001년 일반전화 가입자수는 2,272만명으로 2000년 2,193만명에비해3.6% 증가하였음

- 인구 백명당 전화가입자수도 2000년 46.7명에서 2001년 48.0명으로 1.3명증가

< 신규 PC보급대수및 PC통신 가입자수: 1995 2001년 >

(단위: 대, %, %p)

연 도	PC 보급대수		PC 보급구성비					PC 통신가입자수	
	(천대)	인구천명당	개인, 가정	기업체	정부 · 투자기관	교육기관	기타[1]	(천명)	인구 천명당
1995	1,654	36.7	33.6	27.4	12.0	9.9	17.0	718	15.9
1996	1,866	41.0	33.0	28.3	16.9	4.2	17.6	1,711	37.6
1997	1,921	41.8	35.2	26.1	18.2	8.5	12.0	3,118	67.8
1998	1,851	40.0	35.9	23.1	14.0	18.3	8.7	6,438	139.1
1999	2,881	61.8	33.8	28.2	10.0	12.9	15.1	10,155	217.9
2000	4,602	97.9	41.7	27.1	8.0	8.6	14.7	16,807	357.5
2001	3,834	81.0	48.1	20.8	8.5	8.7	13.9	17,101	361.2
증감률 (2001/2000)	△16.7	△17.3	6.4	△6.3	0.5	0.1	△0.8	1.7	1.0

주: 1) 금융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포함

자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www.eika.org), 정보통신부(www.mic.go.kr)

< 컴퓨터사용능력및 사용시간: 2001, 2002년>

(단위: %, 시간)

연 도	6세이상인구	컴퓨터사용능력		1주일평균 컴퓨터사용시간
		사용할줄안다	사용할줄모른다	
2001	100.0	58.7	41.3	13.4
2002	100.0	63.0	37.0	14.0

자료: 통계청,「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급증하던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001년 현재 2,904만 6천명으로 2000년에비해 223만명(8.3%)이증가하였음

- 인구 백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000년 57.0명에서 2001년 61.4명으로증가

나. 개인용컴퓨터(PC) 보급대수및PC통신가입자수

○ 2001년한해동안보급된개인용컴퓨터(PC)는 3,834천대로 2000년에비해16.7% 감소하였음

○ PC통신가입자수는 2001년 1,710만명으로 2000년 1,682만명에비해1.7% 증가

- 인구 천명당 PC통신 가입자수도 2000년 358명에서 2001년 361명으로증가

다. 컴퓨터사용능력및사용시간

○2002년6세이상인구중63.0%는컴퓨터를사용할줄안다고응답하여2001년 58.7%에비해4.3%p 증가하였음

○컴퓨터 사용자는 일주일에 평균 14.0시간으로 2001년보다 36분증가하였음

9. 환 경

가. 주요도시의대기오염도

○ 2001년대도시대기오염도는대체로전년보다호전되었음

○ 2001년주요도시의오존오염도를보면부산, 광주, 대전은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산의 오존 오염도가

< 주요도시의대기오염아황산가스(SO_2): 1990 2001년>

(단위: ppm)

연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0	0.051	0.039	0.041	0.044	0.017	0.029	0.031
1995	0.017	0.023	0.031	0.023	0.010	0.017	0.028
1999	0.007	0.014	0.011	0.008	0.007	0.009	0.017
2000	0.006	0.010	0.009	0.008	0.006	0.007	0.013
2001	0.005	0.008	0.008	0.007	0.004	0.006	0.012

자료: 환경부,「환경통계연감」 각연도
※아황산가스(SO_2) 연간환경기준치: 0.02ppm 이하

< 주요도시의오존(O_3) 오염도 : 1990 2001년 >

(단위: ppm)

연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0	0.009	0.017	0.008	0.008	0.010	0.009	0.013
1995	0.013	0.016	0.017	0.013	0.016	0.015	0.015
1998	0.017	0.022	0.017	0.016	0.022	0.018	0.017
1999	0.016	0.022	0.017	0.018	0.018	0.020	0.018
2000	0.017	0.022	0.019	0.019	0.017	0.020	0.021
2001	0.015	0.025	0.019	0.019	0.019	0.021	0.020

자료: 환경부,「환경통계연감」 각연도
※오존(O_3) 환경기준: 8시간평균치0.06ppm이하

<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BOD: 1990 2001년 >

(단위: ㎎/ℓ)

연 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팔당댐	노량진	고령	물금	대청댐	공주	담양	나주
1990	1.0	3.4	5.4	3.0	1.7	3.2	-	6.7
1995	1.3	3.8	7.3	5.1	1.2	4.8	1.5	7.0
1998	1.5	3.6	3.1	3.0	1.0	2.5	1.6	5.9
1999	1.5	3.3	3.1	2.8	1.0	2.6	1.7	6.8
2000	1.4	2.7	4.3	2.7	1.0	2.6	1.4	6.5
2001	1.3	3.4	4.2	3.0	1.0	3.4	0.8	6.2

자료: 환경부,「환경통계연감」 각연도

0.025ppm으로가장높음

나. 4대강수질오염도

○ 영산강의나주유역에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6.2 ㎎/ℓ로가장높고, 다음이낙동강의고령유역(4.2㎎/ℓ)임

10. 복지

가. 사회보장예산

○ 2002년 사회보장예산은 10조 6,769억원으로 2001년에비해0.7% 감소하였음

< 사회보장예산: 1985 2002년 >

(단위: 십억원, %, %p)

연도	정부예산	사회보장 예산비중	사회보장예산(A)	공적부조(B)	B/A	사회복지서비스(C)	C/A
1985	12,532	3.2	397	148	37.3	75	18.9
1990	27,456	5.4	1,487	386	26.0	225	15.1
1995	51,881	5.6	2,925	574	19.6	623	21.3
2000	88,736	9.1	8,074	2,409	29.8	2,566	31.8
2001	99,180	10.8	10,746	3,270	30.4	3,763	35.0
2002	109,630	9.7	10,676	3,403	31.9	3,862	36.2
증감률 (2002/2001)	10.5	△1.1	△0.7	4.1	1.5	2.6	1.2

주: 일반회계기준예산자료임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 공적연금 가입자및수혜자: 1991 2001년>

(단위: 천명, %)

연도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 · 교직원	
			가입자대비수혜자		가입자대비수혜자		가입자대비수혜자
1991	5,812	4,769	8.0	885	3.4	159	1.1
1995	8,636	7,497	11.7	958	5.9	181	2.2
1999	17,383	16,262	7.7	914	14.1	208	5.1
2000	17,330	16,210	5.8	909	16.6	211	6.3
2001	17,407	16,278	5.9	913	17.6	216	6.8

주: 군인연금가입자제외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통계」 각연도

- 정부예산중사회보장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2002년 9.7%로전년에비해1.1%p 감소하였음

○ 2002년 사회보장예산중에서 공적부조는 2001년에 비해4.1%, 사회복지 서비스는 2.6% 증가하였음

나. 공적연금

○공적연금가입자(국민 · 공무원 · 사립교직원)는 2001년 17,407천명으로 2000년 17,330천명에 비해 77천명증가하였음

-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0년 16.6%에서 2001년 17.6%, 사립 · 교직원은 6.3%에서 6.8%로 국민연금은 5.8%에서 5.9%로 늘어났음

다. 건강보험

○ 2001년건강보험적용인구는 46,091천명으로 2000년에비해0.3% 증가하였음

○연간건강보험총부담액은 2001년 8조 8,562억원으로

< 건강보험 적용인구, 총부담액 및총급여비: 1990 2001년>

(단위: 천명, 백만원)

연 도	건강보험 적용인구[1]	건강보험총부담액[2]		건강보험총급여비[3]		차이 (B-A)
			1인당(천원)(A)		1인당(천원)(B)	
1990	39,990	1,883,528	47	1,903,197	48	1
1995	43,702	3,600,700	82	3,955,293	91	9
2000	45,936	7,228,817	157	8,789,329	191	34
2001	46,091	8,856,158	192	12,940,603	281	89
증감률(%) (2001/2000)	0.3	22.5	22.3	47.2	47.1	-

주: 1) 연평균의료보험적용2) 국고부담보험료가제외된수치임3) 지급기준(현금급여비및건강진단비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 및종사자수: 1990 2001년 >

(단위: 개소, 명)

연 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1990	278	84	11	89	72	9	118	108	-
1995	269	67	10	146	58	7	174	85	20
1999	271	66	10	229	56	12	193	88	24
2000	269	66	12	250	56	13	196	88	25
2001	274	69	13	288	58	18	206	86	40
연 도	여성복지			정신질환요양			부랑인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평균종사자수
1990	59	67	7	74	236	14	38	350	-
1995	66	50	5	75	247	16	42	317	17
1999	97	37	4	64	265	15	44	306	21
2000	59	53	5	55	230	18	45	290	22
2001	62	51	5	55	289	20	43	267	20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각연도

2000년7조 2,288억원보다22.5% 증가하였음
- 1인당연간부담액은22.3% 증가한192천원임

○ 2001년 연간 건강보험 총급여비는 12조 9,406억원으로 2000년보다 47.2%증가
- 2001년 1인당 급여비는 281천원으로 전년 1인당 부담액 191천원보다 90천원높아급여비와부담액의차이가커지고있음

라. 사회복지서비스

○ 2001년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288개소, 아동 274개소, 장애인 206개소임
- 노인복지시설은평균 58명, 아동복지시설은 69명, 장애인시설은 86명을수용하고있음

< 보육시설및 보육아동수: 1990 2001년>

(단위: 개소, 천명)

연 도	총시설수	아동수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1990	1,919	48	360	39	20	1,500
1995	9,085	294	1,029	4,125	87	3,844
1999	18,768	641	1,300	10,558	207	6,703
2000	19,276	686	1,295	11,304	204	6,473
2001	20,097	73	1,30	11,79	196	6,801
증감률(%) (2001/2000)	4.3	7.0	0.8	4.3	△3.9	5.1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 입양기간및 입양아동수: 1990 2001년>

(단위: 개소, 천명)

	입양기관			입양아동		
	계	국내[1]	국외[2]	계	국내[1]	국외[2]
1990	31	27	4	4,609	1,647	2,962
1995	27	23	4	3,205	1,025	2,180
1998	27	23	4	3,675	1,426	2,249
1999	26	22	4	4,135	1,726	2,409
2000	26	22	4	4,046	1,686	2,360
2001	24	20	4	4,206	1,770	2,436
2001-2000	△2	△2	0	160	84	76

주: 1) 아동을국내에서입양시키는경우
2) 아동을국외로입양시키는경우
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마. 보육시설수및보육아동수

○아동 보육시설수는 매년 늘어나 2001년 2만 97개소로 2000년에비해4.3% 증가

- 시설주체별로 보면 가정이 2000년보다 5.1%, 민간은 4.3% 증가했으나, 직장은오히려3.9%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2001년 보육 아동수는 73만 4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7.0% 증가하였음

바. 국내 · 외입양

○ 2001년 한해동안 발생한 입양아동수는 2000년 4,046명보다 160명늘어난 4,206명임

- 국내 입양아수는 1,770명으로 2000년(1,686명)보다 84명, 국외입양아수는 2360명에서 2,436명으로 76명 늘어났음

재정통계

• 중앙재정 IV편

• 중앙재정 V 편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

• 중앙재정 VI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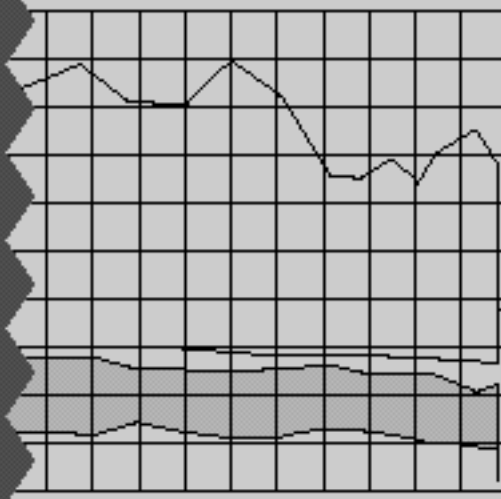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국회 참의원	국무원	기획처	재무부	국가재건 최고회의	감찰 위원회	심계원	내각	공보부	원자력원	경제과학 심의회의	농림부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전 보장회의
1953	예산액	-	-	1,046	-												
	지출액	-	-	997	-												
1954	예산액	-	-	345	185												
	지출액	-	-	345	140												
1955	예산액	1	-	-	414												
	지출액		-	-	382												
1957	예산액	-	-	-	209												
	지출액	-	-	-	205												
1958	예산액	-	-	-	608												
	지출액	-	-	-	607												
1959	예산액	-	-	-	-												
	지출액	-	-	-	-												
1960	예산액	-	-	-	-												
	지출액	274	326	-	39												
1961	예산액					280	7	-	55	5	-		21	-			
	지출액					280	6	-	52	5	-		21	-			
1962	예산액					7	1	-	17	16	-		57	-			
	지출액					7	1	-	16	16	-		55	-			
1963	예산액					21	-	-	-	15	-		85	3			
	지출액					21	-	-	-	15	-		85	3			
1964	예산액					-	-	-	-	22	1		133	2			
	지출액					-	-	-	-	22	1		131	2			
1965	예산액					-	-	-	-	69	3		576	122			
	지출액					-	-	-	-	69	2		531	122			
1966	자출결산액											1	127	24	49		-
	지출액											1	118	24	48		-
1967	자출결산액											-	124	11	17		2
	지출액											-	123	11	17		2
1968	자출결산액											9	443	39	35		21
	지출액											9	425	38	35		20
1969	자출결산액											17	12	15	55		12
	지출액											17	12	15	55		12
1970	자출결산액											-	396	48	14		13
	지출액											-	372	48	14		13
1971	자출결산액											7	98	-	20		9
	지출액											7	98	-	20		9
1972	자출결산액											-	957	98	43		-
	지출액											-	951	98	43		-
1973	자출결산액													57	72		25
	지출액													57	72		24
1974	자출결산액													328	74		38
	지출액													324	74		36
1975	자출결산액													83	21		13
	지출액													83	17		13
1976	자출결산액													1,855	-		7
	지출액													1,795	-		7
1977	자출결산액													748	351		14
	지출액													339	314		14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국회 참의원	국무원	기획처	재무부	국가재건 최고회의	감찰 위원회	심계원	내각	공보부	원자력원	경제과학 심의회의	농림부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전 보장회의
1978	자출결산액													495	-		-
	자출액													466	-		-
1979	자출결산액													486	11		-
	자출액													461	11		-
1980	자출결산액													322	51		-
	자출액													289	51		-
1981	자출결산액													156	-		-
	자출액													139	-		-
1982	자출결산액													-	-		-
	자출액													-	-		-
1983	자출결산액													-	-		-
	자출액													-	-		-
1984	자출결산액													-	-		-
	자출액													-	-		-
1985	자출결산액													-	-		-
	자출액													-	-		-
1986	자출결산액													-	-		-
	자출액													-	-		-
1987	자출결산액													-	-		-
	자출액													-	-		-
1988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9	자출결산액															333	
	자출액															317	
1990	자출결산액															724	
	자출액															724	
1991	자출결산액													1771			
	자출액													1709			
1992	자출결산액														979		
	자출액														975		
1993	자출결산액														655		
	자출액														651		
1994	자출결산액													1272			
	자출액													1232			
1995	자출결산액													1744			
	자출액													1722			
1996	자출결산액												62,671				
	자출액												62,671				
1997	자출결산액												38,429				
	자출액												38,429				
1998	자출결산액												239,349				474
	자출액												200,976				334
1999	자출결정액												107,769	401			
	자출액												107,769	363			
2000	자출결정액												131,004	403	482		15
	자출액												130,979	149	417		10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정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2]	외교통상부[1]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교육부
1953	예산액				-						-	-		-	-	-	
	지출액				-						-	-		-	-	-	
1954	예산액				-						-	-		-	-	-	
	지출액				-						-	-		-	-	-	
1955	예산액				-						-	-		-	-	-	
	지출액				-						-	-		-	-	-	
1957	예산액				-						-	-		-	-	-	
	지출액				-						-	-		-	-	-	
1958	예산액				-						-	-		-	-	-	
	지출액				-						-	-		-	-	-	
1959	예산액				-						-	-		-	-	-	
	지출액				19						-	-		-	-	19	
1960	예산액				-						-	-		-	-	-	
	지출액				255						57	243		54	60	-	
1961	예산액	-		-	42		-	7			17	14	14	2	64	4	
	지출액	-		-	19		-	7			17	14	14	2	62	2	
1962	예산액	-		-	-		-	338			11	66	2	1	18	9	
	지출액	-		-	-		-	338			10	62	2	1	11	9	
1963	예산액	18		-	234		-	471			-	78	14	5	14	39	
	지출액	17		-	231		-	471			-	75	14	4	10	24	
1964	예산액	2		3	1		5	517			25	285	45	42	194	147	
	지출액	1		3	1		5	516			25	277	43	38	191	145	
1965	예산액	17		-	14		14	676			172	908	110	82	576	696	
	지출액	17		-	14		14	675			163	908	108	78	574	692	
1966	자출결산액	147		25	1		20	1,316			306	143	10	81	157	150	
	지출액	147		25	1		20	1,316			296	143	10	73	157	147	
1967	자출결산액	11		-	7		17	1,368			103	220	-	10	300	26	
	지출액	11		-	7		17	1,368			103	220	-	10	299	26	
1968	자출결산액	15		-	18		11	1,624			129	211	-	78	173	170	
	지출액	12		-	18		10	1,623			120	209	-	78	173	124	
1969	자출결산액	12		26	450		21	2,153			206	3,171	5	72	785	194	
	지출액	12		26	440		21	2,139			167	3,166	5	71	782	179	
1970	자출결산액	-		193	10		50	2,330			360	2,394	74	96	2,145	285	
	지출액	-		193	10		50	2,329			350	2,385	73	96	2,055	285	
1971	자출결산액	157		780	258		70	3,043			438	1,118	62	18	1,233	875	
	지출액	155		780	258		66	3,043			367	1,115	62	18	1,221	778	
1972	자출결산액	29		655	764		19	5,063			357	550	56	187	1,984	328	
	지출액	24		655	739		19	5,063			355	545	44	187	1,954	328	
1973	자출결산액	1,777		32	528		102	9,508			418	828	1	380	2,229	487	
	지출액	1,767		32	527		94	9,507			418	823	1	380	2,200	480	
1974	자출결산액	425		545	61		175	41,236			453	4,485	-	442	3,040	691	
	지출액	422		545	50		171	41,198			451	4,417	-	442	2,986	687	
1975	자출결산액	44		-	1,796		821	72,422			392	2,142	19	763	4,391	573	
	지출액	44		-	1,775		820	72,422			392	2,080	19	763	4,108	449	
1976	자출결산액	-		-	-		91	34,300			506	1,087	21	-	2,655	590	
	지출액	-		-	-		77	34,296			492	1,084	18	-	2,555	588	
1977	자출결산액	184		-	46		65	39,025			1,006	6,508	120	-	5,110	1,260	
	지출액	184		-	37		50	39,004			1,007	6,388	117	-	5,092	1,249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정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2]	외교통상부[1]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교육부
1978	지출결산액	16		-	2,388		29	49,716			912	6,526	83	300	3,147	2,417	
	지출액	16		-	2,373		29	49,653			897	6,481	45	300	3,102	2,394	
1979	지출결산액	-		-	-		617	57,854			3,853	18,964	-	560	4,754	5,612	
	지출액	-		-	-		613	57,808			3,825	18,302	-	559	4,551	5,601	
1980	지출결산액	40		-	7,754		800	92,737			2,641	11,633	676	1,047	2,182	114	
	지출액	40		-	7,398		681	92,727			2,245	11,300	621	1,043	2,181	66	
1981	지출결산액	415		-	15,251		100	146,403			5,564	19,412	23	771	943	4,314	
	지출액	414		-	12,724		80	146,317			4,706	19,132	21	692	943	4,202	
1982	지출결산액	-		-	600		76	109,179			5,077	18,056	510	2,141	-	4,353	
	지출액	-		-	600		66	109,160			4,989	17,909	510	2,137	-	4,276	
1983	지출결산액	711		-	500		17	111,367			6,519	40,380	1,547	118	52	367	
	지출액	700		-	500		17	111,236			4,571	40,188	1,525	118	52	367	
1984	지출결산액	-		-	500		161	118,133			2,846	33,479	-	261	-	2,156	
	지출액	-		-	500		159	118,101			2,268	33,206	-	261	-	2,156	
1985	지출결산액	-		-	10,735		264	116,055			13,185	41,357	-	-	-	3,338	
	지출액	-		-	10,038		260	116,038			12,667	40,490	-	-	-	3,338	
1986	지출결산액	604		-	500		95	129,646			10,757	35,846	-	3,443	-	6,832	
	지출액	384		-	500		95	129,646			10,422	34,911	-	3,375	-	6,832	
1987	지출결산액	569		-	22,757		104	169,006			1,603	267,223	-	1,325	-	12,041	
	지출액	547		-	21,435		78	168,985			1,569	267,120	-	1,310	-	12,030	
1988	지출결산액	7,530	873		15,373		1,081	175,113			7,797	29,557		102		599	
	지출액	7,057	772		13,952		969	174,926			5,734	29,393		102		599	
1989	지출결산액	1,002			461		2,532	202,253			10,837	41,184	155	5,320	3,409	5,529	
	지출액	980			437		2,489	201,949			9,972	40,846	155	5,308	3,393	5,411	
1990	지출결산액				3,669		1,605	263,581			19,060	18,993		4,496	1,506		1,063
	지출액				3,610		1,556	263,456			15,577	18,739		4,477	1,395		1,054
1991	지출결산액				5,354		1,466	250,261			21,816	118,319		2,811	10,081		749
	지출액				5,329		1,436	250,261			19,904	116,605		2,808	6,722		749
1992	지출결산액	1,215			90,628		1,406	295,044			17,670	52,949		3,971	9,000		251
	지출액	994			87,149		1,405	294,872			16,370	52,627		3,971	9,000		206
1993	지출결산액				1,361		554	333,118			12,620	33,322	1,234	4,908	354		3,859
	지출액				1,329		548	333,084			11,490	31,126	1,217	4,866	354		3,859
1994	지출결산액	177			5,652		1,231	327,270			12,668	42,626		1,636			3,255
	지출액	176			5,648		1,128	327,270			9,448	42,489		1,627			3,255
1995	지출결산액	202				2,301	1,241			326,243	20,261	219,891		6,835	1,040		3,059
	지출액	202				2,273	1,185			326,240	17,227	218,190		6,828	853		2,920
1996	지출결산액					1,889				363,021	24,770	151,884		2,748	2,964		7,700
	지출액					1,705				362,963	22,387	149,561		2,748	2,901		2,546
1997	지출결산액				24,238	2,074	808			413,643	32,253	7,671		7,671			
	지출액				18,962	1,977	776			413,116	29,232	5,873		5,873			
1998	지출결산액				3,211		3,327		10,681	277,656	33,565			22,780	1,200		68,976
	지출액				2,729		2,878		6,561	277,404	29,938			22,779	1,194		51,726
1999	지출결정액				2,906	544	12,392			476	12,825			34,954	123,466		39,621
	지출액				2,876	544	12,167			476	11,408			31,653	66,134		37,575
2000	지출결정액	3,498	181		40,815	377	4,396			1,648	17,671			23,462	128,840		154,707
	지출액	3,114	181		21,042	377	4,088			1,569	15,531			23,216	128,624		152,257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농수산부	통상산업부	체신부	상공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문화부	문화공보부	공보처
1953	예산액						-				-						
	지출액						-				-						
1954	예산액						-				-						
	지출액					-				-							
1955	예산액						-				-						
	지출액						-				-						
1957	예산액						-				-						
	지출액						-				-						
1958	예산액						-				-						
	지출액					-				-							
1959	예산액						-				-						
	지출액						-				8						
1960	예산액						-				-						
	지출액						7				40						
1961	예산액						1		-		28	-					
	지출액						1		-		28	-					
1962	예산액						98		194		33	5					
	지출액						96		179		32	5					
1963	예산액						39		64		170	4					
	지출액						39		64		170	4					
1964	예산액						35		65		179	17					
	지출액						35		63		178	16					
1965	예산액						7		376		644	28					
	지출액						7		362		566	25					
1966	자출결산액						79		379		181	41				208	
	지출액						71		347		181	38				208	
1967	자출결산액						40		176		10	9				159	
	지출액						40		167		10	8				156	
1968	자출결산액						49		394		62	98				126	
	지출액						48		385		61	90				165	
1969	자출결산액						47		173		377	70				220	
	지출액						38		168		372	70				220	
1970	자출결산액						343		657		637	31				228	
	지출액						334		604		614	31				228	
1971	자출결산액						24		582		260	70				284	
	지출액						24		575		259	69				284	
1972	자출결산액						75		2,197		1,108	47				592	
	지출액						72		2,084		1,024	44				592	
1973	자출결산액			231			92		625		1,213	323				231	
	지출액			225			67		597		1,213	321				231	
1974	자출결산액			1,213			167		3,732		16,321	416				571	
	지출액			1,183			66		3,539		16,318	408				558	
1975	자출결산액			668			2,437		2,538		1,061	27				897	
	지출액			647			2,130		2,508		913	27				753	
1976	자출결산액			1,181			68		2,557		598	3				744	
	지출액			1,157			68		2,202		455	3				684	
1977	자출결산액			2,750			243		6,116		1,849	104				2,633	
	지출액			2,736			238		4,104		1,757	101				2,498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총무처	법제처	환경처	수산청	산림청	노동청	경찰청	정무장관 제1실	국토통일원	국가보훈처	통일주체 국민회의	공업단지 관리청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청	헌법위원회	경제과학 심의회의
1978	지출결산액			2,837			515		3,022		629	249				458	
	지출액			2,818			508		2,686		605	244				429	
1979	지출결산액			14,636			-		15,116		5,969	265				410	
	지출액			14,528			-		15,110		5,784	219				403	
1980	지출결산액			3,519			364		1,501		4,045	-				735	
	지출액			3,519			339		1,028		3,518	-				707	
1981	지출결산액			26,634			-		7,732		7,695	-				466	
	지출액			26,633			-		7,581		6,942	-				462	
1982	지출결산액			13,803			1,000		5,482		35	-				563	
	지출액			13,803			1,000		5,470		35	-				449	
1983	지출결산액			6,300			407		745		482	256				1,339	
	지출액			6,300			407		609		455	235				1,212	
1984	지출결산액			7,667			-		5,715		6,237	88				1,929	
	지출액			6,761			-		3,037		5,981	80				1,812	
1985	지출결산액			7,936			230		3,676		2,594	92				960	
	지출액			7,936			230		2,908		2,558	69				862	
1986	지출결산액			13,551			418		3,861		4,465	14				711	
	지출액			13,530			412		3,143		-	14				680	
1987	지출결산액			141,728			169		100,410		21,831	225				631	
	지출액			141,379			168		88,063		20,492	114				631	
1988	지출결산액			13,084			166		14,442		5,268			1,048		356	
	지출액			13,083			166		11,064		5,242			925		313	
1989	지출결산액			36,818			3,980		12,004		8,405	787		1,778		2,728	
	지출액			36,818			3,980		7,499		8,297	505		1,763		2,608	
1990	지출결산액	427		46,893					126,125		15,850				1,228		1,737
	지출액	427		46,893					101,971		14,363				1,109		1,506
1991	지출결산액	248		52,916		1,240					1,977				2,541		1,213
	지출액	248		52,916		1,240					1,977				2,332		1,154
1992	지출결산액			2,500								159					908
	지출액			2,500								48					839
1993	지출결산액		191(606)	49,475				94	31,085		2,231				744(-606)		356
	지출액		777	29,204				94	30,815		2,169				138		324
1994	지출결산액			53,349					4,281	2,615		34	2,603				927
	지출액			53,308					4,272	2,603		34	1,165				780
1995	지출결산액		2,018	120,397	460					15,085			77,461	13,798			5,413
	지출액		1,952	120,397	460					15,083			70,729	13,782			5,307
1996	지출결산액									15,001			133,757	1,252			2,819
	지출액									14,816			127,088	1,251			2,761
1997	지출결산액				4,461					456			23,831	742			1,086
	지출액				4,461					360			22,470	738			803
1998	지출결산액									227,828			323,582	94,917			
	지출액									218,967			304,634	78,830			
1999	지출결정액									27,344			385,545				
	지출액									26,874			360,766				
2000	지출결정액									26,762			214,265	2,120			
	지출액									23,896			190,674	1,985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총무처	법제처	환경처	수산청	산림청	노동청	경찰청	정무장관 제1실	국토통일원	국가보훈처	통일주체 국민회의	공업단지 관리청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청	한국유학생	경제과학 심의회의
1953	예산액																
	지출액																
1954	예산액																
	지출액																
1955	예산액																
	지출액																
1957	예산액																
	지출액																
1958	예산액																
	지출액																
1959	예산액																
	지출액																
1960	예산액																
	지출액																
1961	예산액	-	1				-										
	지출액	-	1				-										
1962	예산액	-	-				-										
	지출액	-	-				-										
1963	예산액	16	-				-										
	지출액	15	-				-										
1964	예산액	16	-				1										
	지출액	16	-				1										
1965	예산액	60	1				15										
	지출액	59	1				14										
1966	지출결산액	135	4		16	-	20			-		-					
	지출액	132	4		24	-	20			-		-					
1967	지출결산액	52	3		2	-	16			-		-					
	지출액	52	3		2	-	16			-		-					
1968	지출결산액	66	-		25	7	14			-		-					
	지출액	66	-		25	7	14			-		-					
1969	지출결산액	20	13		5	21	22			75		-					
	지출액	19	13		4	21	22			73		-					
1970	지출결산액	78	10		104	-	21			30		-					
	지출액	77	10		103	-	21			29		-					
1971	지출결산액	54	5		3	11	52			10		-					
	지출액	54	5		1	11	52			10		-					
1972	지출결산액	324	-		74	11	24			130		92					
	지출액	315	-		55	11	24			129		83					
1973	지출결산액	65	15		27	54	93			66		419	2	58		50	-
	지출액	65	15		12	48	28			66		403	2	54		45	-
1974	지출결산액	116	10		60	33	257			119		6	-	114		1	55
	지출액	114	9		-	33	251			117		6	-	111		1	51
1975	지출결산액	29	9		-	106	22			43		195	-	-		-	-
	지출액	28	9		-	93	22			41		195	-	-		-	-
1976	지출결산액	16	-		668	356	254			137		194	-	-		-	-
	지출액	16	-		304	335	254			81		194	-	-		-	-
1977	지출결산액	31	11		60	1,149	202			55		191	-	20		24	-
	지출액	30	10		51	1,071	177			54		191	-	16		24	-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총무처	법제처	환경처	수산청	산림청	노동청	경찰청 제1실	정무장관	국토통일원	국가보훈처 국민회의	통일주체 관리청	공업단지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청	헌법위원회	경제과학 심의회의
1978	자출결산액	205	-		1,906	47	1,444			3		708	-	3		-	-
	자출액	205	-		1,561	47	1,442			3		674	-	3		-	-
1979	자출결산액	544	-		1,046	1,368	384			-		1,073	-	-		-	260
	자출액	513	-		963	1,368	382			-		1,056	-	-		-	229
1980	자출결산액	770	322		1,193	69	409			42		1,482	-	-		-	-
	자출액	607	237		1,117	69	390			42		1,451	-	-		-	-
1981	자출결산액	1,070	67		2,047	368	959			3,071		-	-	-		-	-
	자출액	1,053	67		2,040	368	839			2,898		-	-	-		-	-
1982	자출결산액	510	-		729	90	2,970			-		-	-	-		-	-
	자출액	483	-		656	90	1,086			-		-	-	-		-	-
1983	자출결산액	1,472	-		141	-	-			-		-	-	-		-	-
	자출액	1,308	-		134	-	-			-		-	-	-		-	-
1984	자출결산액	412	-		-	-	86			-		-	-	-		-	-
	자출액	300	-		-	-	77			-		-	-	-		-	-
1985	자출결산액	201	-		3,746	-	1,027			-		-	-	-		-	-
	자출액	177	-		736	-	950			-		-	-	-		-	-
1986	자출결산액	178	152		5,050	-	91			-		-	-	-		-	-
	자출액	171	140		5,050	-	84			-		-	-	-		-	-
1987	자출결산액	167	47		32,180	3,808	451			-		-	-	131		-	-
	자출액	147	29		30,914	3,808	451			-		-	-	131		-	-
1988	자출결산액	2,797			1,349	966				22	455						
	자출액	1,866			1,349	966				21	455						
1989	자출결산액	582			9,012	2,923				205							
	자출액	541			8,468	2,923				205							
1990	자출결산액	584			1,439	3,438				193							
	자출액	575			1,438	2,312				187							
1991	자출결산액	321		200	18,123												
	자출액	309		200	18,118												
1992	자출결산액	60						4,962			23,886						
	자출액	60						4,958			23,886						
1993	자출결산액	1,767			1,320	3,145		2,080			2,997						
	자출액	1,486			1,320	3,145		1,915			2,997						
1994	자출결산액	933			7,174	1,484		14,257	283								
	자출액	637			7,162	1,484		13,702	271								
1995	자출결산액	3,965			40,177	11,086		28,394	80	2,342	279						
	자출액	3,844			40,135	11,000		28,101	80	2,087	277						
1996	자출결산액	233				6,969		40,544									
	자출액	228				6,968		36,548									
1997	자출결산액	119				6,983		5,926		1,297	10,158				8,397		
	자출액	87				6,499		5,858		1,294	10,158				8,154		
1998	자출결산액	750	1,726			101,677		25,072			18,091						
	자출액	747	1,721			94,985		23,930			17,971						
1999	자출결정액		130			22,117		12,333			13,185						
	자출액		130			17,343		12,289			13,104						
2000	자출결정액		375			12,727		71,770			17,062				489		
	자출액		375			12,533		68,954			15,365				478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감사원	대법원	과학기술처	국세청	농촌진흥청	관세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운항만청	특허청	동력자원부	철도청	환경부	체육부	원자력청
1953	예산액																
	지출액																
1954	예산액																
	지출액																
1955	예산액																
	지출액																
1957	예산액																
	지출액																
1958	예산액																
	지출액																
1959	예산액[1]																
	지출액																
1960	예산액																
	지출액																
1961	예산액	-	3			-											
	지출액	-	2			-											
1962	예산액	-	-			-											
	지출액	-	-			-											
1963	예산액	-	-			-											
	지출액	-	-			-											
1964	예산액	3	3			3											
	지출액	3	3			3											
1965	예산액	7	42			21											
	지출액	7	40			8											
1966	자출결산액	3	30	-	16	4	-							-			3
	지출액	3	30	-	16	4	-							-			2
1967	자출결산액	8	-	11	18	5	-							-			-
	지출액	8	-	11	17	5	-							-			-
1968	자출결산액	3	18	5	-	17	-							-			6
	지출액	3	18	5	-	17	-							-			5
1969	자출결산액	7	21	8	10	6	-							-			-
	지출액	7	21	7	10	6	-							-			-
1970	자출결산액	6	56	19	56	40	126							-			-
	지출액	6	56	18	56	40	126							-			-
1971	자출결산액	-	14	17	20	-	27							-			-
	지출액	-	14	16	20	-	26							-			-
1972	자출결산액	8	4	159	34	-	19							700			-
	지출액	8	4	159	34	-	19							700			-
1973	자출결산액	-	-	-	-	-	-	-			-	-	-	-	-	-	
	지출액	-	-	-	-	-	-	-			-	-	-	-	-	-	
1974	자출결산액	80	608	47	224	4	307	9			-	-	-	-	-	-	
	지출액	80	608	39	224	4	249	9			-	-	-	-	-	-	
1975	자출결산액	-	-	44	235	22	13	10			-	-	-	-	-	-	
	지출액	-	-	43	235	22	13	10			-	-	-	-	-	-	
1976	자출결산액	-	-	-	84	-	142	-			1,141	-	-	-	-	-	
	지출액	-	-	-	84	-	142	-			869	-	-	-	-	-	
1977	자출결산액	50	915	29	93	-	140	-			120	510	-	-	-	-	
	지출액	43	843	29	93	-	46	-			95	480	-	-	-	-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감사원	대법원	과학기술처	국세청	농촌진흥청	관세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운항만청	특허청	동력자원부	철도청	환경부	체육부	원자력청
1978	지출결산액	-	-	431	-	140	427	-			370	-	2,154	-	-	-	
	지출액	-	-	430	-	3	214	-			287	-	1,810	-	-	-	
1979	지출결산액	-	-	205	-	-	2,016	-			877	-	380	-	-	-	
	지출액	-	-	148	-	-	2,016	-			876	-	360	-	-	-	
1980	지출결산액	-	19	511	1,102	-	-	340			618	-	5	6	2,331	-	
	지출액	-	-	461	1,050	-	-	340			616	-	5	6	2,298	-	
1981	지출결산액	104	-	261	12	-	-	74			1,884	-	-	2,203	-	-	
	지출액	104	-	261	12	-	-	74			1,884	-	-	2,199	-	-	
1982	지출결산액	-	-	34	2,778	-	-	-			-	-	456	-	-	4,847	
	지출액	-	-	34	2,725	-		-			-	-	447	-	-	4,703	
1983	지출결산액	40	-	-	2,281	-	-	-			-	-	-	-	-	-	
	지출액	40	-	-	2,105	-	-	-			-	-	-	-	-	-	
1984	지출결산액	-	-	-	1,667	-	-	-			709	-	-	-	-	-	
	지출액	-	-	-	1,547	-	-	-			317	-	-	-	-	-	
1985	지출결산액	-	-	-	2,123	-	-	-			1,000	-	-	-	-	-	
	지출액	-	-	-	2,043	-	-	-			-	-	-	-	-	-	
1986	지출결산액	-	-	-	2,279	-	213	-			-	-	-	-	-	1,570	
	지출액	-	-	-	2,146	-	207	-			-	-	-	-	-	1,570	
1987	지출결산액	-	-	4,110	2,983	-	470	-			2,368	1,714	-	2,018	-	-	
	지출액	-	-	4,110	2,945	-	463	-			2,124	1,619	-	2,018	-	-	
1988	지출결산액				956									400			
	지출액				936									400			
1989	지출결산액			147	5,273		202							1,500	64	2,790	
	지출액			113	5,241		202							1,500	64	2,770	
1990	지출결산액	775			2,861						573			2,482	624		
	지출액	673			2,776						573			2,482	622		
1991	지출결산액												636	47,558			
	지출액												600	41,776			
1992	지출결산액				2,315												
	지출액				2,315												
1993	지출결산액	208			5,454		562							3,502			
	지출액	208			2,758		470							3,502			
1994	지출결산액				1,912										16,148		
	지출액				1,912										16,146		
1995	지출결산액	1,516		90										11,418	6,259		
	지출액	1,516		90										11,418	6,259		
1996	지출결산액			342	6,848		987		5,547	1,477				1,682	9,343		
	지출액			231	6,847		987		5,547	1,477				1,682	9,343		
1997	지출결산액								8,220	10,053					5,352		
	지출액								8,220	10,053					5,352		
1998	지출결산액				510					12,402				18,079	52,882		
	지출액				510					12,348				18,079	52,882		
1999	지출결정액	180	1,750		8,135			3,571		17,189				21,590	30,722		
	지출액	179	1,750		7,877			0		17,173				21,590	30,722		
2000	지출결정액	2,565	7,574		18,220	1,774	3,068	1,121	6,372	13,693				66,867	17,877		
	지출액	2,544	7,574		18,208	1,774	2,965	1,019	6,372	13,640				66,231	17,877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원호청	국토건설청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	국회민의원	군사원호청	특별재판소 및 검찰부	해무청	재건국민 운동본부	울산개발 계획본부	부흥부	공보실	사정위원회	여성특별 위원회	행정자치부	예산청
1953	예산액					3						-	-	-			
	지출액					1						-	-	-			
1954	예산액					6						-	-	-			
	지출액					6						-	-	-			
1955	예산액					60						-	-	-			
	지출액					33						-	-	-			
1957	예산액					7						-	-	-			
	지출액					7						-	-	-			
1958	예산액					17						-	-	-			
	지출액					17						-	-	-			
1959	예산액					-						-	-	-			
	지출액					-						-	40	87			
1960	예산액					-						-	-	-			
	지출액					43						9	-	65			
1961	예산액		10	20	28	2	87	45	-	-	-						
	지출액		10	18	21	2	81	45	-	-	-						
1962	예산액		-	13	13	-	-	-	-	66	5						
	지출액		-	13	12	-	-	-	-	66	5						
1963	예산액		-	-	-	-	-	-	-	-	-						
	지출액		-	-	-	-	-	-	-	-	-						
1964	예산액		-	-	-	-	-	-	-	1	-						
	지출액		-	-	-	-	-	-	-	1	-						
1965	예산액		-	-	-	-	-	-	-	-	-						
	지출액		-	-	-	-	-	-	-	-	-						
1966	자출결산액																
	지출액																
1967	자출결산액																
	지출액																
1968	자출결산액																
	지출액																
1969	자출결산액																
	지출액																
1970	자출결산액	45															
	지출액	45															
1971	자출결산액	13															
	지출액	13															
1972	자출결산액	15															
	지출액	15															
1973	자출결산액																
	지출액																
1974	자출결산액																
	지출액																
1975	자출결산액																
	지출액																
1976	자출결산액																
	지출액																
1977	자출결산액																
	지출액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원호청	국토건설청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	국회민의원	군사원호청	특별재판소 및 검찰부	해무청	재건국민운동본부	울산개발계획본부	부흥부	공보실	사정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행정자치부	예산청
1978	자출결산액																
	자출액																
1979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0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1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2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3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4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5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6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7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8	자출결산액																
	자출액																
1989	자출결산액																
	자출액																
1990	자출결산액																
	자출액																
1991	자출결산액																
	자출액																
1992	자출결산액																
	자출액																
1993	자출결산액																
	자출액																
1994	자출결산액																
	자출액																
1995	자출결산액																
	자출액																
1996	자출결산액																
	자출액																
1997	자출결산액																
	자출액																
1998	자출결산액														1,048	763,590	344,745
	자출액														833	757,381	331,906
1999	자출결정액															735,839	196,940
	자출액															730,705	196,940
2000	자출결정액														42	571,683	
	자출액														39	557,854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정홍보처	문화재청	통계청	기상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합계
1953	예산액																1,049
	지출액																998
1954	예산액																536
	지출액																491
1955	예산액																475
	지출액																415
1957	예산액																216
	지출액																212
1958	예산액																625
	지출액																624
1959	예산액																173
	지출액																173
1960	예산액																1,472
	지출액																1,472
1961	예산액																757
	지출액																710
1962	예산액																970
	지출액																936
1963	예산액																1,300
	지출액																1,272
1964	예산액																1,747
	지출액																1,720
1965	예산액																5,231
	지출액																5,056
1966	자출결산액																3,676
	지출액																2,725
1967	자출결산액																2,709
	지출액																3,866
1968	자출결산액																3,803
	지출액																8,301
1969	자출결산액																8,190
	지출액																10,895
1970	자출결산액																10,671
	지출액																9,632
1971	자출결산액																9,430
	지출액																16,698
1972	자출결산액																16,327
	지출액																20,008
1973	자출결산액																19,774
	지출액																76,463
1974	자출결산액																75,791
	지출액																91,836
1975	자출결산액																90,684
	지출액																49,265
1976	자출결산액																47,760
	지출액																71,732
1977	자출결산액																68,482
	지출액																81,577

1. 일반회계 예비비 소관별 사용실적(계속)

(단위: 1953~1960년도 백만환, 1961~2000년도 백만원)

구 분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정홍보처	문화재청	통계청	기상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합계
1978	자출결산액																79,724
	자출액																137,260
1979	자출결산액																135,681
	자출액																139,380
1980	자출결산액																136,442
	자출액																247,389
1981	자출결산액																242,787
	자출액																173,289
1982	자출결산액																170,628
	자출액																175,041
1983	자출결산액																172,024
	자출액																182,046
1984	자출결산액																176,563
	자출액																208,519
1985	자출결산액																201,300
	자출액																220,276
1986	자출결산액																213,312
	자출액																790,069
1987	자출결산액																772,680
	자출액																279,284
1988	자출결산액																270,240
	자출액																362,213
1989	자출결산액																354,739
	자출액																519,926
1990	자출결산액																488,495
	자출액																548,339
1991	자출결산액																533,718
	자출액																507,903
1992	자출결산액																502,175
	자출액																497,196
1993	자출결산액																469,846
	자출액																501,786
1994	자출결산액																435,749
	자출액																923,056
1995	자출결산액																910,107
	자출액																854,571
1996	자출결산액																833,141
	자출액																630,962
1997	자출결산액																616,392
	자출액																2,776,940
1998	자출결산액	1,258															2,639,610
	자출액	1,258															2,069,289
1999	자출결정액	571	452			10,224	1,089	227,060	3,516	6,021	8,217					212	1,961,908
	자출액	571	452			10,156	1,079	226,060	2,754	5,711	6,627					96	2,028,570
2000	자출결정액	602	5,330	387	21,414	2,523	1,092	403,680	72	5,505	20,779	1,200	767	61	243		1,933,245
	자출액	602	5,267	379	0	2,475	1,092	403,164	58	5,365	20,758	1,173	759	61	218		1,933,245

주: 1) 1998년에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뀜
2) 1999년에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바뀜

자료: 대한민국정부, 《예산회계사용총괄서》, 각 연도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 대한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주요 일간지의사설 및 칼럼등에 실린 조세·재정관련 내용을발췌, 소개하고 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 의견도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희망을키우는경제를

물리학자들이 관찰한 현상 가운데 '브라질 땅콩 효과(Brazil Nut Effect)'란 것이 있다. 공장에서는 크고 작은 땅콩을 아무렇게나 담아 캔 제품을 만들지만 소비자가 캔의 뚜껑을 열면 언제나 큰 땅콩들만 맨위에 올라와 있게 되는 현상이다. 캔이 공장을 떠나 자동차에 실려 슈퍼마켓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땅콩들의 대류(對流)현상이 나타나 큰 땅콩들은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작은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에서 절대선(善)처럼 군림해 온 이른바 신(新)자유주의경제는 마치 캔 속의 브라질 땅콩처럼 소수의 부자를 더 큰 부(富)를 가진 상류층으로 밀어올리고 많은 중산·서민층을 밑으로 끌어내렸다. 기업은 상류층만을 겨냥한 최고급 브랜드를 따로 내놓고 은행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다주는 단 몇 퍼센트의 부자고객에게 마케팅을 집중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이익에 별 보탬을 주지 못하는 다수의 고객이 은행원 대신 기계와 거래하도록 창구에서 밀려나는 것은 중산·서민층이 경제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의 상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의 확대로 중산·서민층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상시 구조조정 속에서 직장인의 정년은 이미 무의미해졌고, 턱없이 올라버린 집값은 이들로부터 '내집 마련의 꿈'과 '부자 아빠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 좁아지는 취업문 앞에 무력감에 빠져드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신주류로 떠오른 이른바 '2030세대'의 변화 욕구는 정치개혁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작아져가는 미래의 경제적 삶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저축해도 삶이 자꾸만 곤궁해진다면 숭고한 근로의 가치는 외면받고 한탕주의와 머니게임이 판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그 자신이 가난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역경을 극복한 서민형 지도자란 점에서 중산·서민층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역대 어느 대통령의 그것과 다르다. 노무현 경제팀이 경제의 파이를 무조건 키우는 단순한 성장보다 커진 파이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의미있는 성장'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한 나라의 통화정책이 그 나라의 금리수준을 결정하고 성장률이 그 나라의 재정정책에 좌우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가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미국처럼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시장의 경기에 성장률이 좌우되고 국제금융시장과의 동조

화로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정치적 자주권 확대 못지않게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금융과 서비스업 앞에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하잘것 없어 보이는 오늘의 세계화된 경제체제는 아무리 밤새워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환율 등 금융시장의 급작스런 변화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하이 리스크의 시스템이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안목과 금융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많은 파이가 하루아침에 남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주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로 꼽힌 것은 글로벌경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금융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1997년 세계은행 총회에서 "오늘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흉포한 야수들이 득실거리는 정글"이라 말했듯이 잔혹한 국제자본시장의 논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노무현 경제팀이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기조를 다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또 하나의 작업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게임의 법칙처럼 돼버린 세계화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세계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경쟁력을 새 리더십에 기대해 본다.

『경향신문』2002년 12월 23일자 데스크칼럼

사회지표 악화 방관 안된다

2002년 사회지표에 나타난 국민생활 모습은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변화 속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생활의 구조적 왜곡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차세대의 성장잠재력에 심각한 애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놀라울 정도로 정보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학력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화와 지식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역설적인 양상이 아닐 수 없다.

6세 이상 인구 중 63%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고, 인구 1000명 중 361명이 컴퓨터통신망 가입자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사회 이행 속도가 빠른 것은 매우 긍정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2002년의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신간 도서 발행 부수가 95년의 8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편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범죄 발생건수는 95년 대비 137% 증가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양상은 인구노령화는 가속되는 반면 인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어 인구구조적으로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 성장률 저하 및 연금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성장률은 95년 1%에서 금년 0.6%로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금년 7.9%에서 2019년 14.4%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차세대 성장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백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혼율은 높아지고 저축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양상 역시 차세대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국민생활을 왜곡시키고 차세대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양상을 시대 조류라고 방관한다면 그것은 지금 세대는 물론 차세대 삶의 질 저하 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어두운 미래의 그림자가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키기 전에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와 정부 모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매일경제』2002년 12월 26일자사설

새정부' 분배정책 의조건

1970년대 한국과 영국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제모델을 갖고 있었다.

당시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했다.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저개발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압축성장은 중앙정부가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른바 한국식 경제모델에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부(富)의 분배나 복지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으며 이런 요구는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항도 멈추지 않아 70년 11월 전태일 분신자살 이후 70년대를 관통하는 사회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침체하고 노쇠한 경제를 갖고 있었다. 이익단체들의 끊임없는 파업과 무능한 정부가 합작해낸 ' 영국병 이 만연했다. 밀턴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이 병은 무리한 복지국가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경제는 유럽 안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에 뒤떨어지는 2류로 추락했다.

한국은 고도성장을, 영국은 복지국가를 추구했지만 두 모델 모두 적지 않은 후유증을 수반했다. 한국은 억눌렸던 사회적 요구가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용암처럼 분출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영국 역시 마거릿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수술하면서 ' 사회통합 이라는 가치가 깨지는 아픔을 겪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시장경제이고 어디까지가 정부의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많은 견해가 있다.

노 당선자의 공약과 발언을 살펴보면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이 외면한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국의 교훈에서 보듯이 복지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경제 자체가 쇠퇴할 수 있다. 나눠줄 부를 축적하지 못하면 분배 정책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운용의 틀이 바뀐다 해도 그 한계는 국가경쟁력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함께 먹어야 할 밥상을 깨뜨리면서까지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이 변화는 미래세대인 20, 3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역성(不可逆性)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하나의 다리를 건넌 셈이다.

이런 전환기에는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각계의 요구가 도를 넘을 수도 있다. 어떤 그릇이라도 이런 요구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정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먹는 대

통령이 되어야 한다.

물질적 기반의 변화는 때때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률이라는 물질적 기반이 이번 선거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한다.

복지국가라는 꿈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지나치면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져 전체가 가난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 분배 문제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지만 나눠줄 돈을 버는 일이야말로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다.

『동아일보』 2002년 12월 22일자광화문에서

재산세인상거부이래도되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투기지역 내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을 서울의 25개 구(區)가 집단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자체의 반대로 당장 재산세 인상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의 저항 앞에 정부가 통일된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산세 인상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가 극을 달리며 논란을 거듭해 왔다.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과세 강화도 그 때 정해졌다. 문제는 어정쩡한 행정자치부의 태도다.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 인상은 힘들다며 차일피일하더니 지자체에 내려 보낸 최종안은 당초의 인상률(23~50%)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었다.

인상 의지가 약화된 데다 가산율 최종 결정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으니 일이 잘 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의 이기주의도 도를 넘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인상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재산세 강화는 투기의 선제적 효과가 크다.

대표적 투기과열 지역인 강남구는 주민에게 찬반 여론까지 물었다. 세금을 올리는 데 좋아할 주민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투기 억제와 재산세의 합리적 부과라는 목적이 좋다 해도 이번 일은 시행 과정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적지 않다. 집단 저항이 예상됐다면 별도의 방도를 강구했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이번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변경고시할 수 있게 돼 있어 찬물에 손 안 담그려는 공직사회 분위기로는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 조처였다.

부동산 투기 억제나 세금인상 효과를 이번처럼 지자체의 판단에 좌우되게 방치할 수는 없다. 또한 재산세 과세 형평이 그동안 갈등으로 번진 데는 정부가 지역 간 시세 차이를 반영키 위한 가산율 조정을 휴지로 만들어온 탓도 있다.

차제에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 통합은 물론 재산세 국세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왔다.

『중앙일보』 2003년 1월 3일자사설

부와신분의세습사회이미진입

빈부 대물림 현상과 대책 논쟁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는 부자 아들과 가난한 아들로 이어지는 숙명의 조건인가, 한국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역전이 가능한 열린 사회인가?

연초 사이버공간에서 빈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쟁은 1월1일치 <한겨레>에 실린 '부와 가난 대물림되는 신분' 기획기사로 불거졌다. 대지주의 손자로 서울 대치동 60평대 아파트에 사는 이상민(38·유통업체 대표)씨와 소작농의 손자로 봉천동 7평짜리 월셋방에 사는 박경하(40·막노동)씨의 4대에 걸친 가계도는 한국 사회

빈부의 대물림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선동적인 기사"·"좋은 고발기사"

대물림되는 빈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두 집안을 선택해 그림으로 드러낸 기사에 대해 "계층간 위화감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한겨레>의 반사회적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구 4700만명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게 마련인데 부유층의 탈법에만 초점을 맞춰 도덕적 비난을 유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에 역행한다."(<인터넷한겨레> 게시판 아이디 '피트')

빈부격차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연적인 만큼 해결을 위해선 극단적 사례를 대비시키는 것보다 "부자들 주머니를 열 생각을 해야"(〃 태형) 한다는 게 이들의 대안이었다.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폭로하는 기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기사가 위화감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이다. 빈부 대물림 기사는 도시빈민 지역을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절감하는 현실 그 자체다."(〃 김길환)

"그래도 한국 사회는 역동적"

한국 사회의 계층간 이동과 신분 변동의 폐쇄성에 대한 논란도 분분했다.

"한국은 그나마 공부를 통해서라도 신분상승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선 이런 게 불가능하다."(〃 흐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처럼 빈농의 고졸 출신이 부유한 집안의 서울대 출신 경쟁자들을 제압하며 성공을 거둔 일이 근거로 언급되었다.

일부 계층의 자본축적이 상당히 진행된 한국 사회에서 종전의 입지전적 성공사례는 '지나간 시절의 신화 일 뿐이라는 견해도 많았다.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는 재산세습을 통한 계급사회로 들어섰다. 빈부에 따른 진학률 차이가 빈곤의 시대보다 '상대적 빈곤의 시대'에 더 커졌다는 것은 본격 계급세습이 시작되었음을 입증한다."(〃 체념)

교육과 노력을 통해 부를 쌓고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대학 입학이나 사법시험 합격에는 집안의 재산보다는 분위기와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결정적"(〃 쩝)이라는 견해에 대해 "부가 성공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우리 사회는 점점 부가 유일한 조건이 되어간다"(〃 훈)는 댓글도 여럿이었다.

2002년 서울대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광역시 출신이 전체의 74%였고, 아버지들의 직업은 전문직 18%, 경영관리직 21%, 사무직이 24%였다. 아버지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2%였다.

"부의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남보다 더 땀을 흘리겠는가"라며 근로의욕 동기를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이 사회에 살고 싶겠는가"라는 반문이 이어졌다.

"부의 세습은 당연하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중세시대와 똑같다.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 기회마저 빼앗기는 사람들이 문제다."(〃 박성재)

상속제도를 문제삼는 논객은 없었지만, 상속의 절차와 내용이 정당한 부로 연결되는가는 토론 대상이었다. 삼성그룹 이재용씨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아 16억원의 세금을 내고 4조원어치의 삼성그룹 주식과 경영권을 장악한 일이 언급되었다. "부의 축적이 정당하게 이뤄진다면 이

런 식의 빈부격차는 이뤄질 수 없다.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징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absss)

기회의 평등은 가능한가

부모의 빈부와 신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부유세가 해답이다. 부자가 존경받으려면 그만큼 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헌이 필요하다."(〃 대안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강력한 국세청을 만들면 된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조세와 강력한 처벌이면 충분하다."(〃 냐하하)

빈민층에게 주거와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논의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치열하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직접세와 재산세에 대한 형평과세 토론을 펼치는 동안 조세저항의 문제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의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에 대해 지난주 강남·서초·송파구를 필두로 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주민들 반대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면 거부했다.

『인터넷한겨레』 2003년1월6일자여론칼럼

재정포럼

2003년 1월호 통권 제79호

■**발 행 처** /한국조세연구원
■**발 행 인** / 송대희 (한국조세연구원원장)
■**편집위원장** /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초청연구위원)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주임연구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연구원)
■**편집 · 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연구홍보과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연구원)
■**인 쇄** /고려문화사

■**월간재정포럼** / 2003년1월 15일발행/ 제8권제1호(통권제 79호)
1996년5월 31일등록/ 등록번호라7859 /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79-6
TEL : 2186-2130 2 E-mail: pub@kipf.re.kr
Homepage:http://www.kipf.re.kr

■**값 3,000원**

• 월간『재정포럼』에실린기사의내용은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 월간『재정포럼』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윤리강령및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교환해드립니다.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1 FAX : (02)2186-2139
E-mail : pub@kipf.re.k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 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양재남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